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29-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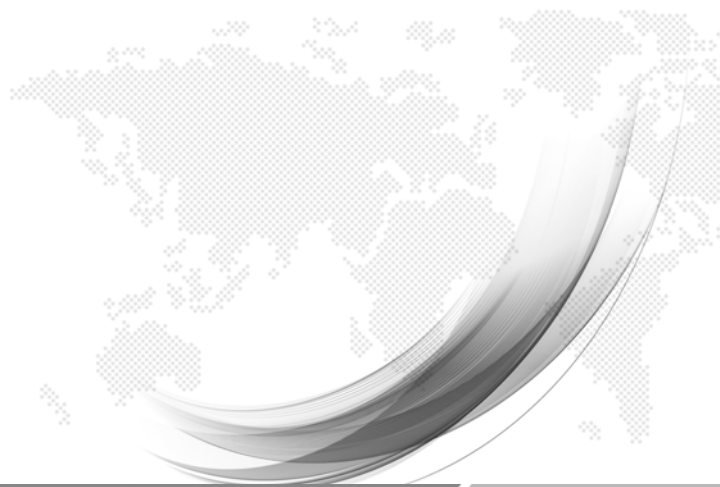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차 례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 개요	1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2017. 3. 30.)	7
3.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보고서(2017. 3. 30.)	143
4. 대한민국 정부보고서(2017. 8. 16.)	187
5.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검토보고서(2017. 11.)	211
6. 제37차 인권이사회 주제네바 유엔 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발언문 (2018. 3. 15.)	255
7. 제37차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언문(2018. 3. 15.)	267
8. 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영문)	273
9. 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한글)	319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 개요



UPR 제도 개요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2006년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핵심 인권감시 체계로 193개 전체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점검하는 제도로 2008년 첫 심의를 개시하였음.
- 도입 전후로 제도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와 국가간 갈등이 있었고, 제1기 사이클 운영 후 제도 재평가 작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도입되었으나, 2011년 내부 평가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정받아, 조약기구(Treaty Bodies) 및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 더불어 현재는 유엔의 3대 인권감시 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1. 명칭

가. 영문명칭 : Universal Periodic Review

나. 국문명칭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우리 위원회는 시행 초기 국문명칭으로 '보편적 정례검토'를 사용했으나 2011년경부터 현재의 번역어로 대체하였음. 법무부에서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사용중임.

2. 명칭의 의미 및 다른 2대 인권감시 체계와의 비교

가. Universal(보편적)

(의미)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모든 인권 이슈를 다룸.

(비교) 조약기구는 해당 조약 가입국이나 조약이 포괄하는 특정 이슈에 한정되고, 특별보고관과 같은 특별절차는 임무 수행자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방문 국가를 정하거나(주제별 특별절차), 업무 범위 자체가 특정 국가로 지정되므로(국가별 특별절차) 보편적이라 할 수 없음.

나. Periodic(정기적)

(의미) 매 4.5년마다 거르지 않고, 연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함.

(비교) 조약기구 심의는 종종 지연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 10년 가까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매우 부정기적이고, 특별절차는 제도 속성 자체가 정기성과 관련이 없음.

다. Review(검토, 점검)

(의미) 유엔 회원국 모두 서로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받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권고하고 권고받음(peer review).

(비교) 조약기구와 특별절차는 유엔 내부(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가 아닌 외부의 독립 전문가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짐.

3. 진행 현황

가. 제1기 사이클(2008~2011)

- 회기당 16개국, 연간 3회기, 4년
- 192개국($16 \times 3 \times 4$)

나. 제2기 사이클(2012~2016)

- 첫 4년(12회기)은 회기당 14개국, 연간 3회기($14 \times 3 \times 4 = 168$ 개국)
- 마지막 6개월(2회기)은 각 14개국 및 11개국($14+11 = 25$ 개국)
- 193개국($168+25$) *2011년 남수단이 유엔에 신규 가입

다. 제3기 사이클(2017~2021)

- 제2기와 동일하게 진행
- 2018. 3. 15.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제3기 UPR 실무그룹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보고서 채택

4. UPR 운영 개요

가. 심의 주체 : UPR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UPR 또는 UPR Working Group)

(구 성)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이 UPR 실무그룹의 의장이 되고,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모두가 실무그룹 위원이 됨.

(참가자격) 옵저버 국가(인권이사회 비이사국) 및 이해당사자(국가인권기구 및 NGO)도 참석 가능함. 옵저버 국가는 발언이 가능하나 이해관계자들은 발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결과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서로 다른 지역 그룹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선정된 3개국이 보고관(Troica, 트로이카) 역할을 맡아 **심의결과보고서**를 해당 심의 회기에 제출함.

나. 심의 대상 문서

UPR 심의는 아래 3종류의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짐.

①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20쪽 이내)

- 심의 대상국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가보고서

② 유엔 권고 통합본(Compilation of UN Information; 10쪽 이내)

-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이 특별절차와 조약기구의 최종견해 및 기타 유엔 산하 기구들의 해당국 관련 보고서를 요약한 문서

③ 이해관계자 의견서 요약본(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10쪽 이내)¹⁾

- OHCHR이 국가인권기구나 NGO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문서에 요약한 문서로, 심사 받는 당사국 국가인권기구 의견서의 경우는 특별히 많은 비중이 반영됨.

※ OHCHR이 작성하는 2개의 통합본과 요약본은 표현의 자유, 평등권, 생명권, 프라이버시권, 교육권, 문화권 등 주요 개별 인권 항목들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됨.

1) 그동안 '정보노트'라고 칭했으나 '의견서'로 번역함

다. 심의방식

(심의시간) 심의 대상국을 3시간 30분 동안 심의

* 제1기 사이클에서는 심의시간이 3시간이었으나, 제2기 사이클부터 강화

(심의결과) UPR 실무그룹 중 트로이카 국가 중심으로 심의결과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Group)를 작성하여 심의 후 2~3일 내에(해당 UPR 실무그룹 회기 중) 회람되는데, 구성 체계는 ① 서론, ② 심의대상 국가 발표 요약, ③ 질의·응답 등 국가간 토론 요약, ④ 결론 및 권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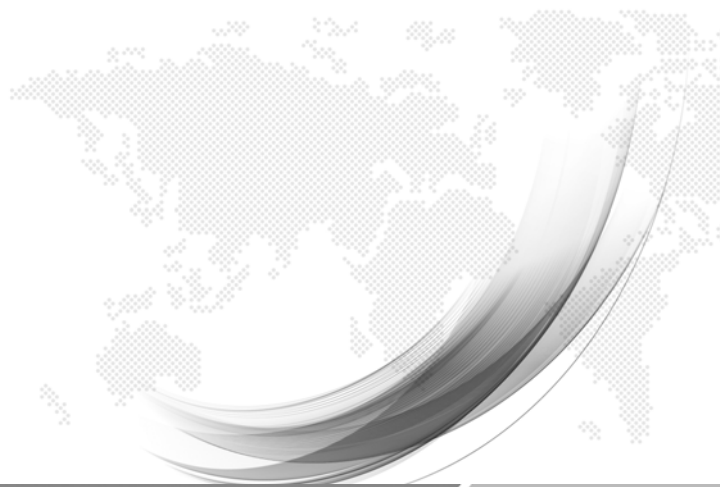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서면질의) 이사국들은 심의 당일의 짧은 시간에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 심의 후 서면질의 형태로 이사회에 제출함.

(최종결과) UPR 실무그룹 회기 후 개최되는 첫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에서는 위 서면질의에 대한 심의 대상국의 답변 및 국가인권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들은 후 아래 문서들을 종합하여 ‘최종결과’(Outcome of the UPR)라는 명칭으로 공식 채택(decision of adoption)함.

- ① 심의결과보고서
- ② 심의결과보고서 중 ‘권고’ 부분에 대한 심의 대상국의 의견(권고 수용 여부)
- ③ 심의대상국의 자발적 공약(향후 계획 의미)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

(2017. 3. 30.)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Written Contribution)

서론

1.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이다. 이 의견서는 제2기 대한민국 UPR 심의 권고 사항 중 주요 사안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2기 심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이행 일반

2.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 및 UPR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임하여 이사국을 수임하였고 2016년에는 제10대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이사회 최대 협력국 중 하나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UPR 권고 중 국제협약 가입이나 유보 철회 또는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이행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 불임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UPR 권고 이행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의 경우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 특히 [권고15]에서 강조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의 경우, UPR권고 이행 상황 전반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아닌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4. 정부가 제2기 UPR 권고 후 이를 반영하여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을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NAP 자체의 이행 성과가 부족하고, 각 정부 부처 내 UPR의 중요성과 이행 필요성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UPR과 NAP 담당 기관이 여러 정부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여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5. 한편 2016.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원 면책조항·위원 자격규정 신설, 선출지명기관이 투명한 선출 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인권위원 선출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독립성 보장에 큰 진전이 있었다.

6. 권고 : UPR 권고가 NAP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UPR과 NAP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UPR과 NAP 이행 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참여 보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7.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지위 보장을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 향후 헌법 개정시 헌법기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가입 조약의 국내 이행

8.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그 선택의정서 18개 중 7개²⁾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부는 미가입조약에 대해 ‘고려 중’ 또는 ‘연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가입 조약들의 경우도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³⁾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방문조사 및 예방기구 설치),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강제실종협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3)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 사호(姓 선택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입양허가제) 및 제40조제2항 나호의(5)(상소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호(생명보험 가입)

9. 또한 2015. 1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우선 이행을 강조한바 있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권고 : 미가입 인권조약 가입과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이미 국내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일부 유보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 권고 :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다. 최근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집회 신고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하기를 당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인권 문제

12.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인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진행 속도와 더불어 빈곤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 자살률, 절대적 · 상대적 빈곤율 등 여러 통계를 종합할 때,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노인들은 50세 이전에 자신의 주된 직장을 은퇴한 후 12~13년 동안 저임금 비정규 노동으로 연명하다 65세를 맞는다. 기초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로 인해 65세 이후 기대여명 21년 중 절반 이상을 2개 이상의 질병을 앓다 죽음을 맞는다. 노인 자살률도 타국에 비해서 훨씬 높다.⁴⁾

의 경우 유보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 사호(姓 선택의 자유)와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입양허가제)은 국내 법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진전이 있으므로 현재 유보철회를 위한 장에는 없지만 아직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4) 2014년 대한민국의 실질은퇴연령은 평균 72.9세로 OECD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7~8년 더 일하는 상

13. 2001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⁵⁾ 저출산은 다른 구조적 문제의 귀결이지 원인이 아니다. 여성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매우 힘들거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로 내몰리며,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족하고 남성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년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늦추거나 포기한다고 추측된다.⁶⁾

14.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현재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진행 중이다. 제3차 기본계획이 기존의 고령사회 ‘대비’ 개념을 넘어 ‘활기찬’ 고령사회라

황(OECD, Pension at a Glance 2015)이다. 통계청의 〈201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인 기간은 9.1년으로, 기대여명 절반 이상 동안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향도 열악하다. 2013년 기준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전체 평균 10.6%의 4.4배, 2위인 이스라엘 24.1%의 2배 이상)이고, 전체 인구의 상대빈곤률은 14.6%(2013)로 OECD 평균(11.9%)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여전히 42.3% 수준에 불과하다. 55~79세 연령대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51만원이고, 특히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수령자(공무원 연금 등)는 12.5%에 불과한 반면, 75.2%는 50만원 미만 수령자이고, 25만원 미만 수령자도 49.5%에 이른다(이상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따라서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들은 별도 근로소득, 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소득이나 지원이 없을 경우 절대빈곤 탈출이 어렵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월 약 20만원이 지급되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 금액만큼 덜 받으므로 이들 최빈곤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노인 자살의 경우, 2015년 인구 전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자살 사망률(12.1명, 2014년 기준)의 2배 정도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58.6명으로 급증하는데, 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더 가파르다(65~69세 37.1명, 70~74세 54.9명, 75~79세 72.5명, 80세 이상 83.7명). 자살의 원인은 빈곤, 가정불화, 고독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OECD Health Data 2015). 요컨대, 노령에 접어들 직후(65세~69세) 보다 70세 이후 자살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노후의 삶이 ‘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5) 2001년 초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1.3미만)로 접어들 후 2005년 1.08쇼크(합계출산율 1.08)를 겪었고, 이후 조금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1.17수준(2016년)이다.

6) 20~29세 남녀의 고용률은 59% 내외로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이 높지만, 30세 이후 남녀 간 격차는 급속도로 커진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20대에 비해 30대 고용률은 90% 수준으로 급증하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로 30대 고용률이 감소하고, 40대 여성 고용률은 20대, 30대에 비해 높아 전형적인 M자형 경향을 보이며 이 때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일자리의 질이 20대나 남성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0대 여성 고용률 최저점이 30대 초반(34세 이하)에서 후반(35세 이상)으로 이동하였었는데, 이는 20대에 좋은 일자리를 확보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는 좀 더 적극적인 비전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별 노인들의 인권 주제를 다루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⁷⁾

15. 권고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확보, 청년 주거 문제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대안적 육아 체계 확충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6. 권고 : 노인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노인의 완전한 권리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도별 성별 고용률〉

구분		연도별 고용률(%)						
성별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자	20~29	59.2	58.4	58.2	58.3	57.3	55.7	55.8
	30~39	90.3	89.1	89.5	89.8	90.3	90.2	90.9
	40~49	91.8	90.9	91.2	91.6	91.7	92.0	92.7
여자	20~29	59.1	58.0	58.3	58.7	58.8	57.8	59.0
	30~39	54.7	52.7	53.7	53.7	54.5	55.5	56.3
	40~49	64.7	64.1	64.2	64.9	64.6	64.6	65.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한편,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15~29세 청년 고용률은 39.7%(2013), 40.7%(2014) 및 41.5%(201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여 8.0%(2013), 9.0%(2014) 및 9.2%(2015) 수준이다. 2015년 청년 실업률 9.2%는 최근 10년간 최대치이며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7)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 계획(MIPAA)>에서는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은 노년 이전부터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건강권 문제도 ‘현재’ 노인들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노년에 접어들도록’ 훨씬 이전 세대부터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저출산’은 사회적 위기의 한 징후로서, 극복되어야 하지만 고령화는 “인류의 위대한 승리”인 긍정적 가치이다. 매우 큰 도전이기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 아동 및 장애인 인권 문제

17.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여성 고용률의 10%p 제고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2016. 11. 현재 2013년 대비 2.3%p 높였을 뿐이고⁸⁾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자의 질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데 있다.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2011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6년 상반기 현재 2012년 수준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였다.⁹⁾ 이러한 격차는 30세를 전후로 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후에 특히 심각해진다.¹⁰⁾

18. 2017. 3. 1.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이 공개된 성 범죄자 중 강간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32.3%로 나타났다. 2012년 42.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사범 셋 중 한 명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¹¹⁾

8)

〈2011년 이후 성별(15~6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
남자	74.5	74.9	74.9	75.7	75.7	75.8
여자	53.1	53.5	53.9	54.9	55.7	5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9)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전체	34.2	33.3	32.6	32.4	32.5	32.8
남자	27.8	27.2	26.5	26.6	26.5	26.4
여자	42.8	41.5	40.6	39.9	40.2	41.0
남녀 격차	15.0	14.3	14.1	13.3	13.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10) 위 각주 5)의 표 참조

11)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1년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대상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보다 4.1% 증가했는데, 강간사범은 855명(2014년)에서 733명(2015년)으로 줄었지만 이 733명 중 495

19.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도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¹²⁾

20.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꾸준한 장애차별 시정 노력으로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 신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최근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있다.¹³⁾ 그러나 2014년 기준 70%를 상회하는 비자의 입원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할지는 의문이다.¹⁴⁾ 또한 장애인 시설을 여전히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면서 반대하는 경향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¹⁵⁾

21. 권고 : 정부는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였으나, 최근 3년간 각종 통계지표상 효과가 미미하므로 근본적인 제검토가 필요하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2. 권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명(67.5%)만 징역형을 받았고, 237명(32.3%)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여성가족부 2017. 3. 1.자 보도자료).

12) 교육부가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대상 성폭력 건수는 2012년 679건, 2013년 892건, 2014년 1,30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성폭력 피해 학생의 87%는 같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학생 성폭력 관계 부처는 2017. 2.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적극 실시, 학생 성폭력에 대한 신고·상담 인프라 강화, 학교 내에서의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13) 2016년의 개정으로 현행 「정신보건법」은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신법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입원 치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다(신법 제2조 제5항).

14)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통계에 따르면, 자의입원은 29.7%에 불과하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29. 의견표명을 통해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된 장애인직업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강간사범의 셋 중 한 명이 실행 없이 석방된다는 점은 놀랍다. 처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성폭력 및 학생간 성폭력 건수가 우려스러운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23. 권고 :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개선의 여지가 많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의한 치료보다는 병원치료, 특히 자의가 아닌 비자의 입원이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문제

24. 2016. 7. 16.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으로 확정하였다.¹⁶⁾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경제위기 시기였던 2009년 12.8%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말 11.5%로 2010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¹⁷⁾ 또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및 직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¹⁸⁾

16) 최저임금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대비 7.3% 인상된 액수로, 인상률은 2016년 8.1%보다 낮고, 2014년(7.2%) 및 2015년(7.1%)과 비슷하다.

17)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율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016. 6, 12쪽)

- 18)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소근로기준 보호, 노동3권 보장,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2014.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실질화하고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제125조)이 신설되어 현재 사업장 전속성이 있는 9개 직종(2008. 7. 4개 직종, 2012. 5. 2개 직종 추가, 2017. 7. 3개 직종 추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이외에 지난 10년 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노동조합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업(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기소 사례에 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지만,¹⁹⁾ 이는 기소 자체를 규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고발 행위도 막을 수 없고, 단지 유죄 판결될 확률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파업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은 여전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26. 권고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다. 또한 간접고용·파견 및 비정규직 확대에 의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공공사업장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업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소수자 보호 및 차별철폐

27.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정부는 정부 입법 형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7. 제3기(2017~2021) NAP 권고 시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8.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혐

19)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파업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관행과 관련한 중요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즉, 파업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신고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엄격해졌다.

a. 헌법재판소(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전 결정과 같이 합헌결정 하였으나, 쟁의행위는 그 자체 불가피하게 업무방해를 초래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b. 대법원(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의 전격성’,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등 2개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업무방해죄가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입증책임은 검사 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표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높다.²⁰⁾ 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 제2기 [권고 30]에 대해 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표현 대응 제도 개선 노력은 부족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뿐이다.

29. 「난민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보호 정책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대부분 등록 외국인,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탓에 미등록 외국인 및 그 자녀의 경우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 또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에 제한이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배우자 종속이 크다. 또한, 예술홍행비자(E-6비자) 입국 여성이 성매매에 강제로 노출되는 경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²¹⁾

30.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사유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0)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에 실시한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모두 혐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위협을 느끼고, 정체성을 숨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1) 2012. 8.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구인업체의 사용주에게만 이주노동자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용주의 선택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체류기간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혼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체류허가 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임의로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예술홍행(E-6) 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고 있으며, 46%가 여권을 압류당하고 있고, 23%는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권고 : 체류 외국인, 특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아동은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아동의 최대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결혼 이주여성과 성매매 등에 노출된 E-6비자 소지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군대 내 인권

32.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17. 2. 현재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1,770건이며, 201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사건의 유형은 폭언 및 가혹행위, 건강 및 의료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욕설 및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생명권 침해 등이며, 최근 사생활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성추행·성희롱 등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33. 그동안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2014년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병사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군부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법 제정,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 마련, 여군 인권상황 개선, 군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군대 조직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7. 3. 현재 국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군옴브즈만)을 설치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34. 권고 :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생명권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군복무부적응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법 제정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한 군옴브즈만 설치 등 군대 내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업과 인권

3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기업과 인권 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6. 6. 1. 방한결과 발표 시 국민연금의 투자활동,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등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인권에 대한 실천점검의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설립을 제안하였다.
36. 권고 : 기업과 인권 NAP를 조속히 수립하고,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투자 기관이 국내외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권원칙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의견서 평가표

- 아래 평가표에서 유엔에 제출되는 부분은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부분 (파란색)임
- 검은색 각주는 우리 위원회 심의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 유엔에 제출되지 않음.

차 례

주제 A12 : 국제기준 수용

[권고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8]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

[권고 6] 강제실종협약 비준

[권고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7]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권고 4]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9] 헤이그협약 비준

[권고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비준 가능성 연구

[권고 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주제 A13 : 인권조약 가입 유보

[권고 10] 다양한 인권조약 가입유보 철회

[권고 11] 아동권리협약 유보 철회

주제 A24 : 특별절차 협조

[권고 16]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 및 협조

주제 A3 : 국가간 협력과 개발 원조

[권고 70] 인권 지향적 개발원조

주제 A41 : 헌법 및 법제도

- [권고 56] 국가보안법 적용시 유의
- 주제 A42 : 제도와 정책 - 일반
 - [권고 44] 지뢰피해자 보호
- 주제 A45 : 국가인권기구
 - [권고 14]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 주제 A47 : 굿 거버넌스
 - [권고 46] 법의 지배 및 사회적 결속 촉진
- 주제 A61 : 시민사회 협력
 - [권고 15] 시민사회 협력
- 주제 B31 : 평등과 비차별
 - [권고 23] 차별금지법 제정
 - [권고 24]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차별 사유 명시
 - [권고 22]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 노력
 - [권고 34] 균형법 동성애 처벌 규정 폐지
 - [권고 33]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관련 연구
 - [권고 21] 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
- 주제 B32 : 인종차별
 - [권고 30] 인종차별 및 혐오 철폐
- 주제 D1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일반 이행 조치
 - [권고 58] 보안관찰법 폐지
- 주제 D23 : 사형제
 - [권고 35] 사형제 폐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주제 D25 :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금지
 - [권고 13]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 개념 국내법 도입
 - [권고 37] 고문 엄정 처벌
 - [권고 38] 완전한 체벌 금지, 이동학대 방지 캠페인
- 주제 D27 : 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
 - [권고 43]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 [권고 42] 팔레르모의정서 비준 및 관련 협력 강화

주제 D31 : 자유와 안전 - 일반

[권고 55] 국가보안법 위반자 석방

[권고 36] 평화시위 보장

주제 D4 : 기본적 자유

[권고 57]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및 개정 노력

주제 D42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권고 53]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주제 D43 :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고 50] 국제기준에 맞는 표현의 자유 보장 조치

[권고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법률적 보장

[권고 52] 방송통신위원회 독립

[권고 54] 국가보안법 정당한 집행을 위한 법집행 공무원 훈련

주제 D51 : 사법행정 및 공정한 재판

[권고 45] 아동친화적 사법 절차

주제 E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일반 이행 조치

[권고 60] 건강권과 교육권 강화(취약계층)

주제 E21 :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 - 일반

[권고 59] 빈곤퇴치, 공정 분배 및 소득양극화 해소

주제 E23 : 적절한 주거의 권리

[권고 61] 보금자리 주택 지속 수행

주제 E41 : 건강권 - 일반

[권고 62]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제 E51 : 교육권 - 일반

[권고 63] 등록금 경감

주제 F12 : 여성차별

[권고 25] 성평등

[권고 28] 싱글맘 차별 금지

[권고 48] 여성 고용기회 확대 노력, 남녀 임금격차 극복 조치

[권고 26] 여성 지위 향상

- [권고 27] 가정에서의 평등과 가정폭력 관련 교육
- 주제 F13 : 여성 대상 폭력
 - [권고 49] 성희롱 형사 범죄화
 - [권고 4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노력
 - [권고 39] 가정폭력 예방 : 여성 경찰관 증원, 피해자 쉼터, 재활 서비스
- 주제 F31 : 아동 - 정의, 일반원리, 보호
 - [권고 29]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 [권고 1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소위원회 설치
 - [권고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학대 등에 대한 인권교육
 - [권고 19] 아동권리 보호 노력 지속, 취약 집단 아동 보호
- 주제 F32 : 아동 - 가족 환경과 대안적 돌봄
 - [권고 47] 국제 입양제도 개선 및 국가입양센터 설립
- 주제 F33 : 아동 - 착취로부터 보호
 - [권고 41]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방지 노력
- 주제 F35 : 무력충돌 상황의 아동
 - [권고 20] 아동의 무력충돌 상황 참여 금지
- 주제 F41 : 장애인 - 정의 및 일반 원칙
 - [권고 12]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제한 법제 개정
- 주제 G4 : 이주민
 - [권고 69] 미등록 외국인 인권 보호
 - [권고 68] 난민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보호
 - [권고 3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 [권고 67] 인신매매 금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 [권고 65]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 [권고 32]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대책 및 이주 아동 보호 정책
 - [권고 66] 미등록 이주민 자녀 의료서비스 접근권
- 주제 G5 : 난민 및 난민희망자
 - [권고 64] 난민 등에 대한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주제 A12 : 국제기준 수용

[권고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¹⁾

권고내용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페인)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체코)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불가리아)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코스타리카)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슬로베니아)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튀니지)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안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5년 연구주제로 채택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국가예방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구금 시설은 현재 고등 행정 사무소와 감독 당국(국방부, 법무부, 검찰청)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감시되고 조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공개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정부는 2015년 중간보고서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연구 주제를 과제(agenda)로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 연구가 실제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²⁾ 최종 결과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1) 각 권고의 제목은 분류의 편의상 임의로 정한 것임.

또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상 국가예방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와 방문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구금보호시설의 범위는 선택의정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좁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방문조사 대상 기관을 교도소, 유치장, 다수인보호시설 등 ‘구금·보호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택의정서는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경찰차, 수용자 호송차량, 임의의 장소 등이 포함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대상보다 넓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는 조사대상 시설에 미리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³⁾ 불시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선택의정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참고]

18개 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유보 현황

	조약명	채택 (발효)	우리나라 가입 (발효)	우리나라 유보
1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65.12.21 (69.1.4)	78.12.5 (79.1.4)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	66.12.16 (76.1.3)	90.4.10 (90.7.10)	
3	- ICESCR 선택의정서(개인진정)	08.12.10. (13.5.5.)	미가입	
4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66.12.16 (76.3.23)	90.4.10 (90.7.10)	제22조 ‘결사의 자유’
5	- ICCPR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66.12.16. (76.3.23.)	90.4.10 (90.7.10)	
6	- ICCPR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89.12.15. (91. 7.11.)	미가입	

2) 2017. 2. 형사정책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79.12.18 (81.9.3)	84.12.27 (85.1.26)	제16조 제1항 사호 '성 선택의 자유'
8	- CEDAW 선택의정서(개인진정)	99.12.10 (00.12.22)	06.10.18 (07.1.18)	
9	고문방지협약(CAT)	84.12.10 (87.6.26)	95.1.9 (95.2.8)	
10	- CAT 선택의정서(방문조사 및 예방기구 설치)	02.12.15	미가입	
11	아동권리협약(CRC)	89.11.20 (90.9.2)	91.11.20 (91.12.20)	- 제21조 가항 '입양허가제' - 제40조 제2항 나호의(5) '상소권 보장'
12	- CRC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00.5.25 (02.2.12)	04.9.24 (04.10.24)	
14	- CRC 제2선택의정서(아동 성매매, 음란물 등)	00.5.25 (02.1.18)	04.9.24 (04.10.24)	
14	- CRC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11.12.19	미가입	
15	이주노동자권리협약(CRMW)	90.12.18 (03.7.1)	미가입	
16	강제실종협약(CPED)	06.12.20 (10.12.23)	미가입	
17	장애인권리협약(CRPD)	06.12.13 (08.5.3)	08.12.11 (09.1.10)	제25조 마호 '생명보험 가입'
18	CRPD 선택의정서(개인진정)	06.12.13 (08.5.3)	미가입	

[권고 8]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

권고내용

-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이라크)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 교육에서 차별에 관한 협약,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 철폐에 관한 연구'가 2013년에 수행되었고, 교육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도 준비 단계에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별도의견 없음

※ 유네스코 교육차별 철폐 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조약이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의견 없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됨

[권고 6] 강제실종협약 비준

권고내용

-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할 것(스페인)
-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아르헨티나)
-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이라크)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고 각 부처의 내부 검토를 토대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정부 부처와의 향후 논의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08. 1. 14.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권고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내용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페인)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팔레스타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2014년 9월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국내 구제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결론을 검토하는 중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주최하는 패널 토론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2015년 중간보고서에서 정부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연구를 의뢰하고 결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나, 연구 내용 및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입장이 필요하다.⁴⁾

[권고 7]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권고내용

-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필리핀)
-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우루과이)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4)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과 강제 노동에 관한 ILO 협약에 관해서는 2006년부터 비준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정부는 ILO 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비준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사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근로에 관한 협약〉 비준 문제는 협약의 일부 조항이 현재 국내법과 충돌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될 것이다.
-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사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이주자를 포함한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정부는 일부 조항이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가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23. 정부에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대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금지 관련 제29호, 제105호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⁵⁾

제87호 및 제98호 가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설립 또는 파업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고, 제29호 및 제105호의 경우 사회복지요원 문제 때문이다.

사회복지요원은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4주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이다. 자가 숙식에 출퇴근을 하고 소속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무기간은 훈련 기간 포함하여 24개월이다. 2016. 9. 현재 약 5만명 정도이다. 징집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대체 복무 형태로 민간인 신분으로 자의에 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주 40시간의 일상적인 노동력 제공에도 불구하고 월 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2017년 최저임금이 월 135만원(주 40시간 근무) 정도이므로 차이가 크다.

5) ILO 8대협약 가입 현황

[권고 4]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권고내용

-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슬로바키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개인 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전제로 하는 국내 구제책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하여서 정부는 “국내구제절차와 법원의 관련 판결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진행상황을 밝히거나 가입 및 비준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대 원칙	8개 핵심 협약	비준 여부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미가입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입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11호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권고 9] 헤이그협약 비준

권고내용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프랑스)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아일랜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2013년 5월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다. 비준 이전에 필요한 입법 개정과 정책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의 특별 전담기구가 창설되었다. 아동 정책조정위원회의 논의에 이어, 협약 비준을 위해 2015년까지 정책 개선 및 시행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정부는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진척된 상황이 없다. 헤이그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국내 이행 법률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2015. 12.)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새로운 국회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재차 발의(‘2016. 9.)되었다.

[권고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비준 가능성 연구

권고내용

-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아르헨티나)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지속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은

어려웠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사형 폐지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국내법과의 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경우 위 [권고 3] 참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하여, 사형제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2016. 7.) 등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일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2015. 6. 대법원의 ‘서울경기지역 이주근로자노동조합(MTU)’ 사건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이주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권고 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권고내용

-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캄보디아)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필리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르완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알제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수단)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칠레)
-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인도네시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현재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기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고용 관련 고충 처리 절차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와 같은 고용 관계의 불공정한 처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1] 참조

주제 A13 : 인권조약 가입 유보

[권고 10] 다양한 인권조약 가입유보 철회

권고내용

-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슬로베니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 「민법」 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부적절한 아동입양을 시도한 입양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동입양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아동 친부모의 동의 또는 입양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 정지 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도입되었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과 상충되는 민법 제781조가 개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결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만, 부모가 동의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계승할 수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 중 유보된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 가) 자유권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
- 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 '姓 선택의 자유'
- 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 '입양허가제' 및 제40조제2항 나호의 (5) '상소권 보장'
- b)항 및 c)항의 입양허가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2015년 중간보고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철회를 위한 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유보가 조속히 철회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a)항의 경우 공무원과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결성권에 여전히 제한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권고 11] 아동권리협약 유보 철회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독일)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아일랜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입양에 관한 국내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의 유보가 철회될 수 있다.
- 입양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론지어지며 아동 입양 허가 신청이 내려지기 전에 친부모와 상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유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10] 참조

주제 A24 : 특별절차 협조

[권고 16]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 및 협조

권고내용

-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벨라루스)
-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우즈베키스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대한민국은 이미 2008년 모든 주제별 특별 절차에 대한 상시초청을 연장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 2012년 9월, 외교부와 법무부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과가 게시되었다. 2013년 9월에 정부는 최종견해의 권고와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 및 난민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정보를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 2013년 9월 인신매매에 관한 세계 실천 계획 및 인신 매매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지역 협의의 실행을 검토하기 위해 2013년 5 월 고위 총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정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내 인신매매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UNODC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대한민국은 특별절차의 상시방문(standing invitation) 허용국이다.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을 방문조사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장 및 실무자 면담 등 특별보고관 방한 및 활동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 5.)
- b)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특별보고관(2014. 9.)
- c) 유해 물질 및 그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가 갖는 인권적 함의 특별보고관(2014. 11.)
- d)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 1.)
- e)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와 인권 문제 실무그룹(2016. 5.)

주제 A3 : 국가간 협력과 개발 원조

[권고 70] 인권 지향적 개발원조

권고내용

-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파라과이)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국제 개발 협력의 기본 정신이 여성,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양성 평등 및 소외 계층 고려 등 인권 관련 요소를 ODA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 고려했다. 경제 발전 협력 기금 (EDCF)의 평가 방법은 인권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화 될 것이다.
- 한편 외교부는 KOICA의 무상 개발 원조 프로그램에 인권적 관점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외무부는 8개국의 인권 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권업무를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 A41 : 헌법 및 법제도

[권고 56] 국가보안법 적용시 유의

권고내용

-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호주)
-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프랑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답변과 같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8.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제2기(2012-2016)와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및 제7조 규정 정비 등 대책 수립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6. 1. 방문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abrogate)할 것을 권고하였다.(제93항 Other Recommendations의 (a)항)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제7조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없다.

주제 A42 : 제도와 정책 - 일반

[권고 44] 지뢰피해자 보호

권고내용

-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태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타 피해 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10월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뢰 피해자는 현재 의료 보조금 및 기타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속적인 지뢰 제거 노력을 통해 199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약 68,000개의 지뢰가 제거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의 한국지부인 평화나눔회(Peace Sharing Association)가 2011년 강원지역 조사 결과(〈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한국전쟁 이후 군인이 아닌 민간인 228명이 유실된 지뢰 또는 매설된 지뢰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4. 1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7. 1. 현재 특별법 시행 이후 위로금을 신청한 397명 중 위로금을 수령한 사람은 46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12%에 불과하며, 특별법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으며, 사망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액 형평성에 문제⁶⁾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⁷⁾

6) 국회 박주민의원실에 따르면,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대에 달하는 등 피해 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함.(개정안 발의이유, 2016. 11. 21.)

7) 연합뉴스, 평생 고생한 지뢰피해자 위로금, 죽은 다음에 주나?(2017. 1. 4.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3/0200000000AKR20170103141800062.HTML?input=1195m>)

주제 A45 : 국가인권기구

[권고 14]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권고내용

-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스페인)
-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튀니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호주)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충분히 보장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 자격, 임명 과정, 조직 및 예산의 독립성에 관해 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관련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협의중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6.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다.

주제 A47 : 굻 거버넌스

[권고 46] 법의 지배 및 사회적 결속 촉진

권고내용

-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베트남)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검찰은 범죄 사건을 조사 할 때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 통계를 토대로 형사 사건을 매년 분석하고 대검찰청 웹 사이트에 분석보고서를 공개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권고 14] 참조

주제 A61 : 시민사회 협력

[권고 15] 시민사회 협력

권고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불가리아)
-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헝가리)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시민사회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2013년부터 NAP 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두 번째 UPR 권고안을 포함하도록 제2차 NAP를 개정하도록 2013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정부는 제2기 UPR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2012. 3.에 수립된 제2기 NAP를 2013. 12 개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UPR 권고나 NAP 이행 상황 검토 시 공청회나 토론회 외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및 역할이 어렵다.

특히, 조약기구와 UPR 권고 이행상황 평가의 경우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 B31 : 평등과 비차별

[권고 2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내용

-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팔레스타인)
-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차드)
-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인도)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호주)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 관련 문제에 관해 종교 지도자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그 적용에 관한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차별의 근거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⁸⁾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정부는 정부 입법 형태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이후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제3기(2017-2021) NAP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정부에 재차 권고한 바 있다.

8)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권고 24]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차별 사유 명시

권고내용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체코)
-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스페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 23에 관한 답변 참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⁹⁾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CCPR/C/KOR/CO/4)에서 아래와 같은 우려와 권고를 한 바 있다.

- a.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부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현재 인종차별이나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제12항).
- b. 당사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유를 막론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민관 구분 없이 자행되는 직간접적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제13항).

또한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제32항에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사회권규약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마련 시 성적지향 등을 차별사유로 열거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다.

9)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권고 22]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 노력

권고내용

-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네팔)
-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알제리)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안 21에 대한 답변 참고
- 2012년부터 정부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예술 전시회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23] 참조

[권고 34] 군형법 동성애 처벌 규정 폐지

권고내용

-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미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군형법 제92조의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님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안 23에 관한 답변 참고
- 2013년 4월 관련 조항 중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 성교'로 대체하고 제92조의6으로 옮기는 개정을 하였다. 동 조항은 병영에서 징계를 위해 유지되고 있을 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이 아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항문성교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2.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 중이던 헌법재판소에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¹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2012-2016) 뿐만 아니라 제3기(2017-2021) NAP 권고에서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정부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권고 33]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관련 연구

권고내용

-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아르헨티나)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 23에 관한 답변 참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23] 참조

10)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대한 결정>, 2010. 12. 8. 동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1. 3. 31. 결정을 통해 동 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하였다.

[권고 21] 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

권고내용

-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캐나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향유한다.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약 90개의 개별 법률이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합리적인 편의제공 의무가 2013년 4월부터 확대되었다.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동안 동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새로운 시설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23] 참조

주제 B32 : 인종차별

[권고 30] 인종차별 및 혐오 철폐

권고내용

-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쿠바)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 및 차별 금지 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2차 이민 정책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의 문화 다양성 증진 교육을 선정하여 시행 하였다.
-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¹¹⁾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등을 포함한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회는 혐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입법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뿐이다.

정부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위 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약 1,000명)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모두 혐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위협을 느끼고, 정체성을 숨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11)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주제 D1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일반 이행 조치

[권고 58] 보안관찰법 폐지

권고내용

-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북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 특히, 법무부는 ▲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 1. 답변과 같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의견 없음

주제 D23 : 사형제

[권고 35] 사형제 폐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권고내용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르완다)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위스)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슬로베니아)
-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우루과이)
-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독일)
-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스위스)
-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영국)
-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벨기에)
-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벨기에)
-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온두라스)
- 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우즈베키스탄)
-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탈리아)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노르웨이)
-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슬로바키아)
-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터키)
-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프랑스)
-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스페인)
-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호주)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1998년부터 사형 집행 사실이 없으며 사형 폐지 또는 사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3년의 답변과 같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기(2017-2021) NAP 권고 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의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을 도입과 사형집행의 지속적 중단을 권고하였다.

주제 D25 :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금지

[권고 13]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 개념 국내법 도입

권고내용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멕시코)
-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튀니지)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년 답변과 같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¹²⁾

대한민국 법제도 내에서 고문의 구체적 정의는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¹³⁾은 고문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¹⁴⁾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사유의 하나로서 고문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고문’이 고문방지협약(CAT)에서의 ‘고문’의 정의와 명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CAT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고문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고문 금지에 관한 규정들이 정신적 고문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 이는 결국 「형법」 등 관련 법률에서 CAT의 정의와 일치하는 ‘고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CPR/C/KOR/CO/4)」는 정신적 형태의 고문이 완전히 범죄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피조사자는 90명이다. 경찰 수사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검찰청은 2015년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극단적 행동을 예방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피의자 수사 관련 업무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였으나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2016. 9.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찰은 이를 수용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권고 37] 고문 엄정 처벌

권고내용

-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체코)
-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벨라루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경찰은 전국 보안 수사팀의 관리자들과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보호 관련 분야를 추가했는데, 2012년에 1회, 2013년에 7회 열렸다. 전국적인 보안 수사를 위한 15개의 낡은 심문 녹음실이 개선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13] 참조

12) 고문방지협약 의견서(안)(2017. 3.)에서 발췌

13)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4)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권고 38] 완전한 체벌 금지,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권고내용

-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팔레스타인)
-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우루과이)
-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헝가리)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이미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2014년 2월 정부는 학생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했다. 2014년부터 아동보호센터는 경찰청, 검찰청, 기타 정부 부처 및 법원에 아동학대 사례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학교에서의 체벌

20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접체벌은 전면 금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체벌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체벌 금지로 인해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간접체벌로 토끼땀, 얼차려, 운동장 돌기, 교실 뒤에 장시간 서 있기 등이 사용되며, 심지어 학생들끼리 때리도록 하는 간접체벌도 보고된 바 있다.

간접체벌은 신체에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고통 발생 주체가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양심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직접체벌 못지않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체벌이다.

고문방지협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which do not amount to)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간접체벌은 이 금지되는 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

라도 인종, 외모,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하는 굴욕적인 처우도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일 수 있다.

간접체벌도 직접체벌에 준하여 금지되거나, 고통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식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어린 아동에게 굴욕감을 초래하는 벌이나 행위도 금지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 D27 : 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

[권고 43]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권고내용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필리핀)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브라질, 네덜란드, 영국)
-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벨라루스)
-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벨기에)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 42에 대한 이행상황 참조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을 환영하며, 여성 이주 노동자의 인신매매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래 [권고 67] 참조

[권고 42] 팔레르모의정서 비준 및 관련 협력 강화

권고내용

-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말레이시아)
-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몰도바)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외교부는 2014년 7월 10일 〈유엔 초국적 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채택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 법안은 2015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5년 11월 유엔에 비준서가 기탁되었다. 인신 매매 범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은 2013년 4월 형법 개정을 통해 채택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43] 참조

주제 D31 : 자유와 안전 - 일반

[권고 55] 국가보안법 위반자 석방

권고내용

-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북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대한민국이 수행하는 모든 체포와 구금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56] 참조

[권고 36] 평화시위 보장

권고내용

-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폴란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경찰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강화 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법률 준수 시범

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 또한 집회 장소에 파견된 모든 경찰관은 사전에 인권 보호 및 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별 상황에서 주의할 점 등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 또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무력 사용시 징계 조치의 구체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찰관 징계 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 2014년에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경비 산업 및 관리의 허가 기준과 경비서비스 기관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6. 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관련자들의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회견을 못하도록 제지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반면, 2016. 4.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인근 특정 장소에서 신고 되는 집회를 일괄해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 금지 요건을 신중히 적용하고, 일괄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을 먼저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권고기관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다만, 최근 10월경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은 여전히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지만, 법원은 집회 주최자들이 요구하는 경찰의 금지처분의 집행정지를 반복해서 받아들여 부분적으로는 장소에 구애 없이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8.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장비인 살수차 사용의 안전성 확보 요구와 그 안전성의 확인 전까지의 사용 금지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고, 12월에는 관련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부 개정과정에서 살수차 직수 살수 금지, 위해성분 혼합 금지,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법률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가 매주 도심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와 함께 집회시위 자유로 동시에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D4 : 기본적 자유

[권고 57]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및 개정 노력

권고내용

-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독일)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노르웨이)
-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스페인)
-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미국)
-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북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답변과 같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56] 참조

주제 D42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권고 53]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권고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프랑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독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폴란드)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슬로바키아)
-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스페인)
- 대체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미국)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호주)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점검하기 위해 병무청은 병역 거부 또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58.3 %는 대체 복무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¹⁵⁾

대한민국은 2017. 2.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입영 또는 집종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 6. 발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서」(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723명이며 그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약 92.5%에 해당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CPR/C/KOR/CO/4)」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6. 11. 28.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는 권리임을 선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2017. 2.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및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1심 법원에서는 2017. 1. 현재 총 1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2016. 10.에는 2심(항소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017. 1.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기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5) 고문방지협약 의견서(안)(2017. 3.)에서 발췌, 일부 수정

주제 D43 :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고 50] 국제기준에 맞는 표현의 자유 보장 조치

권고내용

-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일본)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폴란드)
-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스위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했다.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절차는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36] 참조

[권고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법률적 보장

권고내용

-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최대한의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회에 대한 거짓보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집회가 열리지 않을 때 미리 통보하여 다른 집회 및 시위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36] 참조

[권고 52] 방송통신위원회 독립

권고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스위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2. 2. 23.)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년 답변과 같다. 동 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의견 없음.

[권고 54] 국가보안법 정당한 집행을 위한 법집행 공무원 훈련

권고내용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미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및 기타 관련법에 관한 교육이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및 수사관에게 제공된다.
- 현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재와 안전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협소하게 해석되어 신중히 적용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위 [권고 36] 참조

주제 D51 : 사법행정 및 공정한 재판

[권고 45] 아동친화적 사법 절차

권고내용

-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헝가리)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희생자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에 진술 조력인이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진술서 보조 시스템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피해자 조력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19. 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의 의무화 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전담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하며,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할 경우 피해아동측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선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2016 인권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검사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친부나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비율이 높고 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13세 미만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 E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일반 이행 조치

[권고 60] 건강권과 교육권 강화(취약계층)

권고내용

-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쿠바)
-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바레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같은 의료 보조 대상자의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회귀 및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중증 환자 및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청소년 보호소 및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같은 공식 교육 이외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에 대한 과외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¹⁶⁾

2014년 기준,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층 비율은 2014년 8.6%(가처분소득 기준)가 넘는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9%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대략 62%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빈곤층의 상당 비율은 병원비의 40% 정도를 본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9%, 2종의 경우 7.6%로 보고되고 있어 빈곤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보장은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라는 점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6)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주제 E21 :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 - 일반

[권고 59] 빈곤퇴치, 공정 분배 및 소득양극화 해소

권고내용

- 대한민국의 빈곤퇴치 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이란)
-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중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급여의 특징과 상대적 빈곤선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향상시킴. 또한 정부는 의무 지원 제공(obligatory support providers)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개혁을 시작하였음.
- 하위 70 % 소득 계층에 속하는 65 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최대 20 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기초 연금법」이 2014 년부터 시행되었다.
- 한부모 가정 및 고아 아동과 같은 적절한 주택 확보에 불리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공공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임대 우선 순위 지정이 부여됨.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7. 2. 24.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4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834만 8천원으로 오히려 2.1% 증가하였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제 E23 : 적절한 주거의 권리

[권고 61] 보금자리 주택 지속 수행

권고내용

-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쿠웨이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연간 평균 10만 개의 임대 주택이 공급 될 것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보금자리주택 프로젝트는 이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폐지되었다.

2017년 행복주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362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약 60%가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비싼 월세 및 열악한 거주환경의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 대비 물량이 부족하여 향후 물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 E41 : 건강권 - 일반

[권고 62]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권고내용

-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쿠웨이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전면 개정되었음. 또한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에서 의료 서비스 사용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방, 지역 및 관할 지역의 보강이 강화되었음.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¹⁷⁾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3조 1천 9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동안의 누적 흑자 총액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여, 20조 7천 166억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77%)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였으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러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63.2%로 다소 상승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 총액 중 공공재원이 조달하는 비중은 55.9%로서, OECD 평균 72.7%보다 18%p 정도 낮다.

17)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주제 E51 : 교육권 - 일반

[권고 63] 등록금 경감

권고내용

-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국가 장학금〉정책이 2011년 9월에 도입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2014년에는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음. 또한 2017년까지 고등 교육 장학금을 GDP의 1%까지 확대하려는 고등 교육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2014년에 발표되었음.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¹⁸⁾

정부는 2015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3조 6,000억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1,000억원)에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3조 1,000억원을 합하면 모두 7조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고 2015년 기준 국내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이므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는 국가장학금 1·2 유형에 소요되는 예산만 4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8분위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위 소득분위 학생들에게 그만큼 적게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현행 B학점 이상)도 낮추어야 한다.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재의 성적기준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이다.

소득분위 산정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가족의 소득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정보를 토대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데도,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분위가 높은 것으로 산정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18) 외부 전문가(김형모) 자문의견

주제 F12 : 여성차별

[권고 25] 성평등

권고내용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팔레스타인)
- 남녀 간의 법률상,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률 및 규제 개선 조치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3. 11. 20. 19대 국회 중 김상희 의원(민주당) 대표발의로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포괄적 법률인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제정 필요성에 공감함을 의견표명을 했으나(2014. 4. 24),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구)「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하고 있어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권고 28] 싱글맘¹⁹⁾ 차별 금지

권고내용

-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브라질)
- 법률상 및 사실상의 미혼모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멕시코)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독일)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일부 수용]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미혼모를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 17개 자치단체에 지정된 수행조직을 통해 미혼모는 정서 중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 그룹 회의와 같은 기타 서비스와 함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위해 복지 시설 내에 10개의 대안 학교가 운영중이다.
- 미혼모가 학교에 돌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생 입학 제도가 입법화 되었다. 미혼모가 차별을 당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속적인 지도가 제공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구)「모부자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2017년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편된 후 한 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1년 동법 개정으로 제3조 제1항(“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미혼의 부모, 특히 결혼하지 않은 싱글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크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며, 위 신설 조항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19) UPR 권고 70개 중 4개(26, 28, 29 및 47)에서 총 6회 single mothers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정부 공식 번역문은 모두 ‘미혼모’로 번역하고 있으나, 사회적 낙인 등 용어 자체의 차별적 속성뿐만 아니라 포함하는 대상 범주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의견서 평가표에서는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싱글맘’으로 통칭함.

[권고 48] 여성 고용기회 확대 노력, 남녀 임금격차 극복 조치

권고내용

-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일본)
-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슬로베니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래로 공공기관의 여성 교사 및 여성 관리자 수를 높이고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증진 시키는 노력이 국가적 의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3년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목록을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보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여성 취업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 고용 기준을 확대하고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 2014년 이후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외에도 사용자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또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지원이 확대되었다. 육아 휴가를 위한 배우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1인당 1년이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노동시장 내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4.6%로 남성 대비 7.4%p가 높으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49.9%로 남성 대비 21.2%p가 낮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대비 62.8%에 불과하고, 여성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은 43.1%로 남성 대비 9.4%p 낮다. 또한 여성 임금노동자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62.3%로 남성 대비 11.4%p나 낮는데 이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체	34.2	33.3	32.6	32.4	32.5	32.8
남자	27.8	27.2	26.5	26.6	26.5	26.4
여자	42.8	41.5	40.6	39.9	40.2	41.0
남녀 격차	15.0	14.3	14.1	13.3	13.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권고 26] 여성 지위 향상

권고내용

-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중국)
-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몰도바)
-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오만)
-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 25에 대한 답변 참고
- 정부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임원단 및 정부위원회와 같이 2013년부터 공공 서비스, 교육직 및 공공 기관에서 여성 대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 학교 자격 시험 교육, 자립 촉진 지원 시스템, 10대 한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 격차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전체 142개국 가운데 117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또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고등교육과 기업 임원,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를 낸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종합점수 25점을 받아 OECD 29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고시 자료를 통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은 28.98%이고, 특히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직의 경우 여성은 5.66%에 불과하다.

[권고 27] 가정에서의 평등과 가정폭력 관련 교육

권고내용

-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폴란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년 6월부터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의무 교육을 교육 기관의 범위가 학교에서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까지 확대되었다.
-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TV 프로그래밍 및 전자 디스플레이 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통신 수단이 긴급지원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 또한 검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이주자 보호 및 통역사 임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4분인 반면 맞벌이 남성은 40분에 그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거의 5배에 달했다.

주제 F13 : 여성 대상 폭력

[권고 49] 성희롱 형사 범죄화

권고내용

-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네덜란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신중한 검토 필요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4시간 이상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참여 독려를 위해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 당 고위 공무원, 인턴 및 계약직 근로자의 참여율이 2014년 7월부터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 2012년 실시된 공공기관 성희롱 조사 후 여성가족부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하거나 성희롱의 은폐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영세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희롱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표한 바 있으나, 2014. 9.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구)「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고 관련 하여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공공기관 내 성희롱이 예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권고 4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노력

권고내용

-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이라크)
- 아동폭력 철폐를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키르기즈스탄)
- 아동 폭력 철폐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세네갈)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2014년 2월)에 부모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 강화 및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예방 계획을 포함시켰다. 2014년 상반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²⁰⁾

아동 대상 폭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아동학대 주요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19,209건이 접수되고, 매년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2016. 4. 12. 발표) 「형법」(아동학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 인원은 2011년 183명에서 2015년에는 2,691명으로 늘어났고, 위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3년(459명)에 비해서는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인원 역시 2011년에는 4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1명으로 이전보다는 높아졌으나, 미국의 9명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어서가 아닌, 아동학대의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의 1,346건에서 2014년의 4,358건으로 10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10% 정도로 학대가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조치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대상 폭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제3기 NAP 권고에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교육 등의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으나 군대, 직장, 대학 등 권력형 성희롱과 성폭력과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 스토킹과 성행위의 무단 촬영 및 인터넷 유포 등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권고 39] 가정폭력 예방 : 여성 경찰관 증원, 피해자 쉼터, 재활 서비스

권고내용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몰도바)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헝가리)
-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슬로바키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관련 부처는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시설 보호 대상자를 관리하고 전산화된 참조 번호만을 사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응급 콜센터 및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신체적 학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치 및 포기를 포함한 비신체적 가정폭력 피해자도 사실 확인 후 상담 등을 지원한다.

20)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 한편, 검찰청은 결혼 이주자 보호 및 통역사 선임 조항이 포함 된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중이며 결혼 이주 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각 검찰청에 통역사가 추가로 임명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피해자 쉼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은 정비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언론 노출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였으며, 가정폭력 쉼터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²¹⁾

여성 경찰관 증원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였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로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 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 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1) 제3기 NAP권고에서의 제2기 NAP 평가

주제 F31 : 아동 - 정의, 일반원리, 보호

[권고 29]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권고내용

-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노르웨이)
-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프랑스)
-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이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아일랜드)
-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멕시코)
-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루마니아)
-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스위스)
-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싱글맘과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캐나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정부의 관련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

-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 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출생 신고는 법으로 의무화된다. 특정 기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벌칙이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및 제 122조).
- 입양 전에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양특례법」(2012년 8월) 및 「민법」(2013년 7월)이 개정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대한민국 법제도에서는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 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에 해당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특종신고편철장). 그러나 이는 ‘신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국 공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 등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 되지 않는다. 대략 2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한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은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 영유아기 아동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아동매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권고 1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소위원회 설치

권고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팔레스타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아동권리소위원회 설립을 검토하였지만 공식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4년 8월에 사무국 내 아동권리만을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설치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6. 5.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권고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학대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내용

-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아동 권리를 감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12년부터 굿네이버스에 위탁하여 감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 아동 권리 교육의 경우 2008년 국가적 아제다의 일환으로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 개발 및 제공"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2009년부터 아동시설, 부모, 장래 부모 및 교직원에게 제공되었다.
- 정부는 2012년부터 학대 아동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권리모니터링 업무를 이관받아 독립적 및 상시적으로 아동권리 침해를 감시하고 있다.

[권고 19] 아동권리 보호 노력 지속, 취약 집단 아동 보호

권고내용

-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말레이시아)
-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오만)
-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일본)
-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2013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2015년 5월에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20>을 채택했다.
- 이 기본계획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마련되었는데, 2013년 실시된 종합조사를 통해 이 계획은 5개 부문, 16개 주요 의제 및 158개의 특정 의제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행 5년 동안의 총 예산은 4.5 조원이다. 동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추진업무를 취합하는 기능 외에 각 부처 간 사업 협력이나 조정까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제 F32 : 아동 - 가족 환경과 대안적 돌봄

[권고 47] 국제 입양제도 개선 및 국가입양센터 설립

권고내용

-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절차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독일)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권고 9에 대한 이행 상황 참조
- 2012년 8월에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10대 모 자녀의 입양 동의 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입양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었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2012. 8.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 설치되었으며, 2013. 7. 민법개정으로 입양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민법에 의하면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제910조)고 규정되어 있어, 미혼부모의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은 미혼부모가 아닌 그들의 친권자인 미혼부모의 부모(아동의 조부모)가 행사한다. 따라서 미혼부모의 동의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헤이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기구의 기능은 협약이 과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교환하며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과, 직접 또는 공적 기관을 통하여 입양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또는 기타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관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6. 9.)에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제 F33 : 아동 - 착취로부터 보호

[권고 41]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방지 노력

권고내용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보츠와나)
-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벨라루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성폭력 예방 교육은 2011년부터 공공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4월부터는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각기 다른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양성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13년 6월 관련 정부 부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준비·발표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센터를 통해 성 감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호 시설이 설립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²²⁾

2017. 3. 1.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이 공개된 성 범죄자 중 강간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32.3%로 나타났다. 2012년 42.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사범 셋 중 한 명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다.²³⁾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또한 보호처분에 의해 범죄기록, 수사자료 등이 남아 성매매 피해신고를 꺼리게 되고, 알선자와 성매수자가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67.0%)’, ‘인터넷 카페/채팅(27.2%)’ 순서로 나타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설은 업무의 성격상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화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2)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2016, 국가인권위원회), p.393 요약

23)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1년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대상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자는 3,366명으로 2014년(3,234명)보다 4.1% 증가했는데, 강간사범은 855명(2014년)에서 733명(2015년)으로 줄었지만 이 733명 중 495명(67.5%)만 징역형을 받았고, 237명(32.3%)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여성가족부 2017. 3. 1.자 보도자료).

주제 F35 : 무력충돌 상황의 아동

[권고 20] 아동의 무력충돌 상황 참여 금지

권고내용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가 2004년 무력 충돌 아동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다.
- 모의 군사 훈련 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1997년 12 월 30일에 제7차 교육 개혁이 시행된 이후 고교의 군대 교육은 이제 선택사항이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안전과 보건"으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의견 없음

주제 F41 : 장애인 - 정의 및 일반 원칙

[권고 12]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제한 법제 개정

권고내용

-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코스타리카)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상법의 보험편 개정안이 2014년 3월에 공포되어, 결정 능력이 있는 지적장애자들은 단체 보험이 적용될 때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생명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정부가 중간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법」 개정내용은 (구)「상법」 제732조를 둘러싼 논란과 개정요구가 계속되자 기존 조항에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으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대한 사망보험사고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예외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사망보험이나 단체보험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심신박약자라 지칭되는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 판단이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사망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상품 시장을 고려할 때 정신적 장애인은 거의 모든 보험가입에서 배제되며, 실혹 가입 하였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서는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개정 「상법」 제732조는 이러한 결정과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능력’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지 여전히 장애인 배제관행을 근절하는 데가 한계가 없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732조는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하며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철폐했다고 보기보다 ‘의사능력’이라는 구체적 기준으로 보험가입거절의 관행과 보험차별에 대한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G4 : 이주민

[권고 69] 미등록 외국인 인권 보호

권고내용

- 비정규(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를 고려할 것(방글라데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년 1월에 제출된 답변을 참조할 것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아래 [권고 32] 및 [권고 66] 참조

[권고 68] 난민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보호

권고내용

-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벨라루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2014 년 이래로 난민 신청자들은 생활비를 지원 받았다. 가족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배우자와 미성년자 인정 난민 아동에게 비자 발급에 관한 절차 지침이 제정되었다. 현재 인정된 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는 한국에서 난민 체류를 인정 받는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아래 [권고 32] 및 [권고 66] 참조

[권고 3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권고내용

-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모로코);
-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스페인)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상의 주요 권리에 대한 정보와 권리 침해시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고용주는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사 관계 관리를 포함한 교육을 제공받는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아래 [권고 32] 및 [권고 66] 참조

[권고 67] 인신매매 금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권고내용

-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베트남)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네팔)

-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세네갈)
-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스리랑카)
-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태국)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 능력 훈련을 제공하며,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지시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과 후에 법 위반 사례 및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전에는 결혼 이주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초기 정착을 지원 하도록 확대되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갈등 해소 방법과 고용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해왔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예술홍행(E-6) 비자²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예술홍행(E-6) 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고 있으며, 46%가 여권을 압류당하고 있고, 23%는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 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권고’에서 유엔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및 유엔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등을 참조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행위수단·목적 등으로 구성된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및, 경찰·출입국 관련 조치 등을 포함한 15개 보호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에 제시하였다.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노출 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사후 처리 등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등의 범죄 상황에 자의에 반하여 노출되고 처벌받는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간주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피

해자로 구제받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업과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²⁵⁾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에는 과도한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입국 후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회사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제도>가 민간에 이양되어 있어,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착취, 차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관계당국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14.3%가 취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현장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포괄(산정)임금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이면계약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현재 대한민국은 이주의 여성화 경향이 높다.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2016. 10. 20.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대한민국 내 상주 외국인 142만 5천명 중 남자는 78만 8천명(55.3%), 여자는 63만 7천명(44.7%)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여자는 3만 1천명(5.0%), 남자는 2만 1천명(2.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은 외국인 가입이 임의 사항이어서 가입률이 낮다.

노동현장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는 ‘이주’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에 의해 남성 이주노동자와는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는 32만 4천명이며, 그중 8만 6천명이 섬유, 전자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인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려는 부각되지 못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및 고용 변동신고로 인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어폭력·육체폭력,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노동조건·주거환경·건강권·모성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25)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권고 65]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권고내용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프랑스)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2013년 1월에 제출된 답변을 참조할 것. 2012년 7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사업 운영을 재배치 할 수 있고 이는 허용된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²⁶⁾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12. 8.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구인업체의 사용주에게만 이주노동자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용주의 선택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2014.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금을 이주노동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국내에서 퇴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26)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권고 32]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대책 및 이주 아동 보호 정책

권고내용

-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수단)
-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탄)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다문화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고안되었다. 미등록 이주 여성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심의위원회'는 교육 이력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교육 수준에 따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성폭력 등의 학대를 당한 이주 여성의 경우 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부여된다.
- '다누리 콜센터' 2006년부터 7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이주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소가 27개 사무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결혼이주 여성²⁷⁾

정부는 이혼 후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체류자격을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체류기간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혼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체류허가 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임의로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²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거주지 증명’ 등으로 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은 매우 취약하다.

2016년 12월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총 체류 외국인인 141,991명²⁹⁾이고, 한국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의 통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등록 이주 아동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년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외국인 가정 자녀 약 28,000 여명 가운데 약 절반만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고 66] 미등록 이주민 자녀 의료서비스 접근권

권고내용

- 미등록(undocumented) 이주자의 자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아일랜드)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수용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재한 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2013년부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경우 1회 최대 500,000원까지 재정 지원을 한다. 또한 출산 전 검진과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에게는 12가지 유형의 무료 예방 접종이 제공되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27) 사회권규약 쟁점목록 의견서(2017. 2)에서 발췌

28) 전문가(오경석) 자문 의견

29)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16년 12월호)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³⁰⁾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 포함)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도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의해 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지정병원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나 대상자들에게 정보공유가 부족하고, 연결체계가 없으며, 임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30) 전문가(오경석) 자문 의견

주제 G5 : 난민 및 난민희망자

[권고 64] 난민 등에 대한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권고내용

-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권고 직후 정부입장(2013. 1)

-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속 검토

최근 정부의 입장(2015 중간보고서)

- 난민을 지원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2013년 11월에 개소하였다. 등록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자유로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과 문화 교류 등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 센터에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의견 없음

제2기 권고 및 정부 입장(권고 당시 정부 입장 및 중간보고서 입장) 3단 비교표

<주>

- A12 등 주제 번호는 OHCHR에서 부여한 고유 번호임
- 권고 문항 번호는 고유번호임. 즉, 우리나라 제2기 UPR 심의 후 실무그룹이 제출한 보고서(A/HRC/22/10, 2012)는 총 1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24항에서 하위번호인 124.1부터 124.70까지 총 70개 권고를 열거하고 있음
- 표 상에서의 권고 번호 순서는 OHCHR의 주제별 범주에 따른 순서를 그대로 사용함
- '2015 중간보고서'의 경우 정부가 국문본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영문본을 임시 번역하여 사용함

주제 A12 국제기준 수용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3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페인)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체코)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酷속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불가리아)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코스타리카)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슬로베니아)	▪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안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5년 연구주제로 채택되었다. 한편, 국가 인권위원회는 현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국가예방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구금 시설은 현재 고등 행정 사무소와 감독 등국 (국방부, 법무부, 검찰청)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감시되고 조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공개된다.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튀니지) ▪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이타크)	▪ 수용	▪ 교육에서 차별에 관한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와 교육권 특별 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 철폐에 관한 연구'가 2013년에 수행되었고, 교육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도 준비 단계에 있다.	
6	▪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스페인) ▪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아르헨티나) ▪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이라크)	▪ 강제실종협약 기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고 각 부처의 내부 검토를 토대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정부 부처와의 향후 논의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스페인)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기준을 고려할 것(팔레스타인)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정부는 2014년 9월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국내 구제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결론을 검토하는 중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주최하는 패널 토론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ICESCR 선택 의정서 비준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7	▪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필리핀) ▪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우루과이)	▪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	▪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과 강제 노동에 관한 II O 협약에 관해서는 2006년부터 비준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정부는 ILO 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비준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사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근로에 관한 협약> 비준 문제는 협약의 일부 조항이 현재 국내법과 충돌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될 것이다. ▪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사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이주자를 포함한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약 기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4	진정 절차에 관한 '이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개인 진정에 관한 이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전제로 하는 국내 구제책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9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프랑스)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아일랜드)	수용	정부는 2013년 5월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다. 비준 이전에 필요한 입법 개정과 정책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의 특별 전담 기구가 창설되었다. 아동 정책조정위원회의 논의에 이어, 협약 비준을 위해 2015년까지 정책 개선 및 시행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아르헨티나)	수용	지속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은 어려웠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제2차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사형 폐지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국내법과의 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다.
5	-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 할 것 (칠레) -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인도네시아)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정부는 현재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고용 관련 고충 처리 절차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와 같은 고용 관계의 불공정한 처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주제 A13 가입 유보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10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 규약', '아동의 매매·상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신체의정서·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슬로베니아)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여권, 국민주권, 공공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 「민법」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 정부는 부작질한 아동입양을 시도한 입양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동입양특례법 제13조 제2 항 및 제3항에 아동 친부모의 동의 또는 입양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 정지 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도입되었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과 상충되는 민법 제781조가 개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결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만, 부모가 동의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계승할 수 있다.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아일랜드)	수용	- 입양에 관한 국내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아동권리협약 제2 조 (a)의 유보가 철회될 수 있다. - 입양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론지어지며 아동 입양 허가 신청이 내려지기 전에 친부모와 상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유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제 A24 특별절차 협조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16	-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벨리루스) -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우즈베키스탄)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조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 대한민국은 이미 2008년 모든 주제별 특별 절차에 대한 상시조청을 연장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 이사회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2012년 9월 외교부와 법무부는 같은 관련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과와 같은 결과를 게시되었다. 2013년 9월에 정부는 최종건의 권고와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 및 난민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정보를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2013년 9월 인신매매에 관한 세계 실천 계획 및 인신 매매 피해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지역 협의의 실행을 검토하기 위해 2013년 5 월 고위 총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정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내 인신매매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UNODC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주제 A3 국가간 협력과 개발 원조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70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파라과이)	수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국제 개발 협력의 기본 정신이 여성,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양성평등 및 소외 계층 고려 등 인권 관련 요소를 ODA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 고려했다. 경제 발전 협력 기금 (EDCF)의 평가 방법은 인권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화 될 것이다. - 한편 외교부는 KOICA의 무상 개발 원조 프로그램에 인권적 관점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외무부는 8개국의 인권 정책 개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 A41 헌법 및 법제도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6	-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것(호주) -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프랑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답변과 같다.

주제 A42 제도와 정책 - 일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4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태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 피해 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10월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뢰 피해자는 현재 의료 보조금 및 기타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속적인 지뢰 제거 노력을 통해 199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약 68,000개의 지뢰가 제거되었다.

주제 A45 국가인권기구(NHRI)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14	■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스페인) ■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튀니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호주)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충분히 보장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 자격, 임명 과정, 조직 및 예산의 독립성에 관해 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관련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협의중이다.

주제 A47 굿 거버넌스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6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베트남)	수용	검찰은 범죄 사건을 조사 할 때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 통계를 토대로 행사 사건을 매년 분석하고 대검찰청 웹 사이트에 분석보고서를 공개한다.

주제 A61 시민사회 협력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15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불가리아) -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헝가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시민사회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2013년부터 NAP 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두 번째 UPR 권고안을 포함하도록 제2차 NAP를 개정하도록 2013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주제 B31 평등과 비차별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23	-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인도네시아) -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말레시아) -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차드) -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호주)	수용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 관련 문제에 관해 종교 지도자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그 적용에 관한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차별의 근거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24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체코) -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스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권고 23에 관한 답변 참고
22	-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네팔) -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알제리)	수용	- 권고안 21에 대한 답변 참고 2012년부터 정부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예술 전시회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34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미국)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에 등 성적 지향	- 권고안 23에 관한 답변 참고 2013년 4월 관련 조항 중 '계간이라는 용어를'항문 성교로 대체하고 제92조의 6으로 옮기는 개정을 하였다. 동 조항은 병영에서 지계를 위해 유지되고 있을 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이 아니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은 아님	
33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아르헨티나)	수용	권고안 23에 관한 답변 참고
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캐나다)	수용	-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향유한다. 차별금지차와 관련하여 약 90개의 개별 법률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합리적인 편의제공 의무가 2013년 4월부터 확대되었다.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동안 동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새로운 시설을 모니터링하였다.

주제 B32 인종차별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30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쿠바)	수용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 및 차별 금지 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2차 이민 정책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의 문화 다양성 증진 교육을 신장하여 시행 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제 D1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일반 이행 조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8	기존 장치법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 (북한)	-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 특히,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개별위협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보안관찰처분심의회·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개별위협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2013년 1월의 답변과 같다.

주제 D23 사형제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35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프랑스)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위스)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슬로베니아) ■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우루과이) ■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독일) ■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스위스) ■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영국) ■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벨기에) ■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벨기에) ■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온두라스) ■ 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우즈베키스탄) ■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 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 1998년부터 사형 집행 사실이 없으며 사형 폐지 또는 사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3년의 답변과 같다.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노르웨이) ▪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슬로바키아) ▪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임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터키) ▪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프랑스) ▪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 (스페인) ▪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호주)		
--	---	--	--

주제 D25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금지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13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멕시코) ▪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튀니지)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 2013년 답변과 같다.
37	▪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체코) ▪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기해자를 기소할 것(벨라루스)	▪ 수용	▪ 경찰은 전국 보안 수사팀의 관리자들과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보호 관련 분야를 추가했는데, 2012년에 1회, 2013년에 7회 열렸다. 전국적인 보안 수사를 위한 15개의 남은 심문 녹음실이 개선했다.
38	▪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팔레스타인) ▪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공격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우루과이) ▪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헝가리)	▪ 수용	▪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이미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2014년 2월 정부는 학생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했다. 2014년부터 아동보호센터는 경찰청, 검찰청, 기타 정부 부처 및 법원에 아동학대 사례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제 D27 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3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필리핀)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브라질)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네덜란드)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영국) -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벨라루스) -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헝가리)	수용	권고 42에 대한 이행상황 참조
42	-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말레이시아) -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몰도바)	수용	- 외교부는 2014년 7월 10일 <유엔 초국적 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채택을 위한 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 법안은 2015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5년 11월 유엔에 비준서가 기탁되었다. 인신 매매 범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은 2013년 4월 형법 개정을 통해 채택되었다.

주제 D31 자유와 안전 - 일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5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북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관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수행하는 모든 체포와 구금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6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폴란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음	- 경찰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강화 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법률 준수 시범 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 또한 집회 장소에 파견된 모든 경찰관은 사전에 인권 보호 및 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별 상황에서 주의할 점 등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 또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무력 사용시 강제 조치의 구체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찰관 강제 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2014년에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경비 산업 및 관리의 허가 기준과 경비서비스 기관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 기준이 강화되었다.

주제 D4 기본적 자유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7	■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독일)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노르웨이) ■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스페인) ■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미국) ■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북한)	■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답변과 같다.

주제 D42 사상, 양심, 양심, 종교의 자유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3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프랑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독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폴란드)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슬로바키아) ■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 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스페인) ■ 대체복무가 비전통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미국)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호주)	■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제 하에 서의 병역자인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점검하기 위해 병무청은 병역 거부 또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58.3 %는 대체 복무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주제 D43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0	-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일본)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폴란드) -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스위스)	수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했다.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절차는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하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최대한의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회에 대한 거짓보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집회가 열리지 않을 때 미리 통보하여 다른 집회 및 시위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전환 것(스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2013년 답변과 같다. 동 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충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12. 2. 23.)	
54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장당한 집행에 관한 훈령을 제공할 것(미국)	▪ 수용	▪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및 기타 관련법에 관한 교육이 공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및 수사관에게 제공된다. ▪ 현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재와 안전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협소하게 해석되어 신중히 적용된다.

주제 D51 사법행정 및 공정한 재판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5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형가리)	수용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희생자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에 진술 조력인이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진술서 보조 시스템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피해자 조력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주제 E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일반 이행 조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60	-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쿠바) -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바레인)	수용	- 정부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같은 의료 보조 대상자의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회귀 및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중증 환자 및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청소년 보호소 및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같은 공식 교육 이외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에 대한 과외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주제 E21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 - 일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59	-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이란) -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중국)	수용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급여의 특성과 상대적 빈곤선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향상 시킴. 또한 정부는 의무 지원 제공(obligatory support providers)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개편을 시작하였음. - 하위 70 % 소득 계층에 속하는 65 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최대 20 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기초 연금법」이 2014 년부터 시행되었다. - 한부모 가정 및 고아 아동과 같은 적절한 주택 확보에 불리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공공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임대 우선 순위 지정이 부여됨.

주제 E23 적절한 주거의 권리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61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쿠웨이트)	수용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연간 평균 10만 개의 임대 주택이 공급 될 것임.

주제 E41 건강권 - 일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62	간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쿠웨이트)	수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전면 개정되었음. 또한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에서 의료 서비스 사용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방, 지역 및 관할 지역의 보장이 강화되었음.

주제 E51 교육권 - 일반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63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관)	수용	〈국가 장학금〉장학금이 2011 년 9월에 도입되고 2012 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2014년에는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음. 또한 2017년까지 고등 교육 장학금을 GDP의 1%까지 확대하려는 고등 교육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2014년에 발표되었음.

주제 F12 여성차별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임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25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말레스타인) -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률 및 규제 개선 조치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28	-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브라질) -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멕시코)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독일)	[일부 수용]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 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 미혼모를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 17개 자치단체에 지정된 수행조직을 통해 미혼모는 정서 중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 그룹 회의와 같은 기타 서비스와 함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위해 복지 시설 내에 10개의 대안 학교가 운영된다. - 미혼모가 학교에 돌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생 입학 제도가 엄벌화되었다. 미혼모가 차별을 당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속적인 지도가 제공된다.
48	-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일본) -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슬로베니아)	수용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래로 공공기관의 여성 교사 및 여성 관리자 수를 높이고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증진 시키는 노력이 국가적 의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3년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목록을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보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여성 취업을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 고용 기준을 확대하고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4년 이후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외에도 사용자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또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지원이 확대되었다. 육아 휴가를 위한 배우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1인당 1년이다.
26	-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중국) -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몰도바) -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오만) -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수용	- 권고 25에 대한 답변 참고 - 정부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임원단 및 정부위원회의와 같이 2013년부터 공공 서비스, 교육적 및 공공 기관에서 여성 대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 학교 자력 시험 교육, 자립 촉진 지원 시스템, 10대 한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7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폴란드)	수용	2013년 6월부터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의무 교육을 교육 기관의 범위가 학교에서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까지 확대되었다. -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TV 프로그램 및 전자 디스플레이 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통신 수단이 긴급지원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 또한 검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이주자 보호 및 통역사 임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 F13 여성 대상 폭력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9	■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네덜란드)	■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충분한 검토 필요	■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4시간 이상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참여 독려를 위해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 당 고위 공무원, 인턴 및 계약직 근로자의 참여율이 2014년 7월부터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 2012년 실시된 공공기관 성희롱 조사 후 여성가족부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하거나 성희롱의 은폐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40	■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이라크) ■ 아동폭력 철폐를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키르기스스탄) ■ 아동 폭력 철폐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세네갈)	■ 수용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2014년 2월)에 부모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 강화 및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예방 계획을 포함시켰다. 2014년 상반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다.
39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몰도바)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헝가리) ■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슬로바키아)	■ 수용	■ 관련 부처는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시설 보호 대상자를 관리하고 전신화된 참조 번호만을 사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응급 콜센터 및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신체적 학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치 및 포기를 포함한 비신체적 가정폭력 피해자도 사실 확인 후 상담 등을 지원한다. ■ 한편, 검찰청은 결혼 이주자 보호 및 통역사 선임 조항이 포함된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중이며 결혼 이주 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각 검찰청에 통역사가 추가로 임명되었다.

주제 F31 아동 - 정의, 일반원리, 보호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29	■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노르웨이) ■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프랑스) ■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아일랜드) ■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멕시코) ■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스위스) ■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정부의 관련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행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	■ 출생 신고는 법으로 의무화된다. 특정 기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벌칙이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및 제122조). ■ 입양 전에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양특례법」(2012년 8월) 및 「민법」(2013년 7월)이 개정되었다.

	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임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캐나다)	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팔레스타인)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아동권리소위원회 설립을 검토하였지만 공식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4년 8월에 사무국 내 아동권리만을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설치되었다.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수용	- 아동 권리를 감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12년부터 굿네이버스에 위탁하여 감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 아동 권리 교육의 경우 2008년 국가적 아제다의 일환으로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 개발 및 제공"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2009년부터 아동시설, 부모, 장래 부모 및 교직원에게 제공되었다. - 정부는 2012년부터 학대 아동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9	-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말레이시아) -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오만) -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일본) -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수용	- 정부는 2013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2015년 5월에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20」을 채택했다. - 이 기본계획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마련되었는데, 2013년 실시된 종합조사를 통해 이 계획은 5개 부문, 16개 주요 의제 및 158개의 특정 의제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행 5년 동안의 총 예산은 4.5 조원이다. 동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주제 F32 아동 - 가족 환경과 대인적 돌봄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7	■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절차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독일)	■ 수용	■ 권고 9에 대한 이행 상황 참조 ■ 2012년 8월에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10대 미혼모의 입양 동의 관련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입양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었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제 F33 아동 - 착취로부터 보호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41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보츠와나) ■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벨라루스)	■ 수용	■ 성폭력 예방 교육은 2011년부터 공공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으 며, 2013년 4월부터는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각기 다른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양성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13년 6월 관련 정부 부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준비 · 발표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센터를 통해 성 감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동 및 청소년 피해 자를 위한 특별 보호 시설이 설립되었다.

주제 F35 무력충돌 상황의 아동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2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 장부가 2004년 무력 충돌 아동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다. - 모의 군사 훈련 금지령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1997년 12 월 30일에 제7차 교육 개혁이 시행된 이후 고교의 군대 교육은 이제 선택사항이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안전과 보건"으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주제 F41 장애인 - 정의 및 일반 원칙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12	장에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범 제 732조를 개정할 것(코스타리카)	수용	상범의 보험편 개정안이 2014년 3월에 공포되어, 결정 능력이 있는 지적장애자들은 단체 보험이 적용될 때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생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제 G4 이주민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69	비정규(irregular) 이민 문제를 은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를 고려할 것(방글라데시)	-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13년 1월에 제출된 답변을 참조할 것
68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벨라루스)	수용	2014 년 이래로 난민 신청자들은 생활비를 지원 받았다. 가족 결함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배우자와 미성년자 인정 난민 아동에게 비자 발급에 관한 절차 지침이 제공되었다. 현재 인정된 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는 한국에서 난민 체류를 인정 받는다.
31	-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모로코); -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스페인)	수용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상의 주요 권리에 대한 정보와 권리 침해시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고용주는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사 관계 관리를 포함한 교육을 제공한다.
67	-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베트남)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네덜) -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작업 능력 훈련을 제공하며,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지시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과 후에 법 위반 사례 및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전에는 결혼 이주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초기 정착을 지원하도록 확대되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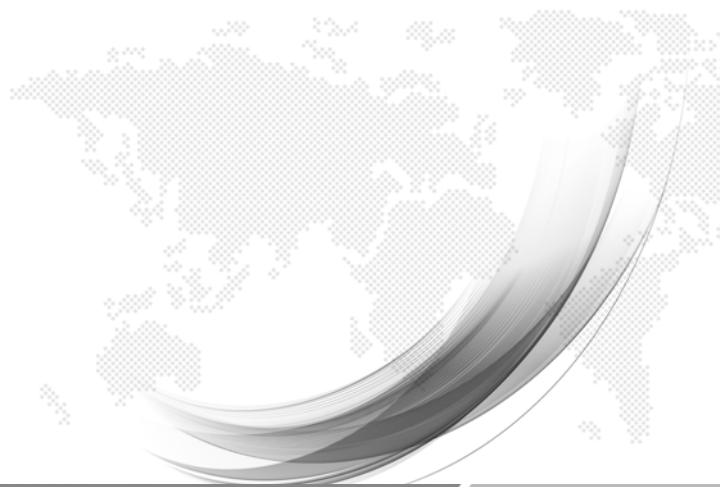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실행할 것(세네갈) -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스리랑카) -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태국)		헤소 방법과 고용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다
6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프랑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2013년 1월에 제출된 답변을 참조할 것. 2012년 7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사업 운영을 재배치 할 수 있고 이는 허용된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32	-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수단) - 여성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란)	수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다문화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고안되었다. 미등록 이주 여성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심의위원회'는 교육 이력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교육 수준에 따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성폭력 등의 학대를 당한 이주 여성의 경우 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부여된다. '다누리 콜센터' 2006년부터 7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이주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소가 27개 사무소로 확대되었습니다.
66	미등록(undocumented) 이주자의 자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아일랜드)	수용	- 재한 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경우 1회 최대 500,000원까지 재정 지원을 한다. 또한 출산 전 검진과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에게는 12가지 유형의 무료 예방 접종이 제공되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주제 G5 난민 및 난민희망자

권고 번호	권고내용	권고 직후 정부입장 (2013. 1)	최근 정부의 입장 (2015 중간보고서)
64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속 검토	난민을 지원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2013년 11월에 개소하였다.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자유토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과 문화 교류 등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 센터에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보고서

(2017. 3. 30.)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28차 세션

77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2017년 3월 30일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류민희minhee.ryu@hopeandlaw.org, +82 2 364 1210)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김진 jean1228@gmail.com, +82 2 537 5459)

- 참여연대 (백가운 pspdint@pspd.org, +82 2 723 5051)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차 NGO 보고서 작성 77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과,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하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목 차

I. 배경

-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 B. 국가인권위원회
-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A. 평등과 비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인종차별 금지

B.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사형제
고문방지

C. 법의 집행과 법치

군대 내 인권

D.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부부강간과 가정폭력 처벌
주민등록제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DNA 수집
보호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정보유출

E.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원 표현의 자유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F.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가사노동협약 비준, ILO 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권
좋은 일자리
책임 기업 경영과 공급사슬
NCP 개혁

G. 사회보장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및 빈곤퇴치
건강보험
주거권
교육권
공적연금 및 노인돌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H.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 구금

인신매매

난민과 난민 신청자

I. 여성과 아동

아동권리 보호 일반

아동친화적 사법제도

보편적 출생등록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입양

여성차별금지

미혼모 권리보호

여성 노동자의 권리 및 직장 내 성희롱

J. 발전권

공적개발원조

I. 배경

1. 이 보고서는 한국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2년 2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12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2.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권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29호, 87호, 98호, 105호를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국제 조약을 적용하는 경우는 2000년대에 949건이었던 것이 2010년대에는 1,959건으로 증가 추세 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지 않고 그 조차도 대부분이 난민협약, 자유권 규약 관련 판결이다.¹⁾ 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결과도 국내 상황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 권고에 대한 이행을 검토하는 국회 내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미비준 국제조약 비준 및 남아있는 유보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고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이행 되도록 해야 한다.**

B.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14)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 결여,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구 ICC) 등급심사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보류 결정을 받았다. 2016년 5월,

1)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공동집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과 법원, 2013

GANHRI은 최종적으로 인권위에 A등급 평가를 하면서도 인선기관인 청와대, 대법원, 국회의 일관된 인선 기준이나 절차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공석 공고, 단일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²⁾ 그러나 2016년 1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인선 기준 공개, 시민사회 협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인선기관에 권고된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 실제로 2016년 5월 등급평가 이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인선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1명은 연임)의 인선절차는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석 공고가 게재되었을 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인선 기준이나 절차도 공개되지 않는 등 GANHRI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위원장 포함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다양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투명한 인선절차 및 기준 마련, 독립적 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5)

4. 한국 정부는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평가단 구성 시에 시민사회 관계자를 포함했다고 밝혔으나 그 명단을 살펴보면 학계, 법조인, 연구원, 종교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시민사회 관계자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9월 30일, 2017-2021 실행 예정인 3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NAP 초안은 공청회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3차 NAP가 실행되어야 할 2017년 3월 현재, 진행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부 담당자는 지난 2016년 9월 공청회 이후 열려야 할 정부부처 실무협의회의 의장을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하는데 2017년 3월 현재, 법

2) GANHRI,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Geneva, 9-13 May 2016), Pp.41-43.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FINAL%20REPORT%20-%20MAY%202016-English.pdf>)

무부 장관이 공식인 이유로 실무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NAP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차 NAP가 언제 공개될 지, 각 정부부처에서 해당 NAP를 언제부터 반영할지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NAP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A. 평등과 비차별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1, 22, 23, 24):**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첫 입법 시도 이후 국회에서는 3번의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반성소수자 단체들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조직적 반대 이후 발의자들은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였다.³⁾ 정부 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논란은 정부가 2007년 제출한 정부 초안에서 7개의 차별금지사유⁴⁾를 제외하면서 시작되었다.⁵⁾ 법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 정부는 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대중 캠페인도 이행한 적이 없다.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확한 언어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6.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권고 33, 34):**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공적 사적

3) Human Rights Monitor South Kore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ithdrawal: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back tracks", 5 May 2013. <http://www.humanrightskorea.org/2013/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act-withdrawal-korea-human-rights-situation-back-tracks/>

4) 2007년 삭제된 7개 차별사유: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5)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Anti-Discrimination Bill Excludes Many", 6 November 2007. <https://www.hrw.org/news/2007/11/06/south-korea-anti-discrimination-bill-excludes-many>.

영역에서 많은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동성애자/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가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⁶⁾ 2016년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성소수자들이었다.⁷⁾ 또한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재단등록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법무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⁸⁾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는 2014년, 2015년, 2016년 반대자 혹은 경찰에 의해 물리적, 법률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⁹⁾ 교육부는 새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권인 정보,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¹⁰⁾

군형법 제92조의 6는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적 접촉 행위를 범죄로 보고¹¹⁾ 한국에서 동성 간의 접촉에 대해 유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며 징집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 조항은 군대에 가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¹²⁾ 한국 정부는 2차 UPR¹³⁾ 과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¹⁴⁾ 에서 군형법 폐지에 대한 권고를

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udy on the situation of hate speech and regulation measures, 2016.

8)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at para. 49.

9)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No Parade, but Pride Preserves in South Korea, 1 June 2015

10)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17 February, 2017

11) Article 92-6 (Disgraceful Conduct) A person who commits anal sex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1(1) through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u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12) The Korean Herald, “Gay conscientious objector gets Canada asylum”, 15 December 201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1215000521>

13)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2 December 2012, A/HRC/22/10, at para. 124.34.

14)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para. 14)

받았으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¹⁵⁾ 한국 정부는 혐오 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고, 성소수자 개인과 단체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인종차별 금지 (권고 30):**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¹⁶⁾ 일부 언론은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및 강화하고 있다.¹⁷⁾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반대를 주장하는 기독교자유당¹⁸⁾이 출마했으나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선거기간 동안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들을 담은 자료들이 선거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기독교자유당은 최종 총 투표수의 2.63%를 획득했다.¹⁹⁾ 그러나 정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종차별을 제지하기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인종차별 교육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B.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8. **사형제 (권고 35):**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1일 사형이 집행 된 이후 19년 동안

15) Hankyoreh, Constitutional Court upholds military's ban on sodomy, 8 August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55208.html

16)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KOR/CO/15-16, para. 10

1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 April 2015, A/HRC/29/46/Add.1, paras. 60-62

18) Seoul Shinmun, Korean Islam says "Christian Liberty Party's materials maliciously defame Islam", 10 April 20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0500132>

19) The Christian Liberty Party website: clparty.kr/about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지만 사형확정 판결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일반 사형수 61명, 군 사형수 4명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에 대해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실질적 폐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형제가 생명권에 반하는 형벌제도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에 동참하고 사형집행 검토를 중단하며 사형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9. **고문 방지 (권고 3, 13, 16, 37):** 헌법 제12조 제2항²⁰⁾은 고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도 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률 그 어디에도 고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명확한 개념 정의나 그 정의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8,207건에 이르지만, 고발, 수사의뢰 건은 2건에 불과하고 권고가 이루어진 건도 11건에 불과하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수천 건이 접수된 고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법체포, 감금 등 사건 중 20여명 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극히 낮다.²¹⁾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고문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을 포함시켜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및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구와 절차를 신설 또는 정비하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즉각 비준하여야 한다.**

20) 헌법 제12조(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1)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 parties due in 2012: Republic of Korea, UN Doc. CAT/C/KOR/3-5, Annex Tables 23-26, 11 April 2016

C. 법의 집행과 법치

10. **군대 내 인권:** 지난 5년 간 평균 약 100명의 군인들이 매년 군대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원인미상 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70%에 이르고 있다.²²⁾ 2014년 28사단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포함한 군 인권침해를 예방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차 강하게 대두되었다.²³⁾ 국방부는 헬프콜을 비롯해 자체 예방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해당 제도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⁴⁾ 2015년에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법령을 만들지 않아 2017년 2월까지 군인권보호관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 내 가혹행위와 자살사건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²⁵⁾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국방부에 대한 정보 열람권과 불시 방문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만 한다.**

D.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11. **부부강간과 가정폭력 처벌 (권고 27, 39):** 정부가 2013년 수립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성향, 음주 등 중독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접근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

22) 통계청, 군 사망사고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2007~2016 통계)

23) The Korea Times, Will military change itself this time?, 22 September 2014,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11/180_165010.html

24) 군인권공동행동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1 December 201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222541>

25) 2016년에도 80명이 넘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사망하였고 그 중 70%가 자살 등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MBC News ‘중요부위에 불붙이고 성추행까지, 군 가혹행위 여전’, 2016년 10월 13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38400_19842.html

고 있다. 가정폭력이 은폐되고 신고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가정폭력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다.²⁶⁾ 정부는 성평등 및 인권 의식 증진을 핵심 목표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불처분 및 상담위탁 처분 위주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²⁷⁾로 인해 가정폭력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²⁸⁾ 특히 정부는 배우자 및 친족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에도 부부상담을 명령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배우자 및 친족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해 쉽터에 입소한 피해자를 자산 조사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가정유지적 관점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 26)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0.8%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 경찰신고는 1.3%로 나타남. 폭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에 있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27)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은 2013년 15%, 2014년 13.3%, 2015년 8.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상의 대상사건에는 ‘상습범 또는 재범이 우려되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될만한 것임에도 기소유예로 처리하고 있음. 또한 지난 3년간(2013-2015)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불처분 비율(38.3%)이 높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상담위탁(31.4%)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16%)처분 위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분(접근행위제한 1.61%, 친권행사제한 0.02%)은 극히 미미한 상황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3·4·5차 국가보고서 부록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 법원행정처 2014-2016 사법연감.
- 28) [관련사례] 2016년 6월 4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5개월간 상담을 받던 가해자가 상담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내를 폭행해 살해함; 노컷뉴스, 〈‘상습 가정 폭행’ 사망 여성, 전날 경찰과 상담〉, 2016. 6. 7.
- 29) [관련사례1] 결혼생활 14년 동안 가해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흉기협박 등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은 쉽터로 피신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임에도 10회기의 부부상담명령을 내림. 이런 상황에서 피해여성은 “하루만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 지내면 이혼해주겠다”는 가해남편의 말에 집으로 찾아갔고 그날 새벽(2013.5.4) 가해자에게 목을 졸러 살해됨; 한겨레, 〈‘죽인다’는 남편과 ‘협약’ 하라니...아내는 이혼소송 중 살해됐다〉, 2013.5.22.
- [관련사례2] 2015년 12월 7일, 자녀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찾아온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가해자에 의해 납치되어 임신 4개월 중인 피해 여성과 6세 자녀가 살해됨; 서울신문, 〈‘베트남 일가족 살해’ 경찰이 못 막았나〉, 2015.12.14.

12. 주민등록제도: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제한적 사용"이라는 1차 UPR의 권고³⁰⁾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4년 1월 카드3사에서 1억 5백만 건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등 국민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³¹⁾ 미국기업 IMS health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4천4백만 명 47억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민감한 처방전을 매입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³²⁾ 2014년 8월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예외 법령이 1천 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수사 편의를 위하여 민간 기업인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의무화하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민간 기업 또한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13자리 숫자 중 출생 시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7자리의 변경을 불허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³³⁾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3.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현재 한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만 총 인구 약 5천만명 중 10,577,079건의 통신 가입자 정보가

30)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29 May 2008, A/HRC/8/40, p. 15

31) 2017년 3월 현재,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약 3천 5백만 명이다.

32) IMS health 는 이 정보들을 약 20억 원에 매입하여 빅데이터 처리 후 한국 제약회사에 70억 원에 되팔았다. The Korea Herald, Patient Records Leak, 27 July 2015,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50726000368&md=20150727003027_BL

33) 2015년 9월, 하버드대 스위니 교수 연구팀은 IMS health에 매입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를 해제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이 담겨 쉽게 풀렸다고 평가하였다. Sweeney, Latanya, Yoo, Ji Su, De-anonymizing South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Shared in Prescription Data, Technology Science, 29 September 2015, <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정보 및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성명,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 가입자 정보의 제공 절차에 법원 등 외부 통제가 전혀 없으며 정보 및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방대한 양의 가입자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³⁴⁾ 이에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입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가입자 정보를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폐지해야 한다.**

- 14. DNA 수집:** 2010년부터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등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소년범,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에 중범죄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서 정부와 기업에 향의한 철거민,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등이 채취 대상이 되어 왔다.³⁵⁾ 국가 DNA database의 운영은 채취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지만,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국가 DNA database 운영을 재고하거나 그 포함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재범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소년범이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15. 보호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정보유출:** 한국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하라는 2차 UPR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시설 관련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최소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이유로 전국 피해자와 중

34) 2015년 5월, 이용자 5백명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35) Joint Statement of 5 South Korean NGOs, 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 July 2013, <http://act.jinbo.net/wp/7631/>

사자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집중 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행령들을 개정하여 이 시스템 관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방침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 졌지만, 정부는 13자리 숫자 중 출생 시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7자리의 변경을 불허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중앙 시스템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고 폭력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폭력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E.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16.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권고 36):** 한국 정부는 자의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여 실질적 허가제로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집회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³⁶⁾ 정부는 관련 법률상 집회 금지제한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한 내역을 보면 집회 1천59건 중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것이 447건으로 전체의 42.4%였다. 집시법 12조³⁷⁾에 따르

36)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문보고서를 통해 신고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고 특히 긴급집회를 완전히 불허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허가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을 무분별하게 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15 June 2016 A/HRC/32/36/Add.2, para.19, 33, 37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역시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69세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약 1년여 간 의식이 없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운영하고 있다는 ‘집회시민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역도 불투명하며 구성도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³⁸⁾ **한국 정부는 집시법 11, 12조를 폐지하고, 집회를 실질적 신고제로 운영해야 하며 물대포, 차벽 등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7. 표현의 자유 (권고 50, 51, 52): 한국에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2(임시조치)에 따라 피해 주장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사업자들이 게시물은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신고된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지만 최장 30일까지 가능해 게시자의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한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권을 두었다고 하나 이는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실제 정보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건수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정도이다.³⁹⁾ 나머지 95%의 표현물은 피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

38)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서울관내 경찰관서의 집회·시위자문위의 구성원 217명 중 112명이 기업체, 병원, 학원 등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였고, 시민단체 추천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서울관내 경찰과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4년 6월 기준)

설치관서	계	추천별 구분			
		변호사·세무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대표
서울관내 32개 경찰서(청)	217	32	34	12	139
구성비(%)	100	14.7	15.7	5.6	64

[표1-1]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주민대표위원 세부 내역

계	기업체 대표·간부	병원·약국원장·간부	유치원·학원 원장	기타
139	86	15	11	27
구성비(%)	62	11	8	19

39)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최근5년,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에 따라 143만여 건 게시물 가려, 2015년 9월 10일

정부가 민간기구라고 주장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위원구성과 예산확보 측면에서 행정기구임을 확인받은 바 있다.⁴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임시조치제도를 폐지하거나, 피해주장자와 동등하게 게시자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통신심의를 폐지하여야 한다.**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⁴¹⁾과 모욕죄⁴²⁾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도 형사처벌되어 왔다. 주관적 감정인 모욕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역시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도 모욕죄로 처벌되어 왔다. **한국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법원조차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욕죄 역시 폐지해야 한다.**

- 18. 공무원 표현의 자유:** 공무원 및 교사는 일반 시민과 달리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 및 정당가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및 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⁴³⁾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 직원의 정치중립의무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불편부당을 위한 것이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

40) 2010. 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924

41) 형법 307조(명예훼손) : ①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형법 311조 (모욕) : 공언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연연조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직원 등

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⁴⁴⁾⁴⁵⁾

19.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따라 선거기간 오프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⁴⁶⁾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도 유권자들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개인 및 시민단체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과 기소를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⁴⁷⁾ 또한,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2012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었지만,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여전히 남아 있어 글쓴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제93조 1항과 82조의 6을 폐지해야 한다.**

20. 양심적 병역거부 (권고 53):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국가이며 연간 약 600여명이 수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 상황과 국민 여론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15년 12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⁴⁸⁾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160명이 넘는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44) 유엔 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교원 등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45) ILO 전문가위원회(2016년)는 “[한국정부가 ILO 111호 협약(차별금지)에 제시된 바대로 초·중·등 교사가 학교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행한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권고함.

46) 선거법 제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7) Change 2016, We Condemn Repression of Legitimate Voter Actions, 16 June 201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page=2&document_srl=1429084&listStyle=list

48) 병무청, 병역기피 공개자 명단, <http://open.mma.go.kr/caisGGGS/bygp/list.do>

2015년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17건의 하급심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2016년 10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정부 내에서도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들을 비롯해 전문연구요원과 사회복지요원 등 이미 폭넓은 영역에서 80,000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바⁴⁹⁾, 기존 대체 복무제도를 활용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군사훈련 없는 대체복무제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21. **국가보안법 (권고 54, 55, 56, 57):** 2008년에 46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13년 129명까지 확대되고 구속 기소된 인원도 70명에 달하는 등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⁵⁰⁾ 심지어 정부 승인 하에 진행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북측과 회의를 진행한 경우,⁵¹⁾ 북한의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 한 경우,⁵²⁾ 북한에서 부르는 ‘혁명동지개’를 제창한 경우(대법원 2014도10978),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판매한 경우⁵³⁾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기소 및 처벌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정치적 반대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22. **보안관찰법 (권고 58):**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활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제도'는 1)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점(검사의 청구), 2)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

49) 2015년 병무청 통계연보

50) 범죄유형별公安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IL>

51) 프레시안, 검찰, 범민련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09. 6. 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5549>

52)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CNN, 2012. 7. 4., <http://edition.cnn.com/2012/07/03/world/asia/south-korea-north-joke/>

53) 연합뉴스, 전자도서관 '노동자의책'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2017. 1.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4/0200000000AKR20170104171500004.HTML>

상과 관련된 통제수단이라는 점, 3)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이중처벌을 한다는 점, 4) 보안관찰기간은 2년에서 시작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5) 가족 및 교우관계,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등 신고사항이 사생활 전반에 걸쳐있다는 점⁵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보안관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F.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23. 가사노동협약 비준, ILO 협약 비준 (권고 7): 한국 정부는 4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105호)을 비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협약인 189호에 대해서도 비준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2월 24일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위의 방안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비준 ILO 핵심협약 및 가사노동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24.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단결권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전속성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5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노조활동이 아닌 공갈 협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한다. 155만에 이르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원청사용자들

54) 보안관찰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7조, 제14조, 제18조 등 참조.

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 사실상 집단 해고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⁵⁾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정당한 파업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불법파업이 되면 가압류와 손해배상, 해고를 비롯한 징계, 업무방해죄⁵⁶⁾에 의한 형사처벌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정부정책 또는 법개정에 관한 사항이나 정리해고 공장 이전에 관한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⁷⁾ 또 노조법 제 42조 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⁵⁸⁾ ‘필수공익사업’의 대부분을 파

55)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네 차례나 권고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Case No. 2602, No.3047)

56)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에서 지적하는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불법파업이더라도 소극적 노무거부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결정한 판결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파업을 선언하면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우선 규정하고, 사용자들은 노조간부들을 고발하고 검찰은 일단 기소하고 보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57) 노조법 2조 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3조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조는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7조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 편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르면 정리해고 또는 공장폐쇄에 반대하여 고용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또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정당행위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58)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업권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열거하여 필수공익사업 중 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⁵⁹⁾ **한국 정부는 정당한 파업의 범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파업을 포함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및 손배 가압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초중등 교원 및 공무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에 따라 노조 가입 및 단체교섭의 범위가 제한되며 쟁의권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은 2014년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89.5.28 설립, 1999.7.1 합법화)에 대하여 법상노조 아님 통보하였다. 마찬가지로 2013년 8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했다. 두 노조의 규약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인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 또한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노조는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전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즉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⁶⁰⁾

- 25.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1천만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활용되어왔으며 권리보호나 차별시정 효과는 미미하다.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1조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59) ILO는 필수서비스를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60)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Case No. 1865/2014년 3월 371호 보고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49.2%에 불과하며,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도 2007년 5.16배에서 2016년 5.63배로 증가했다. 임금격차를 성별로 분류할 경우 2016년 3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5%이며, 고용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43.2%에 불과하다.⁶¹⁾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장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시정제도의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하며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정 신청 건수도 높지 않다.⁶²⁾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산업부문에서 불법파견이 남용되고 있으며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종합대책의 주요 '전환 대상'은 직접고용 기간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주요 비정규직 집단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는 줄어들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6. **책임 기업 경영과 공급사슬:**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4%)보다 4배 많으며,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

6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6년 8월

62) 차별시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간(2014.12~2015.12) 접수 사례는 359건이며 이 가운데 차별시정이 이루어진 예는 43건(14.9%),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각,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

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벌기업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노무관리 컨설팅 업체와 공모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이고, 정부 통계로만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예방과 관련한 재정능력과 연동되어 해결 불가능한 일로 치부되어 왔으나, 사실은 재벌 대기업이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 한 결과로,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하청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하청-공급사슬 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양질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7. **NCP 개혁:** 2001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내연락사무소에 제기된 20여 건의 진정 중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권고로까지 이어진 건은 2017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진정이 중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며, 2016년 처음으로 두 건의 진정이 1차평가를 통과하여 중재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 역시 양측의 합의 도달 실패를 이유로 권고나 구제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⁶³⁾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설립되어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민간위원 3인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독립 전문가 기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2017년 3월 현재 이 민간위원 3인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들로 노동 및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⁶⁴⁾ 또한 위원들의 선출 및 중재절차에

63) KNCP, Final Statement of the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ydis case) (file:///C:/Users/q/Downloads/161230%20KNCP_Final%20Statement_Hydis.pdf); KNCP, Final Statement of the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sahi Glass case) (file:///C:/Users/q/Downloads/161230%20KNCP_Final%20Statement_AG.pdf)

64) Status of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http://www.ncp.or.kr/servlet/kcab_encp/info/2100 국내연락사무소

노동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을 증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노동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G.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28. 사회보장제도 및 빈곤퇴치 (권고 59, 60):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이전까지 빈곤율이 변동이 없는데도 수급자를 대폭 감소시켰다. 2차 UPR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빈곤율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수급자 수는 약 22만명이 감소한 바,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급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개별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개편한 이후에, 모든 급여를 합한 전체 수급자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절대빈곤자가 약 439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게 필요한 기본적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5년 12월 기준 125만 명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부양의무자제도에 따라

의 민간위원 3인은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전무, KOTRA 단장이 맡고 있다.

(65)

〈표 1〉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급자수(천 명)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수급률 (%)	3.1	3.2	3.2	2.9	2.7	2.6	2.6	3.2
절대빈곤율 (%)**	8.8	9.5	8.8	8.8	8.5	8.6	8.6	-
상대빈곤율 (%)***	14.2	14.1	13.8	13.8	13.7	13.4	13.3	-

자료: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5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익 국회의원 제공자료(2016년 2월 13일 복지부 제출자료)

주1.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수×100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59,407명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전가구기준, 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 전국 전가구, 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다. **한국 정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29. **건강보험 (권고 62):**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약 10% 정도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의 전체 보장률은 77.7%로 2012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암질환 보장률은 72.6%로 2012년 대비 1.5%p 감소하였다. 이처럼 질환별로 접근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병원 확충, 비급여 통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및 보장성 강화, 의료비 상한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0. **주거권 (권고 61):** 한국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07년 이후 최근 8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5.1만호 증가에 그쳤다.⁶⁶⁾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주택의 5.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5%의 절반에 불과하다.⁶⁷⁾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늘어난 LH공사의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을 높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대안이 될 수 없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2017년 공급 목표를 9천호만을 책정했다.⁶⁸⁾ **무주택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하고, 임대차 갱신 보장,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66) 국토교통부, 2007~2015 임대주택통계

67) 국토교통부, 2012, 주택업무편람

68) 국토교통부, 2016, 2017년 주택공급 계획

31. **교육권 (권고 63):** 2017년 현재, 한국 대학생 85%가 연평균 등록금이 737만원에 달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고등 교육비가 높은 순위로 3위에 해당한다.⁶⁹⁾ 반면 고등교육에 기여하는 재정 비율 현황을 보면 정부 재원 비율은 OECD 평균인 70%에 못 미치는 32%이고, 가계지출 재원은 OECD 21%보다 훨씬 높은 44%이다.⁷⁰⁾ 한국 정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등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등록금 자체는 줄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국가장학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습시간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에 탈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제도 상 성적제한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등록금고지서 상 금액을 인하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2. **공적연금 (노후보장정책) 및 노인돌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⁷¹⁾ 반면 국민연금은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2016년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의 46%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1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평균임금액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수급액은 약 32만원 정도로 1인 최저생계비 (603,403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전히 18~59세 총인구의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69)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7

70) Ibid.

71)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33.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한국의 청년 NEET(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은 18.5%로 OECD 평균 15.4%에 비해 높으며(2012년 자료)⁷²⁾, 공식적인 실업률은 10% 내외로 높지 않지만, 취업준비생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인식되는 통계상 오류를 보정하면 실질 실업률은 30%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고용보험은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가 넓어, 실업 상태에 빠진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2012년 기준 16.7%에 불과하고 그 중 청년노동자는 잦은 이직과 장기 실업 등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기존 일자리를 악화하거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저질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자발적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H. 소수자

34. **장애인:**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라 대체의사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지원의사결정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

72) OECD(2015),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0 November 2015)

한국의 장애인시설 및 거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탈 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등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특히 장애인의 소득이 아닌 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부양의무제를 철폐해야 한다.**

「상법」 제732조는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법 제732조를 전면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35. **이주노동자(권고 31, 32, 65, 69):**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가능 회수를 제한하고 있으며⁷³⁾ 이에 임금 미지급 등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⁷⁴⁾ ⁷⁵⁾ 한국 정부가 밝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회사의 폐업 등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가능 회수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빈번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⁷⁶⁾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교육 내

7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74)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 April 2015, A/HRC/29/46/Add.1, paras. 69

75) 충남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충청남도, 2016년, p.88-89. ‘직장을 옮기려는 의사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62.8%나 된다. 이들이 직장 이동을 원하는 이유로는 ‘임금 또는 수당 미지급(29.2%)’,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26.4%)’, ‘기숙사와 작업장 시설 등이 불편하기 때문(15%)’ 순으로 나타났다

76)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보고서 2013 한국의외국인력지원센터/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가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 하였다. 피해유형으로는 강간(35.5%), 신체접촉(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접촉(29%), 음란 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성매매 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짐(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는 사장

용은 피해를 당할 경우 상담센터를 방문하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는 없다. **한국 정부는 입국 후 교육과정에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권리 구제사례, 피해 시 신고방법과 구제절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주 제공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제재조치, 안전한 주거 기준 마련 그리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들을 반인권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무리한 단속을 피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⁷⁷⁾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까지 단속업무에 나서고 있으며 휴대폰을 통해 비자만료 여부를 바로 관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일상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단속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권 침해 없이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체류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합법적 체류허가를 주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36. 미등록 이주아동 (권고 66):**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는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⁷⁸⁾ 법무부 내부지침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등록 아동에 대해 고등학교 과정 수료시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⁷⁹⁾ 1년에 100명이 훨씬 넘는 20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이

(88.9%), 관리자(77.8%) 순으로 나타나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77) 매일노동뉴스, 출입국사무소 무리한 단속에 죽고 다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017년 2월 13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74>

78)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새누리당 이자스민 위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4. 12. 18

79) 2010. 9. 7. 법무부 지침, 2013. 10. 30. 법무부 지침.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구금되고 있다.⁸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와 제75조는 체류자격 증명 없이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그 입학 허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의 수혜자를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접근이 어렵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입원·수술비에 한정되어 있고 시행의료기관의 수가 제한적이고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이지 않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이 보육지원과 아동보호조치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아동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보육지원이 불가능하고, 아동학대가 있어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⁸¹⁾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자제하고 구금을 금하며, 이들이 교육, 건강, 보육, 아동보호 관련 실질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7. **이주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보호’라 정의하고 있다.⁸²⁾ 보호소에 보호되는 동안 보호 외국인에게는 1인당 1.84평방미터(단위)의 공간이 주어지고, 보호실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며, 운동시간 등에 있어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주체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제도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80) 법무부 화성, 청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공개 자료 (2015. 10. ~ 2016. 8).

81) 황필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개관, 국회인권포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2014. 4. 3), 43-44쪽.

82) 출입국관리법 제2조(11) :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것이며, 이들은 언제든지 보호되는 대신 출국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는 ‘구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자의적 구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 이후 위명여권의 사용, 체류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구금되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장기간 구금된 상태로 난민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보호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 안에 출입국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보호 외국인이 보호되는 동안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8. **인신매매 (권고 42, 43, 67):** 한국 정부는 2015년 팔레르모 의정서에 가입하고, 2013년 그 이행을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고 하나,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정의는 여전히 협소해서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규정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⁸³⁾ 그 외에도 법집행 공무원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해서 노동착취 및 성착취 목적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이주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10년 넘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만들어온 연예 홍행 비자 제도는 계속되고 있고, 어업과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 내지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원양어선과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은 높은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을 내고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20시간 일하면서 50만원(원양어선), 120만원(연근해어선)을 받으면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지만, 선주 등으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고, 임금도 체불되어 있어 배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⁸⁴⁾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집행 공무원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히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제정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송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고액의 송출 수수료를 규제하고 이주어선원에

83) 김종철,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015년 9월 2일, <http://www.apil.or.kr/1798>

84) The Korea Times, In the hurt of the sea, 20 October 2016,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7/01/113_214313.html

대한 노동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여권을 불법적으로 압수하는 전주 등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39. **난민과 난민신청자 (권고 64, 68):**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리셉션 센터로 130억을 들여 건설하고 매년 20억의 운영비를 소요하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를 2013년 개소하였다고 1년 동안 입소한 난민인정자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다른 요건을 다 갖추어도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들의 귀화는 거부되고 있다.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가족들은 입국은 고사하고 사증을 발급받기도 어렵다. 게다가 인도적체류자의 가족들은 가족결합원칙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2015년의 경우 373명만 지원을 받았다.⁸⁵⁾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인천공항의 출입국대기실에서 음식과 의료 지원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던 시리아 출신 30여명의 난민 신청자들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⁸⁶⁾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 상당 수가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송환대기실에서의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여전히 낮아 2013년 1,574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가족결합을 제외하면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24명(신청자수는 1,574명), 2014년에는 74명(신청자수는 2,896명), 2015년에는 62명(5,711명)이었다. 한국 정부는 난민의 사회통합에 소극적이어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충분한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협약에 반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아동에게 국민과 같은 장애인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며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해 폭넓게 귀화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열악한 상태의 송환대기실에**

85) 난민인권센터, 난민처우 관련 (2015. 12. 31 기준), <http://nancen.org/1520>

86) CNN, Migrants in limbo at South Korean airport, 1 June 2016, <http://edition.cnn.com/videos/world/2016/06/01/south-korea-refugees-in-limbo-hancocks-pkg.cnn>

서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라.

I. 여성과 아동

40. **아동권리 보호 일반 (권고 17, 18, 19):** 한국에서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교육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교육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포괄적인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⁸⁷⁾ 교육내용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수행기관의 재량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2016년 실태조사에 응한 한국 거주자의 아동권리교육 경험률은 50%에 이르지 못했다.⁸⁸⁾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교육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⁸⁹⁾ **한국 정부는 아동과 아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의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인권교육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아동 및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국내외 현실에 비추어⁹⁰⁾, 인권의 기본가치로서 비차별을 중요시하는 아동권리교육이 사회전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87)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과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제1항이 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동복지법 제31조가 정하는 아동안전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개별적 보호영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보편적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제3항은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 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섭하지 못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3항이,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하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 내용을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규정은 없다.

88) 2014~2016 아동권리인식도조사

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2 February 2012, CRC/C/KOR/CO/3-4, paras. 23.,

90)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10 March 2014, CEDAW/C/FIN/CO/7, paras. 14-15, 국가인권위원회(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41. 아동친화적 사법 제도 (권고 45): 한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친화적이지 않으며 사법영역에 있어 아동의 의견청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입양절차에 있어 민법 등은 13세 이상 아동에게만 의사표현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⁹¹⁾, 소년보호 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다.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피해자변호사·국선보조인 제도는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혼용되고 있다.⁹²⁾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법체계에서 아동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청취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민법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대상아동을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 구금시설이다. 그러나 보호자 의견만으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에 반한다.⁹³⁾ 더욱이 재량권이 부여된 소년재판부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제도는 부재하여 그 결정에 아동 최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⁹⁴⁾ **한국 정부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제도를 위해 소년법 제4조를 개정하고, 관련 국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소년 재판부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42. 보편적 출생등록 (권고 29): 한국의 출생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신고 의무를 지고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⁹⁵⁾ 정부는 현행법에 과태료 규정을 두어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신고의무 미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91) 민법 제869조 제1항, 입양특례법 제12조 제4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8, 가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3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93)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94) 소년법 제18조 제1항

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9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있는 장치가 없어 아동의 출생신고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사례, 태어나지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자에만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만이 가능한데, 박해의 주체인 출신국 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 아동 등은 출생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⁹⁷⁾ **한국 정부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공적으로 출생신고되어 공적인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3.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권고 38, 40, 41):** 2015년, 방임되었던 한 아동이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빵을 먹다 발견되었던 사건이 발생하였고,⁹⁸⁾ 이를 계기로 급하게 장기결석생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견된 후, 한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⁹⁹⁾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의 후속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했으나¹⁰⁰⁾ 아직도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체벌과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가정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동학대 및 피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민법 제915조(징계권) 등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에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97) Korea Joongang Daily, “Parents take extreme measures: Those with stateless children go as far as seeking adoption”, 14 September 2015.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09149>

98) Korea Joongang Daily, “Ye-rin deserves better”, 28 December 2015.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3282>

99) The Korea Herald, “Korea tightens child protection policy”, 16 January 20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116000965>

100)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44. 입양: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의 다수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기관 입양이 아닌,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만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입양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민간입양’이란 민법에 따라 개인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진행되는 입양으로, 대상 아동이 요보호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임의적 허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관입양과 달리 민간입양 시 입양부모는 별도의 사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후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양 건수가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6년에는 전과 10범의 양부모가 민간입양을 통해 입양한 아동을 학대 끝에 살해한 사건을 통해¹⁰¹⁾ 현행 민간입양의 문제점과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뿐 아니라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입양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입양에 걸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부모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고 검증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후 감독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입양된 아동이 생존, 발달, 보호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5. 여성차별 금지 (권고 22, 25, 26): 한국의 젠더 정책에 대한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Gender) 평등 대신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성별이분법을 기반으로 기계적 평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여성(성평등)정책기본법에서 성소수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예로, 2015년 8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반대하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회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6’의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144개 국 중 116위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

101) Korea JoongAng Daily, “Adopted girl dies from duct tape punishment”, 4 October 2016,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24455>

하다¹⁰²⁾.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 여성 살해 사건¹⁰³⁾’ 등 다양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¹⁰⁴⁾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한국이 G20 국가 중 1위이다.¹⁰⁵⁾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여성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비율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33.7%이며 5급 이상 공무원은 11.6%에 불과하다.¹⁰⁶⁾ 또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에 그쳐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인 22.6%에 미치지 않고 있다.¹⁰⁷⁾ **정부는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회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 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를 강제이행조치로 규정하고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46. 미혼모 권리보호 (권고 28):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혼모·부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

102)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6/economies/#economy=KOR>

103)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여성들이 평소에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하다.

104) 경찰청 통계(2013)

105) United Nations Offices on Drug and Crime(2008), Homicide statistics sex of homicide victims

106) 국가지표체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2

107) 국가지표체계,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

고 있으며 미혼모·부의 일 가정 양립이 보장되지 않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직장에서 미혼으로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출산 휴가를 받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 정부는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공무원, 교사 등에게 시행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사업장이 미혼모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미혼모들에게 생애 주기별 지원을 줄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47. **여성 노동자의 권리 및 직장 내 성희롱 (권고 48, 49):**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정규직 노동자는 69.4%,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49.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35.8%를 받는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53.8%는 비정규직이다.¹⁰⁸⁾ 여성 저임금노동자비중은 37.8%로 남성(15.4%)의 두 배가 넘는다.¹⁰⁹⁾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그냥 여성이라서가 58.3%이다.¹¹⁰⁾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는 50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고용비중이 동종업계 평균 70%미만인 기업의 명단공개, 권고에 그친다. 고용 형태, 임금격차, 직무격리 상황 보고도 없다. 내용과 평가의 형식화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8.5%에 불과하다. **정부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108) 2016,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 4호,

109) 2017,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608&page=1

110) 2015, 김난주, '성별임금격차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책정된 임금 구조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성할당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축소를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도 요구된다.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범죄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가해자, 사업주, 동료, 상사 등에 의한 따돌림, 해고,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치료조치, 가해자와의 격리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J.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

48. **공적개발원조 (원고 70):** 시민사회는 유상원조 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수준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만들고 이를 모든 사업에 전면 적용,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서야 대외협력기금(EDCF) 영문 홈페이지에만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다.¹¹¹⁾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내용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정 사업에 한해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분류하고 그 책임을 개도국 정부에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이프가드를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이프가드 적용 첫 사례로, 정부는 EDCF으로 이뤄지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댐 건설 사업)을 꼽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선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댐 건설 예정지가 지진

111) EDCF Safeguard Policy,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5001006003> (2016)

발생 위험지역이라는 점,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수렴하여 내용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준수 의무를 명시할 것. 또한 세이프가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112)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Inquiries on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12 September 2016, <http://www.peoplespower21.org/English/1453305>

4.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2017. 8. 16.)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I. 서론

1.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는 2017년 제3차 주기에 접어들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면 예외없이 유엔의 3대원칙 중 하나인 인권에 대한 상호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또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UPR제도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것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향후에도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2. 2017년 5월 9일 출범한 새 정부는 인권보장을 국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7월 19일 발표하였다. 국정과제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 국민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회 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사회보장·교육권·건강권 강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민주주의 및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8월 현재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3. 2012년 10월 제2차 UPR심의 이후, 정부는 최종보고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UPR권고를 개별 정책과제로 수용하기 위해 부처별 검토 후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였다.

II. 보고서 작성방법 및 협의 절차

4. 이 보고서는 12개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총괄하여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대표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제2차 UPR심의의 권고 이행상황과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고

서 초안을 게시하여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 시민사회 및 일반 시민 의견 중 일부는 국가보고서에 반영하였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5.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이후 정부는 총 70개 주제로 정리된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기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권고 수용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시민단체가 제안한 UPR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2014년 11월 제시하였고, 이후 2015년 3월에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10개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10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모여 권고 이행상황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정부는 이 결과를 통해 정리된 제2차 UPR권고 이행상황 중간보고서를 2016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도 UPR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 내에서 UPR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한층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 15)

III. 제2차 UPR 권고사항 이행

A.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제도적 차원

7. 대한민국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4개 조약의 개인진정절차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새로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입후보할 때 약속한 바대로 2008년 모든 주제별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을 허용한 이후 2011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3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2014년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2015년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2016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 특별절차의 국가방문을 수용하여 진술하고 건설적인 상호대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제111차 정례회기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다. (권고 16, 중간보고서 참조)
8. 현재 비준하지 않은 조약 중 강제실종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 등 국제적 기준과 국내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권고 1, 2, 3, 4, 6)

9. 이주노동자협약과 가사근로자협약은 검토 결과 현 상황에서는 국내법과 불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경우는 사형제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즉시 비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4개의 경우는 국내법과 다소 불일치하거나 행정관행 등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운영되어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핵심협약 비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 1, 5, 7, 35)
10.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입양에 관한 조항은 관련 국내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유보철회를 위한 부처협의를 실시하였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제732조는 2014년 3월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유보철회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¹⁾ (권고 10, 11, 12)
11.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2년~2016년의 제2차 계획이 종료되었고, 현재 새 정부의 인권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한 제3차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받는 절차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거쳤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외부자문기구를 2013년 시민사회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권고 15)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견에 관한 책임면제 등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16년 2월 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천

1) 다른 국제인권조약 가입이나 유보에 관한 정부입장은 한국정부의 중간보고서 2쪽~8쪽을 참고바람

기관에 권고하였으며, 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시민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위원추천권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권고 14)

1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는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아동청소년인권팀이 2014년 8월 신설되었고, 이어 2016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재개하였고 이후 계속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에 관한 정부 전체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권고 17, 18, 19)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제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2015년 ODA 총액은 19.2억불, GNI대비 0.14%에 해당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10.2%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2020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하여 GNI대비 ODA규모를 2020년까지 0.2%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DAC회원국 평균 수준인 0.3%로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권고 70)

B. 평등 및 비차별 원칙

15.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90여개의 개별법령에서는 다양한 영역,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도 허용될 수 없다. 정부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2007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 및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입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의 세부목표로 선정하고, 제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해외입법례와 적용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도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및 국민의견수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권고 21, 22, 23, 24, 30, 33)

16. 정부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성 주류화로 바꾸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통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조정, 협력, 실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ODA)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신설하였다. (권고 25, 26)
17.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이를 위한 이행법률로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방송매체에서의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특정 인종을 조롱·모욕하는 표현을 심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사 자체의 자율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권고 30)
18.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닌,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기강화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권고 34)

C.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생명·자유 및 안전권

19.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 사형제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현재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벌 체계 전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사형제 폐지 여부 또는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지 여부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권고 35)
20.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노인들의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던 맹독성 농약(그라목손)의 생산·유통 금지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상담·지원, 24시간 전화상담체계 운영,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지자체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1.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처벌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등을 당한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행위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을 2007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인 참여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검찰청, 경찰청, 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직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권고 3, 13, 16, 37)
22. 또한 경찰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상황별 유의사항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인권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하여 시민단체 활동가 및 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산하에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과거 경찰의 집회

시위대응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고 36)

23.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이 2014년 제정,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뢰피해자는 의료지원금,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2017년 2월까지 접수된 총428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135건을 심의하여 80명에게 47억여 원의 의료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293건은 조사심의 중이며 55건은 기각되었다. (권고 44)

- 사생활, 혼인과 가족생활

24.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기초 제도로써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 법률에 대해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또한 2016년 3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개인정보 삭제·차단조치를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환수를 위하여 몰수·추징을 도입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2016년 개정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감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의 직원까지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하는 등 ICT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26. 정부는 2013년 가정폭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확대,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을 배가하였으며, 각급 경찰

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규정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였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정부는 젠더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근본적인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고 27, 39)

• 기본적 자유: 종교·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7.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 병역의 형평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안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고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부처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고 53)
28. 보안관찰제도는 내란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정부는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엄밀히 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고 58)
29.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동법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에 불과하다. (권고 54, 55, 56, 57번)
30.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

의 삭제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권고 50, 51)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

31. 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여성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13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으며, 중장년층의 신속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 60)
32.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기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있고, 최근 7~8%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33.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로서, 정부는 2011년에 이어 2014년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에 해당하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짧은 근속기간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향상,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퇴직급여 적용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 유도,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일용직이나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증가 추세이며, 정규직 대비 임금비중도 2011년 61.3%에서 2016년 66.3%로 상승하였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34.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따른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형태, 사용자 종속정도 등이 다양하여 법원이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구체화, 약관법 적용, 산재보험법 특례적용 등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보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

3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제도를 개편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지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중 자녀 사망시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을 완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시에는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였다. 각종 급여 중 교육급여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권고 59, 60)

36.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있어 탈빈곤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잠재빈곤층 발굴 및 지원, 기초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근로와 연계한 복지에 방점을 두어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699만명의 65.6%에 해당하는 약 45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권고 59)
37. 정부는 공공주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으로 2017년까지 15만호 공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도 도심형, 토지임대방식, 협동조합 연계, 한옥뉴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주체, 주택유형, 택지 등을 활용한 특화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확대, 강화하여 주거비 지원을 실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로 최대 81.1만 가구에 월 평균 11.1만원의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였다. (권고 61)

- 건강권

38.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에서 2014년 63.2%, 2015년 63.4%로 다소 상향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2014년~2018년 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생애주기별 핵심적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 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라는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휴대용 산소치료나 호흡보조기 등에 대한 요양비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필수 재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권고62)

39.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위주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6. 5. 29.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 5. 30. 시행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환자의 인권 침해도 최소화하게 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등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권

40. 대한민국의 학생 취학률은 2016년 기준 유치원 50.7%, 초등학교 취학률 98.1%, 중학교 취학률 94.9%, 고등학교 취학률 94.1%, 전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8.5% 수준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41.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2012년 국가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3조 9천억 원과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체적 노력으로 마련한 3조 1천억 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였다. 2017년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차등지원하는 유형과 대학자체의 등록금 경감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 다자녀대상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2.5%로 물가상승률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서, 대학등록금 경감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다. (권고 63)

E. 여성 및 아동의 권리

42.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되도록 하였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5년 주기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 26, 27)
4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보호·교육 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이 2016년 이루어졌다. 또한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청소년 부 또는 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학원비 등 학업지원, 자립촉진 수당 지급 등 한부모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였고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 28)
44. 고용 및 노동시장 여성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2014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아빠의 달’을 도입하고 갈

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 (권고 26, 48)

45.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 차별행위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 이외의 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고 49)
46. 정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2012년 12월 폐지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도 우편고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였다. 성폭력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2012년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 모든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권고 39, 40)
47.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년부터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업종 평균 여성근로자비율 대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를 도입하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해당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이 2015년 36.4%, 2016년 37.3%,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5년 15.9%, 2016년 16.4%로 상승하였다. 정치영역에 있어서는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를 도입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16대 국회에서 5.9%에 불과했던 여성의원 비율은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 제20대 1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48. 무력충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병역법」을 개정하여 18세 이상의 남성만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있고, 병역의무자인 남성은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받은 남성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 20)
49.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고, 전문적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를 증원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위하여 전문 기숙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설치하였고, 정서 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권고 19)
50.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시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본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이 가능하다. 난민 등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출생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권고 29)
51. 아동의 입양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철회를 위하여 정부는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요보호아동의 입양 시 국내외 입양 모두 법

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2013년 「가사소송법」에 관련 절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재판을 하는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2013년 5월 서명하였으며, 이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철회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유보철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입양특례법상 입양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입양전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시에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입양허가 전에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효과적인 양육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입양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권고 10, 47)

52. 아동에 대한 학내 체벌을 금지하기 위하여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근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동행출동 근거도 마련되었다. 2015년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2016년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권고 17, 38, 40, 41)

53. 아동성폭력 예방 조치 및 교육을 강화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성인권교육 및 직장 내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찰 및 검찰에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팀 및

검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성·아동범죄 수사전문가과정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인제도와 진술조력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15년 범위 내에서 성충동약물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권고 41)

54. 아동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9세 이상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소년원은 소규모 거실로 개선하고, 가족간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소년 수용자의 대학 진학 및 직업훈련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대안처분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결정,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대안처분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징계대상 행위 조사 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상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진술기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입양에 대한 결정 등에 있어서 법원은 13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사사건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고 45)

55. 정부는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다. 2013년 개정에 따라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등 약취, 유인 행위에 대한 목적 규정을 두었고, 인신매매의 결과적가중범을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으로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 국내에 있을 때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보편적 관할권 규정을 도입하

였다. 이후 정부는 인신매매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2015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고, 2015년 12월 5일 위 의정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권고 42, 43)

F. 소수자 권리

56.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현재 이행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별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권고 31, 32, 46, 69)
57.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고용허가제의 성격상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이동 허용 변경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및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의 사업장변경을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2016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고 65)
58.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향유한다.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다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한 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입국 후 3개월 이내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며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민과 같이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의 적용을 받으나 반환일시금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채불에 대비하고 안정적 귀국과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약 3000개소 중 3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할당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노동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농축산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권고 67)

59.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해 2006년 설치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는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위한 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고 있고 평균 보호 인원은 2008년 17명에서 2016년 27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특칙을 마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및 기타 폭력을 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사법절차에 호소할 수 있도록, 이들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권고 39)

60.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국가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불법체류 아동들도 만 12세 이하인 경우 총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건강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진료도 지원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자체적으로 부모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며,

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고 66)

61.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절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난민인정절차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과정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시리아 내전 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시리아 출신자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보호하고, 2015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재정착 난민을 시범수용하고 있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착 난민 수용의 정식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고 68)
62. 또한 난민신청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 등 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고 배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난민을 포함한 모든 국내 등록 외국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주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 64, 68)

IV. 자발적 권고의 이행 및 세계인권증진을 위한 기여

63.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면서 제출한 자발적 권고에 관한 내용은 제2차 UPR 심의의 권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었다.
64. 우리 정부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약속과 함께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 의지를 담은 자발적 공약을 제70차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자발적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2016~2018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세계 곳곳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제24차 인권이사회부터 1~2년마다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상정하며,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을 수입하며, 인권이사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권이사회 차원의 논의에 기여하였다.

65.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 기구의 이사국 및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여성지위위원회의 이사국 및 위원국으로서 양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엔 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으로서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주유엔대사가 2015~2016년 임기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을 수입하며 장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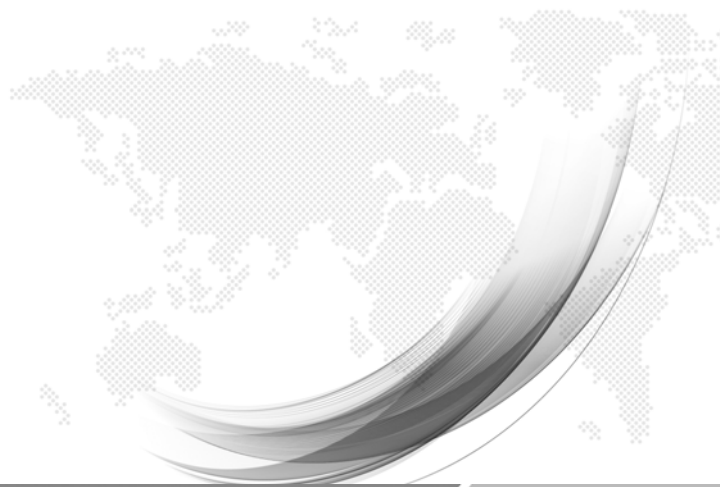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V. 새로운 쟁점 관련 진전 상황 및 문제

66. 유엔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규범이 형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NCP가 실질적으로 기업인권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접수받은 경우, 기업측과 노동조합측간 당사자 면담주선 등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3년 NCP 구성을 개편하여, 정부와 CSR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2017년부터는 노동 및 중재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OECD 사무국에 동료평가를 받기로 신청하였다. 최근 NCP는 이의제기 사건 처리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면담주선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적절한 권고를 해왔으며, 향후에도 NCP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과 NAP 지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정부는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다.
67. 군대 내의 기본적 권리 침해 행위와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군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함으로써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1회 이상 인권실태점검과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군인권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장병·부모·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방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병영 내 인권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 내의 인권보장 정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8. 한국은 2018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빈곤, 노인자살, 노인학대, 노인 상호간 부양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약 44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방문, 전화, 택배장비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녕을 확인하고, 2011년부터 민간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을 통해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명단공표, 취업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상호간 부양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 상호간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5.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검토보고서 (2017. 11.)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검토 보고

2017. 11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

목 차

I. 총평

II.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제도적 차원

- 가.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가입 조약의 국내이행
-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 평등 및 비차별 원칙

-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 다.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가. 생명·자유 및 안전권 : 사형제 폐지
- 나. 생명·자유 및 안전권 : 자살
- 다. 생명·자유 및 안전권 : 고문
- 라. 기본적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 마. 기본적 자유 : 국가보안법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가.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 나.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빈곤해소
- 다. 건강권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 여성 및 아동의 권리

- 가. 고용 및 노동시장의 여성 불평등
- 나. 직장 내 성희롱
- 다.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6. 소수자 권리

- 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 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 다. 난민 처우개선

7. 새로운 쟁점 관련 진전 상황 및 문제

- 가. 기업과 인권
- 나. 군 인권
- 다. 노인 인권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I. 총평

-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함) 제3차 심의(2017.11.9.)를 위한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함
- 이번 제3차 정부보고서 작성방법 및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총괄하여 정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초안을 게시하여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고 밝힘
-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의 현 이사국이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임하여 이사국을 수임하였고, 2016년에는 제10대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이사회 최대 협력국이나, UPR 권고 중 국제협약 가입과 유보 철회 및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이 부족하며, 특히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대한민국은 정부보고서에서 보다 많은 통계 및 현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부 통계 및 현황 자료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각 쟁점별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을 기술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에 현황, 법령, 정책의 설명에 한정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수립 등 보완이 필요함
- 본 검토보고서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인권위 내부 부서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이슈를 제외하되,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와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Ⅱ.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제도적 차원

가.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가입 조약의 국내이행(제8항~제10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가입 조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현재 비준하지 않은 조약 중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관련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함
- 또한 이주노동자협약 및 가사근로자협약은 상당 부분이 국내법과는 불합치하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의 존폐 여부와 결부되어 즉시 비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입양에 관한 조항은 관련 국내법제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보철회를 위한 부처협의를 실시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와 관련하여, 상법 제732조를 개정(2014.3.)하였으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유보 철회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18개 중 7개¹⁾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경우도 유보조항²⁾을 두고 있음

1)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방문조사 및 예방기구 설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2)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 사호(성(姓) 선택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항(입양허가제) 및 제40조제2항 나호의(5)(상소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호(생명보험 가입)의 경우 유보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 사호(성(姓) 선택의 자유)와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입양허가제)은 국내 법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진전이 있으므로 현재 유보철회를

- 대한민국은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미가입 조약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없음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2017. 5.2.~5.3.)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할 것과 동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또한 우리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2015) 및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대해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2009)한바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정부에 권고한바 있음
-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2017.5.9.) 이후 노동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³⁾ 의지와 함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기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제11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라 함)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제2차(2012~2016)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한 제3차(2017~2021) 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보고서는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로, 시민사회단체 제안을 받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쳤다고 기술함

위한 장애는 줄었지만 아직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음.

3)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2017.9.25.).

2)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NAP 이행점검을 위해 국민점검단을 구성해 연도별 이행 상황의 점검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제2차 계획 기간이 지난해 종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또한 제3차 NAP의 시간적 범위는 2017~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2016년 10월에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16년 7월에 제3기 NAP 수립을 권고함
-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NAP를 조속히 수립하되, 균형적인 인권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회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지하는 등 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2. 평등 및 비차별 원칙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제15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90여개 개별 법령에서 다양한 영역 및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며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도 허용될 수 없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2013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연구 검토 및 국민 의견수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2) 현황

- 대한민국은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후에 어떠한 업무 진행 상황도 밝히거나 보고한 바 없으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제기⁴⁾와 2017년 3월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유엔 내 여러 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2017. 10. 9.)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음
-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입법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06년에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입법 권고한바 있으며,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12.)하였으나 반대 여론으로 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차별사유 항목(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전과)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대한민국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 해소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확한 시행 효과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국회입법조사처(2017),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제17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해 외국인 차별금지 교육·홍보 등의 노력과 함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을 제정하였다고 기술함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매체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욕하는 표현을 심의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를 제재조치하며, 인터넷 상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심의해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고 기술함

2) 현황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5차-제16차 최종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해 적절한 처벌을 규정함과 더불어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종적 동기에 의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개별 법률도 없는 실정임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01년 4월 법무부장관에게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당사국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 간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인터넷 상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함
-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7)에 따르면, 대

- 한민국은 성적소수자의 94%, 장애인의 79%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주민의 51%가 오프라인에서 같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위원회의 실태조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정부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볼 수 없음

다.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제18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과 관련, 정부보고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닌,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 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가 위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특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2016년 7월에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
- 한편,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2017.10.9.)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고 우려하면서 「군형법」의 해당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제2기(2012~2016) 및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군형법」 제92조 규정의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

종건해 발표에 따른 위원장 성명에서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의 제92조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대한민국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조항을 개선 항목으로 포함하여 검토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가. 생명·자유 및 안전권 : 사형제 폐지(제19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기술함
-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제의 형사정책적 기능, 현재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체계 전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2016.12.31. 현재 기준으로 일반 사형수 61명, 군 사형수 4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지난 1997.12.30.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지금까지 1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임
-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 집행에 대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음
- 한편,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관련 법안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7번 발의되었으며, 특히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2015.7.6.)은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가석방이 허락되지 않고 사망 시까지 교도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05.4.6. 헌법 제10조,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2009.8.4.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8헌가23)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에서도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및 사형집행의 지속적인 중단을 권고함
- 대한민국은 사형제의 실질적 폐지와 대체 형벌의 도입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 정서 가입 등에 대한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생명·자유 및 안전권 : 자살(제20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2011) 제정과 노인들의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었던 맹독성 농약(그라목손)의 생산·유통 금지 등 정책적 노력으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기술함
- 또한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상담·지원, 24시간 전화상담 체계 운영,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며, 2018년부터 지자체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와 평가를 통한 자살예방의 지역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과 비교 시, OECD 평균인 12.0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24.6명(2016년 기준)으로, 2003년 이후로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임

*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인구로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

-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가 총 13,092명으로 하루 평균 35.8명이며,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5.6명으로 전년 대비 0.9명(-3.4%) 감소함
- 그러나 통계청 ‘201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이며, 특히 70대 노인자살률은 2014년 57.6명에서 2015년 62.5명, 80세 이상은 2014년 78.6명에서 2015년 8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13년 ‘노인인권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노인 자살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노인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자살 예방 관련 전문성 강화,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 기존 재가복지나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적 위기사정 및 개입기능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함
-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3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보건복지부장관) 및 의견표명(국회의장)을 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필수적인 사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 외 그 가족과 자살사망자 가족을 추가하며, 자살 예방 상담교육 대상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자살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을 포함할 것 등임
-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생명·자유 및 안전권 : 고문(제21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처벌되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2007년에 명문으로 규정함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2007.6.1.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경찰청이 2016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비율은 2013년에 0.10%, 2014년에 0.13%, 2015년에 0.17%로 나타나, 변호사가 실제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또한 대한민국은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피조사자가 90명이며, 경찰 수사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음
- 한편, 대한민국은 「헌법」 제12조 제2항⁵⁾에서 고문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⁶⁾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고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고문’의 구체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고문’의 정의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고문에 포함시키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명확히 일치하는가는 불명확함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13.5. 경찰이 「범죄수사규칙」 제59조제4항(「검찰사건사무규칙」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한 사유와 동일함)을 근거로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상담

5)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6)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과 조언을 제지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6.6.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메모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 결국 메모를 보여준 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경찰서는 이를 수용함
-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2016. 9.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 하였으며, 검찰은 이를 수용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대한민국은 고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현황에 대한 통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함과 더불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가 실제로 활성화되어 피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라. 기본적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제27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종교 등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징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개최, 국회에 관련 법률안 제출, 관련 부처의 국민여론조사 실시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입영 또는 징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8조제

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음

- 이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위로 말미암아 「고문방지협약」 제16조제1항에서 규정
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는 것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6. 발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
한 분석보고서(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교도소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모두
723명이며 그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약 92.5%에 해당함
-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제4차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CPR/C/KOR/CO/4)」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대해 우
려를 표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함
- 대한민국의 1심 법원에서는 2017.1. 현재 총 1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2심(항소심) 법원에서는 2016.10.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
려진바 있으며, 2017.1.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음
-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기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
결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및 2011
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
정을 내린 후 2017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국회에서는 과거 발의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병역
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상황임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05.12.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방부는 이를 불수용한바 있고, 2016.11. 헌법재

판소에서 심리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2005년 권고 결정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05년 최초 조사(찬성 10.2.%)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현재 46.1%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유의미한 변화를 적극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마. 기본적 자유 : 국가보안법(제29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에 불과하다고 밝힘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 상당수가 동법 제7조⁷⁾ 위반으로 경찰청이

7)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 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372명이며, 이 중 제7조 위반 혐의자가 313명(약 84%)임

- 이러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2014년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25/55/Add.1)」,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CPR/C/KOR/CO/4)」, 2016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32/36/Add.2)」에서는 「국가보안법」 오남용 가능성 및 동법 제7조로 인한 정치적 다원성 훼손과 표현의 자유 제약을 지적하고 있음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04년에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많은 법률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
- 대한민국은 우리 위원회가 2016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가.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제33항~제34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정부가 2011년에 이어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4년 말에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2014년 8월 기준)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향상,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퇴직급여 적용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 유도,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따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이 증가 추세이고 정규직 대비 임금 비중도 2011년 61.3%에서 2016년 66.3%로 상승하였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2017년 7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에 따른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 법원이 구체적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왔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구체화, 약관법 적용, 산재보험법 특례적용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보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2) 현황

- 정부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2014년 8월 기준), 임금의 비중은 정규직 대비 2011년 61.3%, 2016년 66.3%로 상승하였다고 기술⁸⁾하고 있으나, 2016.8.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에 해당하는 644만 명으로 집계되며,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9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279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⁹⁾,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가입률,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

8) 고용노동부(201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휴가 수혜율 등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음¹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요구해 관철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쟁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1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 대한민국은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신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이외에 지난 10년 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시급함
- 한편, 대한민국은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전문강사 등 교육계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 대책의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2016년 130만원(정규직279만원, 비정규직149만원), 2015년 123만원(정규직270만원, 비정규직147만원).

10)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빈곤해소(제35항~제36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5년에 제도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 기준 다층화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원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술함
- 또한 부양의무자 중 자녀 사망 시에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각종 급여 중 교육급여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였으나, 2015년 7월 이후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었고,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간 수급 기준을 달리 정하여 생활 여건에 따른 차등적 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체 수급자가 2014년 132만8천명에서 2015년에 164만 6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도 변경 이전에 132만8천명이던 수급자는 제도 변경 이후에 125만9천명으로 감소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5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은 3.2%로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인 12.5%와 큰 차이를 보여, 빈곤층의 상당수가 공공부조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여,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2022년 1월에 완전 폐지를 위한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밝힘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고, 36.8%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20.2%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답한 만큼 비수급빈곤층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다. 건강권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제38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2%에서 2014년 63.2%, 2015년 63.4%로 다소 상향되었고,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계획(‘14~’18)에 △생애주기별 핵심적 건강 문제의 필수 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 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라는 3대 방향 아래 32개 세부과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기술함
- 정부보고서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지원 강화, 휴대용 산소치료나 호흡보조기 등에 대한 요양비 적용 확대 등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2) 현황 및 평가

-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63%대 수준에 머물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OECD 34개국 평균 약 80%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비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도 OECD 평균 19.6%의 2배에 달하는 36.8%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¹¹⁾
- 또한 대한민국은 중증질환의 발병 등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6.8%,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는 응답이 10.2%를 차지하고 있음¹²⁾
-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저조하며 그 결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 더욱 취약할 상태에 놓이는 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적 유인을 줄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됨

5.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가. 고용 및 노동시장의 여성 불평등(제44항, 제47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불평등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 그리고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인

11) 의료비: 건강보험급여 83.5%(국민건강보험부담 63.4+법정본인 부담 20.1%) + 건강보험 비급여 16.5%.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의료패널조사.

- 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013년부터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장 기준을 업종별 평균 여성근로자 비율 대비 기존의 6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이 2015년 36.4%, 2016년 37.3%,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5년 15.9%, 2016년 16.4%로 상승하였다고 밝힘
 - 그리고 정부보고서에서는 정치 영역에 있어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를 도입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한 결과, 제16대 국회에서 5.9%에 불과했던 여성의원 비율은 제17대 13%, 제18대 13.7%, 제19대 15.7%, 제20대 1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제8조), 교육 및 승진에서 성별 차별금지(제10조), 정년 및 해고에서 상별 차별금지(제11조) 등 핵심 규정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공백 예방을 위해 여성종사자 간 순번을 정해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임신순번제’ 등 비인간적 관행이 존재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수는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임
-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6%로 해당년도의 조사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출산·육아 부담의 편중에 따라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 단절,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의 고용 형태, 성별 직종 분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의 조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등이 관건이나 개선이 더딘 상황임

-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가 190만 명으로 54세 이상 기혼여성의 20.6%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6년 8월 기준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26.4%인 반면에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41%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2010년의 41.8%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임
- 여성 대표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세계 193개국 여성의원의 평균 비율인 23.3% 및 아시아 국가 평균 비율인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정당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934명 중 10.5%인 98명만이 여성이었으며, 모든 정당의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은 15% 미만에 그친 바 있음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대한민국은 여성의 일자리 질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문제와 함께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¹³⁾의 격차가 2011년 이후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다

13)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체	34.2	33.3	32.6	32.4	32.5	32.8
남자	27.8	27.2	26.5	26.6	26.5	26.4
여자	42.8	41.5	40.6	39.9	40.2	41.0
남녀 격차	15.0	14.3	14.1	13.3	13.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시 상승하였으며, 이 격차는 30세 전후에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이후에 특히 심각해짐에 따라 유리천장 현상과 더불어 남녀 임금격차가 매년 OECD 회원국 내 최고치¹⁴⁾를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임

-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구성하는 공무원 중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 성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대기업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아태지역 조사 대상 20개국 중 가장 낮은 2.4%¹⁵⁾로 나타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이 저조한 상태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을 통해 정당에 대해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자 추천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 바, 법규의 개정을 통한 이행 강제수단 확보 등의 조치가 요구됨

나. 직장 내 성희롱(제45조)

1) 정부보고서 내용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차별 행위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함
- 정부보고서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사업주 이외의 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기술함

14) 영국 소재 민간 회계 컨설팅 업체인 PwC가 매년 공개하는 OECD 회원국 간 성별 임금격차(gender pay gap)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2015년 대한민국의 남녀 평균 임금격차는 36%로 최악이다(PwC, PwC Women In Work Index : Closing the gender pay gap, 2017. 2, p.24).

15)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orporate Women Directors International), 2017.

2) 현황

- 대한민국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이외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임
- 성희롱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언어적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형사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¹⁶⁾가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현재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¹⁷⁾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대한민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상시 10명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및 관심 부족이 우려됨
- 실제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¹⁸⁾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이 90.8%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¹⁹⁾에서는 조사대상의 59.5%만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서면 또는 유인물 교육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한민국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 사례가 적지 않은 바²⁰⁾ 소규모 사업

16) 2014. 4.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포함.

17) 2017. 5.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18) 여성가족부(2015), 성희롱 실태조사.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성희롱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장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다.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제52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가해자 처벌과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 강화, 부당한 친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근거,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동행 출동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2016년 3월에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로 확인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5년 19,20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 사례 건수도 2009년 5,685건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2015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²¹⁾은 1.32‰로 미국 9‰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역시 29.4‰로, 호주(73%), 일본(68%), 미국(58%)에 비해 낮은 수준임²²⁾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대한민국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신고접수

20) 한국성희롱예방센터(2016), 성희롱 피해 상담사례 527건 중 41.3%인 218건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21)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

2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주요 현황.

건수가 전년 대비 36% 상승한 것에서 보듯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여지가 큰바, 신고 체계의 확립과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6. 소수자 권리

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제56항~제58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성격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장 이동 허용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의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2016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기술함
- 그리고 정부보고서에서는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기본적 노동권을 향유한다고 밝히면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다르지 않다고 판결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반환일시금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기술함
- 정부보고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비하고 안정적 귀국과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매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약 3,000개소 중 3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할당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농축산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있다고 기술함

2) 현황

-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²³⁾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국적동포로 자격이 제한되는 ‘방문취업’ 등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이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인은 26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5년의 체류 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직 기회 3회로 제한,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 구직하지 못하면 출국,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이후 지급되는 등 단기적 노동 제공 후 출국을 예정하는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통합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변자로서 차별과 착취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
- 또한 이직 또는 퇴직을 위해서는 사업주 동의가 요구되는 등 직업 선택에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10% 이상이 직장에서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의 빈도와 수위가 높은 상태이나 신고 또는 이직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고, 산업재해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21%에 그치고²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도 빈번한 등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함
- 다수 외국인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휴식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근

23) 통계청(2016), 외국인 고용조사.

24)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2016), 경남이주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장시간 근로와 짧은 휴식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한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이 284시간에 이르렀고, 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조사 대상의 3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²⁵⁾

- 한편, 대한민국은 시범 시행 중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최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90일의 단기 체류를 인정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매 30일 당 최소 휴무일을 단 2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특별한 개선책 없이 전국 단위로 시행이 추진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또 다른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여 2016년 기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이 2만3천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총 선원의 39%에 육박하는 수치이나, 어업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이틀 밖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상당수가 폭행이나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임²⁶⁾
- 이렇듯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타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에 의한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무보다 열악한 선상 근무환경을 고려해 통상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선박소유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제로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선원 최저임금의 80% 미만에서 형성되는 상황임

25) 국가인권위원회(201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6)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2016).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대한민국은 외국인 정책의 종합적 시행을 위한 법제가 제정되고 전국적인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과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하여 ‘여성’, ‘이주민’, ‘노동자’ 삼중고를 경험하는 복합차별의 대상이 됨에도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한민국은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서 개정 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센터를 통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구인업체의 사업주에게만 외국인 근로자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의 선택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우리 위원회는 2013년 외국인 선원에게 차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 고시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차별적 최저임금 고시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각종 수당, 휴게시간 및 휴일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못해 기본적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또한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됨에 따라²⁷⁾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27) 국가인권위원회(2016),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제59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2006년 설치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기술함

2) 현황

- 대한민국은 2016년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12,997건, 일반폭력·성폭력 관련 2,162건, 쉼터 관련 6,161건, 의료 관련 10,664건 등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대한민국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생활 지원을 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외에 위기 지원을 하는 이주여성쉼터밖에 없는 상황으로, 쉼터에 들어가지 못한 이주여성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난민 처우개선(제61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난민 인정심사 및 난민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후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 과정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등을 규정하였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시리아 출신자

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여 보호하며,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재정착 난민을 시범 수용하고 있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착 난민 수용의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에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난민법」의 제정으로 난민 인정 심사의 절차 및 처우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심사 공무원 수의 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훈련기회 부족 및 이의 신청 시 2차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에서 서면-요약심사 기조가 유지되어 난민 신청자의 의견 전달의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실제 시행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나 난민 신청 지연 등 형식적 사유만을 근거로 출국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여권, 비자 등의 문제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구금하거나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대한민국은 2013년 이전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수가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한바,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난민 신청자로서 난민과 같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 취업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이들의 처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교육, 가족결합 등과 관련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밖에도 「난민법」을 근거로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지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13년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 부여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불수용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6. 7. 정부에 난민 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 시 불회부 사유는 형식적 요건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요건 위주로 최소화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이 어려운 자들이 출입국법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해 국경관리시스템을 무용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불수용한바 있음

7. 새로운 쟁점 관련 진전 상황 및 문제

가. 기업과 인권(제66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기업과 인권 관련, 정부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규범이 형성되면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라 함)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권에 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은 경우에 기업측과 노동조합측 간의 당사자 면담주선 등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2013년에 NCP 구성을 개편하여 정부와 CSR 민간 전문가, 노동 및 중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NCP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NAP'라 함) 지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독성가습기살균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2016년까지 5,276명이 피해를 입고²⁸⁾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 치약에서 살생물제 방출이 확인되는 등 기업 활동이 소비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의 성차별, 가맹점에 대한 본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개입 등 기업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품 결함 보고 및 수거 의무 발생 요건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요구됨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2016년에 포괄적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구분하여 기업과 인권 NAP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바 있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과 NAP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의 수립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준중 행동규범 준수와 관련하여 NCP 독립성 부족과 활동 부진이 지적되고 있는바, NCP 활동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노동 관련 전문가와 중재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밝혔으나, 민간위원의 선임 기준 및 절차가 알려지지 않아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센터 접수 현황.

나. 군 인권(제67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군대 내 부당한 대우 방지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군대 내 기본적 권리 침해 행위와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2015년 12월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동법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군인권 교육의 실시,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여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대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국방부가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 및 신고된 군대 내 폭행은 2012년 649건, 2013년 569건, 2014년 947건, 2015년 800건, 2016년 6월 현재 349건이고, 가혹행위는 2012년 83건, 2013년 40건, 2014년 65건, 2015년 88건, 2016년 6월 현재 40건으로, 정부와 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대한민국은 2014년에 피해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따돌림을 당해오다 사망한 일명 ‘윤OO 일병 폭행사망 사건’, 평소 집단괴롭힘을 당해오던 병사가 가해자들에게 충기를 난사하여 5명이 사망한 일명 ‘GOP 임OO 병장 충기난사 사건’, 그리고 2016년에는 선임병들이 피해 병사들에게 대량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일명 ‘해병대 식(食)고문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국회는 2014. 11.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대 내 인권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2015. 7.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여 총 39개의 개

선 과제를 제안한바 있으며, 위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옴부즈만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 군 지휘권 혼란 및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다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한 이후에 제20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이 다시 발의된 상황임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를 통해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군옴부즈만)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군대 내 기본적 권리 침해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기적 군인권 교육의 실시,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에 대한 보호 등을 시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노인 인권(제68항)

1) 정부보고서 내용

-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는 노인빈곤, 노인자살, 노인학대, 노인 상호간 부양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그리고 노인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방문, 전화,택내 장비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녕을 확인하고 2011년부터 민간 결연을 맺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을 통해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함

- 또한 정부보고서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명단 공표, 취업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기술함
- 이와 더불어 정부보고서에서는 노인 상호간 부양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 상호간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 현황

- 대한민국은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5천1백75만 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백25만7천 명으로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임
- 노인 자살률 및 빈곤율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임²⁹⁾

29) 2014년 대한민국의 실질은퇴연령은 평균 72.9세로 OECD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7~8년 더 일하는 상황(OECD, Pension at a Glance 2015)임.

통계청의 <201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인 기간은 9.1년으로, 기대여명 절반 이상 동안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 상황도 열악함.

2013년 기준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전체 평균 10.6%의 4.4배, 2위인 이스라엘 24.1%의 2배 이상)이고, 전체 인구의 상대빈곤률은 14.6%(2013)로 OECD 평균(11.9%)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예상됨 한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여전히 42.3% 수준에 불과함 55~79세 연령대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51만원이고, 특히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수령자(공무원 연금 등)는 12.5%에 불과한 반면, 75.2%는 50만원 미만 수령자이고, 25만원 미만 수령자도 49.5%에 달함(이상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따라서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들은 별도 근로소득, 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소득이나 지원이 없을 경우 절대빈곤 탈출이 어려움.

또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월 약 20만원이 지급되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 금액만큼 덜 받으므로 이들 최빈곤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함.

노인 자살의 경우, 2015년 인구 전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자살 사망률(12.1명, 2014년 기준)의 2배 정도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58.6명으로 급증하는데, 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더 가파르게 나타남(65~69세 37.1명, 70~74세 54.9명, 75~79세 72.5명, 80세 이상 83.7명).

3) 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우리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를 통해 노인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노인의 완전한 권리의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한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독거노인의 지원에 관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자살 원인은 빈곤, 가정불화, 고독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OECD Health Data 2015), 노령에 접어들어 직후(65세~69세) 보다 70세 이후 자살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노후의 삶이 '살기 힘들 정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줌.

[참고] 국제인권협약 가입·비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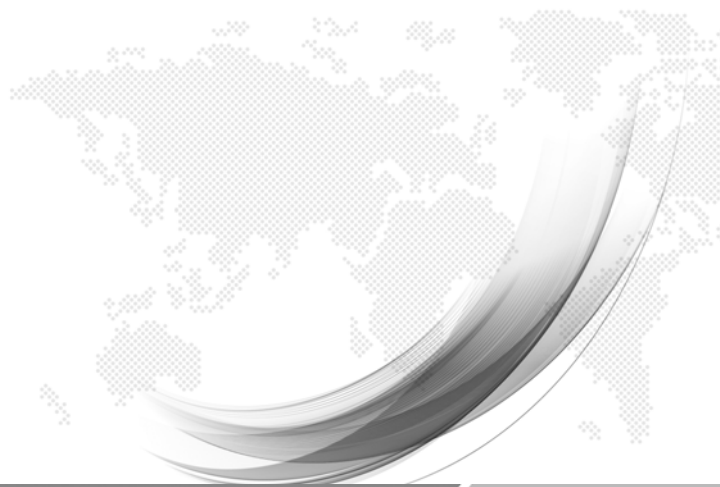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조약명	채택 (발효)	우리나라 가입 (발효)	우리나라 유보
1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66.12.16 (76.3.23)	90.4.10 (90.7.10)	제22조 ‘결사의 자유’
2	- ICCPR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66.12.16. (76.3.23.)	90.4.10 (90.7.10)	
3	- ICCPR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89.12.15. (91. 7.11.)	미가입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	66.12.16 (76.1.3)	90.4.10 (90.7.10)	
5	- ICESCR 선택의정서(개인진정)	08.12.10. (13.5.5.)	미가입	
6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65.12.21 (69.1.4)	78.12.5 (79.1.4)	
7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79.12.18 (81.9.3)	84.12.27 (85.1.26)	제16조 제1항 사호 ‘성 선택의 자유’
8	- CEDAW 선택의정서(개인진정)	99.12.10 (00.12.22)	06.10.18 (07.1.18)	
9	고문방지협약(CAT)	84.12.10 (87.6.26)	95.1.9 (95.2.8)	
10	- CAT 선택의정서(방문조사 및 예방기구 설치)	02.12.15	미가입	
11	아동권리협약(CRC)	89.11.20 (90.9.2)	91.11.20 (91.12.20)	- 제21조 가항 ‘입양허가제’ - 제40조 제2항 나호의(5) ‘상소권 보장’
12	- CRC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00.5.25 (02.2.12)	04.9.24 (04.10.24)	
13	- CRC 제2선택의정서(아동 성매매, 음란물 등)	00.5.25 (02.1.18)	04.9.24 (04.10.24)	
14	- CRC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11.12.19	미가입	
15	장애인권리협약(CRPD)	06.12.13 (08.5.3)	08.12.11 (09.1.10)	제25조 마호 ‘생명보험 가입’
16	- CRPD 선택의정서(개인진정)	06.12.13 (08.5.3)	미가입	
17	이주노동자권리협약(CRMW)	90.12.18 (03.7.1)	미가입	
18	강제실종협약(CPED)	06.12.20 (10.12.23)	미가입	

[참고] ILO 8대 협약 가입 현황

4대 원칙	8개 핵심 협약	비준 여부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미가입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입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11호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6. 제37차 인권이사회

주제네바 유엔 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발언문 (2018. 3. 15.)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외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제37차 인권이사회(우리나라 UPR 결과보고서 채택)

수 신 : 인권사회과장

사 본 : 주유엔대사, 법무부장관(인권구조과장), 법무부장관(인권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국제
교육협력담당관), 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방부장관(법무담당관), 국토교
통부장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 여성가족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 경찰청장(인권보호담당관), 국
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차관, 다자조정관, 장관, 청외교

발 신 : 주제네바대사 (대표단)

연 호 :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S10751(2017.11.23)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3.15(목) 오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제3주기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회의(의제 6)를 개최, 우리나라 UPR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우리측에서는 최경림 주제네바대사, 윤상욱 주제네바참사관, 이창온 법무협력관, 정진호 인권사회과 서기관, 오승준 주제네바서기관 참석)

I. 핵심 요지

- 우리나라(최경림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11월 UPR 수검시 218개 권고중 85개를 수용하고, 3개를 참조(note)하기로 하였으며, 잔여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시민사회와의 협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36개를 수용하고 94개를 참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설명함.

- 발언 국가들은 우리가 UPR 절차에 협력적으로 참여하여 다수의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평가하면서도, 이주민권리협약 비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수용하지 않은 일부 권고들을 재차 긍정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함.
- NGO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또는 개정,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폐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요청함.
- 총 218개 권고중 12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를 참조하기로 한 우리나라의 3주기 UPR 수검 결과보고서가 최종 채택됨.

II. 상세 내용

1. 우리나라(최경림 대사) 발언 요지

- '17.11.9 개최된 우리나라에 대한 3주기 UPR 수검에서 총 95개국이 218개의 권고를 제시한바, 우리 정부는 이중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의 권고에 대해 참조(note)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잔여 130개 권고에 대해 공청회,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36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94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참조하기로 결정하여 금번 이사회에 제출하였음.
- ‘평등 및 비차별’, ‘국제인권메카니즘과의 협력’ 분야에서 많은 권고가 이뤄진바, 우리 정부는 대다수 권고를 수용하였음.
 - △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외국인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 국내 사정상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권고는 수용하지 못하였음.
 - △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관련 사회적 합의 등 추가 검토 필요 △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현재 판결에 따라 조치 예정 △ 사형제 폐지 관련 여론, 법감정, 형사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필요

-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성희롱 예방, 이주민 권리증진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개선 및 강화 등을 지속 추진 예정임.
- 작년 출범한 신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연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자 함.
- 아울러, △ 국가인권위 독립성 제고와 정부부처의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제고 △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작성 추진중

2. 국가 및 NGO 발언 요지

가. 국가 발언 (총 12개국 발언)

- **(이집트)** 외국인혐오 및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권고 수용을 환영하나, 이주민권리 협약 비준은 수용하지 않았는데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함.
- **(온두라스)** 이주민권리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고하기를 기대함.
- **(이란)**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와 협력 하라는 이란의 권고를 수용한바,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함.
- **(이라크)** 대다수의 권고들을 수용한 점을 평가하며, 이라크의 권고들(정당설립절차 개선(참조), 국가보안법 7조 개정(참조), 강제실종협약 가입(수용))을 재차 강조함.
- **(라오스)** 여성,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인권, 특히 보건 분야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함.
- **(필리핀)** 이주민권리협약 비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는 데, 협약 비준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기를 희망함.
- **(몰도바)** 구금장소 방문 및 조사를 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하고 고문 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검토하라는 몰도바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함.
- **(러시아)** 러시아는 인종적, 민족적 불관용을 선동하는 자료의 미디어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수용한 점을 평가함.
- **(시에라레온)** 이주자, 외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는 시에라레온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함.

-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권고(가정폭력 예방 노력, 지뢰희생자 보호 관련 경험 공유) 수용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증진 노력을 평가함.
- **(수단)** △ 다수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 △ 다수의 UPR 권고 수용을 평가함.
- **(알바니아)** B규약 22조(노조설립 자유) 유보 철회 권고를 수용한 점을 평가하며, 조속한 이행을 기대함.

나. NGO 발언 요지

※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등 9개 NGO 발언

- Amnesty International 등 다수 NGO는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폐지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 △ 법률상 사형제 폐지 및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 Human Rights Watch 등 다수 NGO는 △ 국가보안법 철폐 또는 개정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철폐 △ 군형법 개정을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 철폐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통한 이주민 아동 차별 철폐 △ 아동에 대한 실질적 차별 금지 등을 요청함.

3. 우리나라(최경림 대사) 마무리 발언

- 한국 정부는 UPR 준비 및 권고 검토 과정에서 모든 관련당사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거쳤음. 이러한 과정은 현 우리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되었음.
-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 모든 국가들과 NGO들에 사의를 표하며, UPR 과정에서 제기된 권고들이 우리나라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함.

붙임 : (첨부 2) 우리나라 발언(마무리)

6. 제37차 인권이사회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발언문(2018. 3. 15.) 261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The 37n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Check against delivery>*
Agenda 6 (Consideration of the UPR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15 March 2018

Opening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President,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of those who have worked so hard in the UPR process. My Government appreciates very much the valuable contribution by the Member States and all other stakeholders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held on 9 November 2017.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Troika, namely Mongolia, Hungary and Congo, for their invaluable work and cooperation they have displayed in this meaningful process.

The UPR process provi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mportant opportunities to look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each Member State so as to tackle the challenges and achieve improvements in the areas concerned.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s the UPR process successfully launched its third cycle last year and is pleased to reiterate its full support for the UPR mechanism. We believe that it offers an opportun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affirm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Mr. President,

Following the UPR Working Group review on 9 November where 95 member states made 218 recommendations, my Government supported 85 recommendations and noted 3 upon the adoption of the Working Group report on 14 November 2017..

For the past months, the Government held a public hearing and invited civil society groups to exchange opinions over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UPR. Subsequentl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ted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in charge of each recommendation.

After thorough and careful deliberation on the remaining 130 recommendations,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o support 36 recommendations and to note 94 recommendations. This decision and the related positions were sent to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last February.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s has been distributed to all delegations and is also available on the HRC Website.

Mr. President,

I would now like to briefly touch upon my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s stated in Paragraph 132 of the UPR Working Group Report.

First, there were many recommendations related to the two areas, namely,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echanisms."

I am pleased to say that most of recommendations of these areas enjoyed the support of my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pects to accede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pursuing an in-depth discussion and legislative effort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ntinues its effort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and protect the rights of non-citizen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Second,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some of the recommendations which did not receive the support from my Government due to a need for further examination or difficulties from the domestic situations at this moment.

With a view to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voted considerable legislative efforts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90 other legislations. The Republic of Korea will seek further

examination and social consensus on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providing general remedial procedure for the victims of discriminatory acts.

In addition, with regar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lternative service, the unique security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equality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 should be considered. My Government will conform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pending case on the punishmen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Meanwhile, the issue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eeds a careful approach as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essence of criminal law.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decide upon this issue cautiously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ublic opinion, legal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death penalty in criminal policy

Third, I would like to appreciate all the other valuable recommendations made by Member States with regards to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area,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enhancing social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children and considering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projects. We will continue to seek ways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relevant domestic law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in these areas.

Mr. President,

Follow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achievement of democracy in a relatively short time,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it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not only in the country itself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placing importance on the centrality of the human rights. Last year, Korea went one more step forward through the so-called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ushered in a new era of our democracy. We are willing to share this experience with other countr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ed the human rights-oriented policies in its policy pledges and announced a "Plan for Enhancing the Statu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which encourages ministries to

implement NHRC recommendations and strengthens the independency of the Commiss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drawing up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extensive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Mr. Presid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the vibrant and valuable interaction with Member States 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orking Group session, and we believe that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will serve as guidance for th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dignity.

For the UPR to be a credible mechanism leading to actual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effective follow-up measures are imperative, I would like to reiterate the commi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its effort to take into account the concerns and expectations of the member states on its human rights situa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human rights situations but also the global efforts for promoting human rights. Thank you. /End/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The 37n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Check against delivery>*
Agenda 6 (Consideration of the UPR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15 March 2018

Closing Remarks of the Republic of Korea

Mr. President,

I would first like to thank all delegat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constructive comments they put forward as well as for the encouragement that they have extended to my Government today.

The concerns raised and advice which has been offered in the process of the UPR will serve as valuable sources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urther strengthen its willingness to achieve higher standards in the relevant areas of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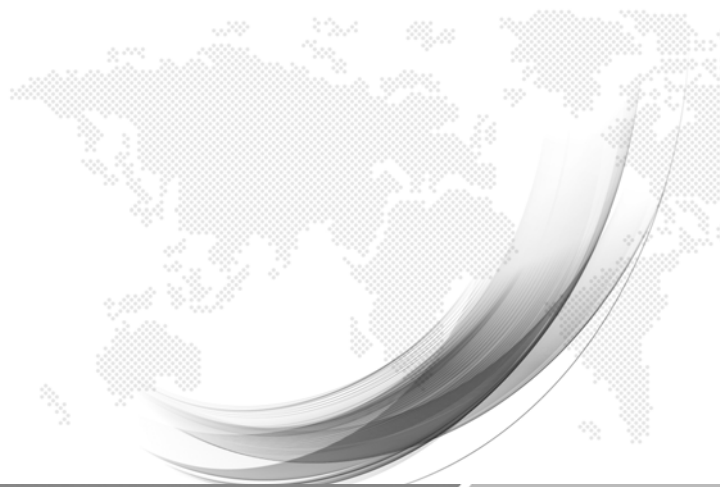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The UPR process provides us with a valuable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a particular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a broad consultation process with relevant stakeholders from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 to the consideration on the recommendations. This process helps us to diagnose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and find out where to proceed.

I wish to assure all of you once again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main firmly supportive of the UPR and the collectiv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rldwide.

In closing, I would like to once again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gratitude to the Troika and the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or their hard work. Thank you. /End/

7. 제37차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언문

(2018. 3. 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rakium Jeo-dong Bldg., 340, Samil-daero,

Jung-gu, Seoul, Korea, 04551

Tel. +82 2 2125 9600 Fax. +82 2 2125 9604

E-mail: nhrc@humanrights.go.kr www.humanrights.go.kr

37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6: Consideration of UPR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rch, 15, 2018

(Check against delivery)

존경하는 의장님,

A등급 국가인권기구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이하 ‘UPR’이라고 함)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상호 검토하는 보편적 절차로, 각국 정부가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제1기 및 제2기에 이어 제3기 UPR 점검을 통해 모든 인권 관련 이슈들과 상황을 조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제3기 UPR 실무그룹 심의에서 총 218개의 권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91개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218개의 권고 중 나머지 127개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UPR 실무그룹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형제 폐지 관련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혐오표현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과 정책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범죄화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주요 권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 의제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PR 절차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인권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당사국의 인권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 의견을 제출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인권조직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rakium Jeo-dong Bldg., 340, Samil-daero,

Jung-gu, Seoul, Korea, 04551

Tel. +82 2 2125 9600 Fax. +82 2 2125 9604

E-mail: nhrc@humanrights.go.kr www.humanrights.go.kr

**37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6: Consideration of UPR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rch, 15, 2018

(Check against delivery)

Mr. President.

It is an honor to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the A Statu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HRCK” or “the Commission”).

The NHRCK believes th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has made tremendous contributions through its process of regular reporting and review of human rights situations of the Member States. Through its efforts, the UPR has bolstered government’s efforts to provide safeguards for human rights and increased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In fact, the recent third UPR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up on its first and second UPR processes, had been a valuable opportunity to paint the overarching picture of human rights situations, and face pending human rights issues. The Commission believes this process gives us an good opportunity to enhance the domestic human rights situ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one step forward as well.

At the end of the third UPR Working Group’s review, the Republic of Korea received total of 218 recommendations. The Commission welcomes the Korean government’s move to

accept 91 recommendations. However, the Commission is also concerned that the remaining 127 recommendations are not accepted as of yet. In order to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Commissio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ectfully accept the recommendations of the UPR Working Group and provide appropriate action plan as soon a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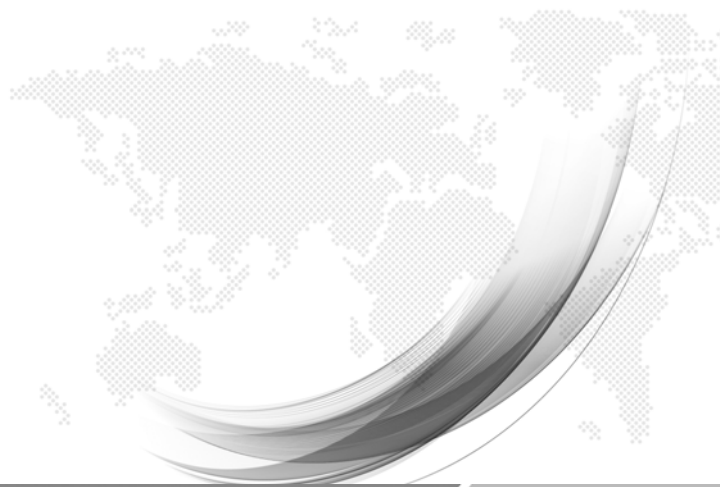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Out of all recommendations made, the Commission recogniz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importance to the domestic human rights agenda. In this regards, the Commission believ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and review recommendations made on the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peal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and measure on hate speech; and the decriminaliz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refus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s the UPR process examines and enhances general human rights situations of vulnerable and minority groups, the effectiveness of this mechanism is found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ssues of the reviewed states by the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is regards, the NHRCK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role to present its independent opinions in an objective and unbiased manner.

The NHRCK will continue its utmost efforts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o this end, the NHRCK promise to work closely with government bodies,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ank you.

8. 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영문)



United Nations

A/HRC/WG.6/28/L.8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13 November 2017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wenty-eight session

Geneva, 6-17 November 2017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Republic of Korea

* The annex to the present report is circulated as received.

Contents

Introduction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Annex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16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held its twenty-eighth session from 6 November to 17th November 2017.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8th meeting on 9 November 2017.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Minister of Justice, Mr. Sangki Park. At its 14th meeting held on 14 November 2017,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2. On 13 February 2017,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 (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Mongolia, Hungary and The Congo.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and paragraph 5 of the annex to Council resolution 16/21,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issued for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 (a) A national report submitted/written present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A/HRC/WG.6/28/KOR/1);
 - (b)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A/HRC/WG.6/28/KOR/2);
 - (c) A summary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A/HRC/WG.6/28/KOR/3).
4. A list of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by Brazil, Germany, Norway, Portugal, Slovenia,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as trans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roika. Thes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extranet of the UPR.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as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new Government place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one of the cornerstones of its state policy.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 advance further human rights policy through effective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6. The delegation reported that the national report was prepared based 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various ministries and state bodies. The Government also sought for the opinion of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n the draft national report. In this respect, a public hearing was organis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7. The delegation reported on a number of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commendations were reflected in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he Government voluntarily submitted a mid-term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which was prepared based on the consultation with various ministri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8. The delegation informed the Human Rights Council about the plans of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existing 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up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clud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hrough a consultation process. The Government has been tak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Human Rights Policy Advisory Panel, which include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so as to foste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in drafting process of the new action plan.

9. The delegation reported on the measures taken to strengt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cluding by amending the relevant law in 2016 in order to improve the selec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ers and ensure immunity of commissioners in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10. The Government extended a standing-invitation to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2008, and had received the country-visits of the special rapporteurs almost every year. The Government had invite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to hold its regular session in Seoul in 2017.
11. In 2017, the authorities had withdrawn the reservation to the Article 21(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ated to the issue of adoption of a child. The Government has been studying the possibilit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it had not acceded to.
12. Regarding the recommendations on conscientious objectors who refus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the delegation stated that it was important to consider this issue having in mind the security considerations in the region and public consensus on equity of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has been planning to take cautious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o hold wide discussion on this matter.

13. Regarding freedom of assembly, the Government took measures to ensure that every police officer, assigned to monitor demonstrations undergo human rights training. In 2017, a Committee on Police Reform was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mor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the work of police. For example, the Committee recommended ex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 and bus barricades by police in demonstrations. Regarding the case of Baek Nam-gi, whose death was caused as a result of the use of water cannon by the police during a demonstration, the delegation reported that four persons were prosecuted for the dea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14.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authorities had been working to improve the realis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spite existing financial and other difficulties. The Government had been building social safety system to eradicate poverty and to ensure that everyone enjoys basic standards of living. Some vulnerable groups, like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y and unemployed young adults were provided with benefits or essential services.
15. The Government had developed guidelines in order to change the status of non-regular employment to regular employment. The public sector has been taking a lead in this process. Some measures have been envisaged to prevent an overuse of non-regular employment, to improve treatment of non-regular employees, and to provide subcontracted employees with better employment conditions in the private sector.
16.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its policy on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including by expanding parental-leave entitlements,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elecommuting, and supporting employers who have adopted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gender pay gap caused by women's career interruption.
17. The delegation stated that while compulsor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had been free-of-charge, the Government has been reforming the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free of charge compulsory high school education by 2022. The Government placed an upper limit on the increase of college tuition fees, expanded the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and maintained low loan interest rates for students in order to ease financial burden of students.

18. The state housing policy had included measures to improve housing conditions of working familie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ublic housing and public housing benefit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to persons from vulnerable groups. The Government had also expanded the coverag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strengthened a community-based health care system to guarantee the access to health care for all.
19. The Government developed a plan on gender equality in 2015, which prohibited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aimed at advancing the rights of women. The Government adopted measures to ensure that women represented over 30 percent of the ministerial positions in the new cabinet.
20. In 2015 the Government developed a plan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child. It outlined main objectives of the state policy on children and include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A special law had been adopted to address and punish cases of child abuse. The Government had improved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 judicial processes by providing legal aid and expanding alternative services to juvenile incarcer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stablished a division for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 Child Rights Committee to strengthen independent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21. The Government had been developing its thir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with the aim to protect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without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approved the registration of a trade union of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had put forward state-led support

and care for the older persons.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to effectively protect older persons against abuse and to progressively increase basic pension benefits.

22.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increase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to make sure that programs supported under this assistance take into account human rights issues.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23.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95 delegations made statements.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dialogue are to be found in section II of the present report.
24. Germany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several positive steps to strengthen human rights. It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ful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25. Ghana laud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inforce freedom of expression,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t welcomed ongoing research on possible ratification of the OP-ICECR.
26. Greece no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NHRCK, to prohibit discrimination and to reinforce rights to work, social security, education and health.
27. Guatemala thanked the deleg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the national report and made recommendations.
28. Honduras urged to incorporate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the next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It noted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in employment.
29. India welcomed the 2016 amendme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It no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sure equal

- conditions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ment contract holders.
30. Indonesia commended the amendments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It also noted amendments made to Criminal Code to include human trafficking as an offence.
 31. Islamic Republic of Iran n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Division, responsible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CRC.
 32. Iraq noted the adoption of a law on combatt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nd the progress mad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itiative.
 33. Ireland noted that LGBTI persons continued to face discrimination and that the efforts of Parliament to pass legisla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had stalled.
 34. Argentina n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Division of the Children and the Youth rights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5. Italy noted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with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ogress made in prevent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36. Japan noted concerns about the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criticising government actions. It commend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event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37. Kazakhstan no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further promote gender equality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mbat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38. Kyrgyzstan noted the achievements attained in the follow up to the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39. Lao's People Democratic Republic noted progress made in promoting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right to health and educ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40. Libya welcomed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second universal period review.
41. Liechtenstein noted that despite moratorium on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persons remained sentenced to death.
42. Malaysia welcomed the advancement in the areas of labour, social security, health, education, women's rights, childre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minority. It commended the initiatives to promote the rights of older persons.
43. The Maldives wa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s effort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child rights and by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cheme and measures to protect older persons.
44. Mexico noted the progress in basic pension scheme, measure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legislative reforms for gender equality, and mainstreaming gender policy in public affairs.
45. Mongolia noted the Government's efforts in protecting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 of migrants, and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46. Montenegro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all settings.
47. Myanmar noted non-execution of capital punishment since 1997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s and public opinion when consider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48. Namibia commended the various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review and the submission of the voluntary mid-term report.
49. Nepal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launch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to consider declaring official moratorium on death penalty

with an aim of abolishing the practice.

50. The Netherlands welcomed measures to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to provide human rights training to police officers. I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not misus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restrict human rights defenders' rights.
51. Ecuador noted the human rights approach in development policies. It highligh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o reduce poverty.
52. Norway noted that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t remained concerned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despite improvements in the situation of single-parent families.
53. Panama praised efforts to ensure universal compulsory education. It highligh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poverty, promote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54. Peru acknowledg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review, including measures taken to combat discrimination and domestic violence.
55. The Philippines noted the establishment of Child Support Agency and measures to ensure equal treatment to migrant workers.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enact legislation to further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56. Portugal noted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57. Qatar noted the development of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It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vision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58. The Republic of Moldova noted the 2016 amendm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to ensure transparency in selection of Commissioners.
59. The Russian Federation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a unit on citizenship

and refugees at the Ministry of Justice, but noted with concern negative rhetoric in the media addressed to foreigners.

60. Rwanda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61. Saudi Arabia 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Division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ensure the independent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CRC.
62. Senegal congratulated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institution.
63. Serbia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continue with its efforts to expand the system for early detection of mental illness. It no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the rights of women and combat sexual violence.
64. Sierra Leone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cultural exchanges, and strengthen mechanisms to prevent and address reports of xenophobic discourse against migrants,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65. Singapore noted the Government's initiatives to attain gender equality and to provide support to older persons.
66. Slovenia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tak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measures to eliminat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including gender pay gap.
67. Spain welcomed measures taken to combat discrimination,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ct.
68. Sri Lanka not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corporate human rights in various policies. It recognised the activ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values globally.

69. The State of Palestine noted the efforts to address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nd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its efforts to ensure gender equality, especially in employment.
70. The Sudan noted the accession to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cceptance of individual complaints procedures under four human rights treaties, and issuance of a standing invitation to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71. Sweden acknowledged the continued work of the Government to fulfil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encouraged it to continue its efforts.
72. Switzerland noted with regret that no measures were taken to abolish death penalty since the second review. It expressed concern by the larg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detention.
73. Thailand praised the steps taken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and to promote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welcomed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to expand the scope of crimes of human trafficking.
74. Timor-Leste noted the measures taken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as a way to improve the right of women in employment.
75. Togo noted with satisfaction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and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the decisive step to fully abolish it.
76. Tunisia praised the steps under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review and to strengthen human rights in a comprehensive manner.
77. Turkey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promoting human rights.
78. Uganda urg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It noted the growing challenge of racism and xenophobia and human rights

abuses faced by migrant workers.

79.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ncouraged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further efforts so that legislation ensures peaceful assemblies and rights of LGBTI people.
80. United States of America remained concerned by legislation limiting freedom of expression, a larg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serving jail terms and a lack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xtending protection to LGBTI persons.
81. Uruguay noted measures on gender mainstreaming in public affairs.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redouble efforts to ensure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nd to ratify the ICRMW and the Second Protocol to ICCPR.
82. Uzbekistan not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he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of the Council and efforts to ratify ILO conventions.
83.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commended the Government's initiatives to combat poverty and to ensure social security network and pension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84. Viet Nam noted achievements in protecting rights of and combatting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nd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85. Yemen noted the revised law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guaranteeing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of its members, and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86. Zambia applaude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legal guarantees of lawyers of suspects in criminal process.
87. Afghanistan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its cooperation with the HRC Special Procedures and efforts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It encouraged the

- Republic of Korea to take further steps to ratify the ICPPED.
88. Albania praised the solid legal framework on anti-discrimination and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fundamental labour rights.
 89. Algeria welcomed the Government's measures to combat discrimination, integrate gender equality into policies and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t called it to extend the official assistance to development.
 90. Angola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its full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welcomed the forthcoming third plan.
 91. Israel acknowledged the progress made in the realis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efforts to mainstream human rights in the work of police and to combat domestic violence.
 92. Armenia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combatt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providing essential healthcare an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promoting education.
 93. Australia welcomed the Government's actions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and encouraged greater efforts to reduce inequality. It was conce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94. Azerbaijan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increase efforts to finalise its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It welcomed its measures to combat domestic violence.
 95. Bangladesh appreciated the progress made in ensuring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and minorities. However, it was concerned that undocumented migrants and foreign employees remained in vulnerable conditions.
 96. Belarus welcomed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human rights policy and legal amendments to criminalise trafficking in human beings.
 97. Benin note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with the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and welcomed its efforts towards the adoption of its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98. Bhutan commended the successful paradigm shift from women's development to gender equality, necessitating gender mainstreaming in its policies. It welcomed the five Special Rapporteurs visits to the country.
99. Botswana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rights of the child through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CRC. It welcomed its measures to improve care for older persons.
100. Brazil praised measures to eradicate poverty, introduce disability pension scheme, and expand public housing, and to promote gender equality.
101. Brunei Darussalam noted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building social safety net to eradicate poverty. It noted the Government's plans to exp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o high school.
102. Bulgaria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gender mainstreaming in policies and for its plan to expand compulsory education to high school. It highlighted that 70 perc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inclusive education.
103. Canada welcom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hance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expressed concern over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and urged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situation.
104. Chile urged the Government to incorporate recommendations from universal periodic review into its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It expressed concerns about cases of violence and hate speech against LGBTI persons.
105. China praised progress in promoting social inclusion, assisting vulnerable groups and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t was concerned about gender inequality,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and racist and hate speech against foreigners.

106. Colombia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Refugee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Division.
107. The Congo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persevere in its human rights efforts by strengthening legal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particularly children, women and migrants.
108. Costa Rica noted amendme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he Commis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Divisio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109. Cote d'Ivoire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measures taken to follow up two cycle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t noted, however, that some important conventions and optional protocols on human rights have yet to be ratified.
110. Croatia noted positive development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cluding draft bill on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its efforts. It remained concerned over discrimin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11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ed concer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suppression of political parties, arbitrary detention, abuse in the military,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and surveillance.
112. Denmark remained concerned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rsons, women and minorities, and about domestic violence, while noting commendable measures taken in those areas.
113. Nicaragua noted the inclusion of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the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sure equality,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nd

reduce suicides.

114. Egypt noted the positive development in the area of human rights and expressed confidence in the capacity of the Government to continue its efforts.
115. Ethiopia noted the positive impact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the country and the plan to increase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0.3 percent by 2030.
116. France welcomed the engag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117. Georgia noted the submission of the mid-term report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t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continue this practice, as well as to strengthen its policies to further promote the right of women and prevent domestic violence.
118. Haiti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2013 Refugee Act 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19.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its gratitude to eight delegations for submitting advance questions for the interactive dialogue and provided responses to them. It recall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incorporated the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e Human Rights Policy Council, chai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d been assigned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The Government supported the resolu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lated to national mechanisms on reporting and follow-up. The new Government would enact a new human rights basic act, introducing a comprehensive mechanism for the follow up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and for the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in this process.

120. The Republic of Korea had been a de facto abolitionist country, which had not executed capital punishment since 1997. The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however, would require the consideration of many factors, including the public opinion and specificities of the criminal system. The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ould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decided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121.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aimed to protect security and democratic order, had been limited and special measures had been put in place to avoid the abuse of the use of the 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discussing a bill to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Code.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ould be pursued to provide clearly defined criteria for restrictions on demonstr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assemblies that would not be subject to prior notification, and to establish an online notification system.
122. The delegation reported on existing guarantees for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for punishing sexual harassment. The Government revised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o effe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by introducing stricter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sation.
123. The delegation reiterated the measure taken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would be further revised. The Refugee Act remedied insufficiencies regarding refugee applications and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The Act ensured social benefits, access to the labour market, housing and medical support and education for asylum seekers. Several measures including education had been implemented to address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gainst foreigners. In 2017, the Government

- repealed mandatory HIV/AIDS testing of foreign English teachers in Korea.
124. The delegation reported on legal provisions criminalising marital rape and on measures taken to advance the enjoyment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in the Internet. The delegation reported on the steps taken to combat trafficking in migrant women, to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non-regular employment and to reduce poverty and increase minimum standard of living.
125. The Government reported on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and violence, including on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 abuse, the provision of support to child victims and legal provisions providing for severe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violence.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parent education have been organized to prevent child abuse. The Government has also taken special effort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to increase the punishment for perpetrators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Specialised police officers were assigned to deal with domestic violence cases in each police centres.
126. In response to the statement made on 12 women escaping fro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ose women defected to the Republic of Korea by their own free will. The Government provided them with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n the basis of humanitarianism, as it did with the other 30 thousands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country.
127. The Government considered th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was inconsistent with relevant national law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d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were protected agains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in order to identify necessary amendments

to the domestic legislation prior to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128. The delegation stated that rising from the ashes of the war, the Republic of Korea had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long with democratiza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owever, the path to democracy had not been easy and the country went through various reforms and challenges. Civil society had been a driving force in overcoming many challenges. The new Government set an objective to build a society that upholds fairness, justi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Government recognised the need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order to mee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ould be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y.
129. In conclusion, the delegation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reate a society where no one is left behin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nternationally. Guaranteeing universal human rights could not be achieved by one country alone and thus, solidarity and cooperation would be crucial. It would be important to mainta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s well as to garner the collective wisdom of not only the people who are deprived of their due rights, but also of civil society groups, experts and the private sector at the national level. Thus, the Government would continue working to further advance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³¹⁾**

130. The recommendations formul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listed below have been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enjoy the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6.1. Continue cooperation with the ILO on the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labour conventions (Uzbekistan);
- 6.2. Ratify the four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hib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pain);
- 6.3. Ratify and implement the remaining four ILO core conventions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Forced Labour; and Abolition of Forced Labour (Sweden);
- 6.4. Consider ratifying the four core ILO convention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organise trad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on the prohibition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Nicaragua);
- 6.5. Expedite the review of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to facilitate ratification of the four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ratified (Uganda);
- 6.6. Consider amending domestic legislation to pave the way for ROK's ratification of a number of other key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Philippines);
- 6.7. Continue supporting the work of OHCHR Seoul Office (Japan);
- 6.8. Continue contribution of its effort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edited.

- mechanism (Myanmar);
- 6.9. Continue its good work of contributing to the UN and its Human Rights mechanisms (Bhutan);
- 6.10. Adopt necessary legislation to ensure a fully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ir members and ensure that it has sufficient resources (Guatemala);
- 6.11. Continue the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ppointment of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in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Republic of Moldova);
- 6.12. Accelerate the progress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ndonesia);
- 6.13. Consider expedite adoption of a third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as extension of the second, which served 2012-2016 (Ethiopia);
- 6.14. Accelerate process for the adoption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in close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Georgia);
- 6.15. Continue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Saudi Arabia);
- 6.16. Strengthen measures to reform its legal framework to protect human rights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legal and social perception (Myanmar);
- 6.17. Take credible steps towards gender mainstreaming and reinforc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India);
- 6.18. Intensify measures aimed at addressing gender equality gaps i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Namibia);
- 6.19. Continue to develop measures to ensure non-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romote gender equality (Lao's People Democratic Republic);
- 6.20. Continue with undertaking actions whose objective is to reduce

- discriminatory behaviour against women (Serbia);
- 6.21. Continue to put in place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the revised framework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ingapore);
- 6.22. Stop the discriminatory approach that requires only foreign workers in various sectors to mandatorily undergo HIV/AIDS testing, which is not required for Korean nationals (India);
- 6.23. Take continuou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Nepal);
- 6.24. Take continuou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other marginalised groups (Zambia);
- 6.25. Increase the efforts of creating harmony in fighting unnecessary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s and foreigner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thiopia);
- 6.26. Develop a national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gypt);
- 6.27. Make further efforts to prevent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s pointed out by the relevant Treaty Bodies (Japan);
- 6.28. Continue measures to prevent, investigate and prosecute domestic violence offences and strengthen victim care (Maldives);
- 6.29. Continue efforts to eliminate domestic violence (Tunisia);
- 6.30.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gender-based violence and thoroughly investigate and prosecute incident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migrant populations (Sierra Leone);
- 6.31. Amend the legislation to ensure that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are punished, while the state improves the victim support system (Zambia);
- 6.32. Continue implementation of its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including through awareness raising (Sri Lanka);

- 6.33. Take further steps so as to enact a comprehensive and general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gender – based violence (Turkey);
- 6.34. Continue efforts to eliminate domestic violence through implementation of its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zerbaijan);
- 6.35. Consider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o eliminate gender violence, particularly domestic violence and marital rape (Chile);
- 6.36. Criminalize marital rape (Honduras);
- 6.37. Share its best practices and challenges in reaching out to the most vulnerable mine victims (Sri Lanka);
- 6.38. Step up its ongoing efforts in the field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Greece);
- 6.39. Adopt legal and practical safeguard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assembly (Brazil);
- 6.40.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ociation and safeguard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particular by promoting effective national policies to protect their initiatives (Italy);
- 6.41. Continue to make efforts to follow up on the previous UPR recommendation on peaceful protests (Japan);
- 6.42. Continue to redouble efforts to guarante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peaceful association, investigating complaints as to excessive use of force on the part of state security agents against social activists, human rights representatives as well as representatives of the trade union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6.43. Ensure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ccusations and complaints of violence, intimidation, harassment and surveillance of human rights defenders (Ecuador);
- 6.44. Develop and implement a specific national action plan to support the Government's efforts in tackling human trafficking and strengthening

- inter-agency coordination (United Kingdom);
- 6.45. Further take measures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 and sexual exploitation, by ensuring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Act and providing victims with necessary assistance and protection throughout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Thailand);
- 6.46. Increase efforts to criminalize human trafficking and take necessary measures for its prevention (Colombia);
- 6.47.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to identify victim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Russian Federation);
- 6.48. Continue efforts to revise and implement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 with a view of introducing measures to ensure that women, in particular single mothers, can have access without fear of discrimination to employment, equal pay and matrimonial rights, as a follow up to recommendations nos. 124.28, 124.29, 124.36 and 124. 47 (Haiti);
- 6.49. Improve the enforcement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Norway);
- 6.50. Make further efforts to increase access of young people and women to the labour market (Qatar);
- 6.51. Continue guaranteeing labour rights (Peru);
- 6.52. Continue efforts to close gaps that still exist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regular as opposed to regular workers (Israel);
- 6.53. Intensify efforts to eradicate differences between employees with permanent contracts and those who do not have permanent employment (Belarus);
- 6.54. Continue with its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services 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erbia);
- 6.55. Continue to review and refine the relevant legislations, policies and

- programmes to accord the elderly with more protection, services and opportunities to allow them to age with dignity and continue contributing to society where they can (Singapore);
- 6.56.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elderly persons (Viet Nam);
- 6.57. Take necessary measures to combat poverty amongst the elderly (Algeria);
- 6.58. In response to the growing needs of older persons, consider developing a master plan that would bring under its wing the various initiative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srael);
- 6.59. Strengthen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step up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China);
- 6.60. Continue with its ongoing impressive efforts to ensure that the bottom 70% of the elderly aged over 65 are provided with basic income, as set out by its basic pension scheme (Brunei Darussalam);
- 6.61. Continue setting good practices like pension schem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Bhutan);
- 6.62. Review the benefits of the basic pension scheme for older persons with the view of ensuring that older persons have enough to cover their living cost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ir representatives (Haiti);
- 6.63. Implement measures to facilitate access to health care and education particularly for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Angola);
- 6.64. Follow through the Government's plans to expand compulsory education to high school (Brunei Darussalam);
- 6.65. Promote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rmenia);
- 6.66. Make greater efforts to implement n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improv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tate of Palestine);
- 6.67. Undertake further steps to encourage a higher proportion of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business (Bulgaria);

- 6.68. Redouble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positions and reduce the wage inequality gap between men and women (Colombia);
- 6.69. Intensify its efforts to eliminate gender wage gap and promote women representation in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Sudan);
- 6.70. Continue efforts to promot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by encouraging a balanced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positions,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and in entrepreneurship, including equal pay, among other aspects (Nicaragua);
- 6.71. Take effective measures to raise women's status,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hina);
- 6.72. Ensure that foreign women who becom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exual abuse,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other forms of violence be guaranteed access to justice (Russian Federation);
- 6.73. Pursue efforts to strengthen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integrate educ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to the school curriculum (Qatar);
- 6.74. Take legal measures to provide appropriate facilities and support for children, particular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Timor-Leste);
- 6.75. Prohibit by law and in practice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all settings, including in orphanages and child welfare centers (Ecuador);
- 6.76.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to combat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particular sexual violence (Algeria);
- 6.77. Pursue efforts to improve chan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access to health care (Libya);
- 6.78. Continue its efforts to extend welfare services and assistanc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Bulgaria);

- 6.79.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interned in psychiatric hospitals, against acts of violence, abuse and ill-treat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Ecuador);
- 6.80. Abolish forced treatment and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sychiatric hospitals from violence, abuse and ill-treatment (Timor-Leste);
- 6.81. Continue strengthening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the view to avoid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nd raising awareness on the existence of cultural diversity (Indonesia);
- 6.82.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nd address the issue of the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China);
- 6.83.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France);
- 6.84. Enhanc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ensure fairer and safer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stricter labour law enforcement and punishment for employers who violate the law (Thailand);
- 6.85. Continue efforts on encourag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residents and migrants (Lao's People Democratic Republic).

131. The recommendations formul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listed below have been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been noted by the Republic of Korea:

- 7.1.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ierra Leone) (Guatemala) (Honduras) (Kyrgyzstan);
- 7.2. Ratify the UNESCO Convention on combating discrimin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Congo);
- 7.3. Immediately release the 12 women citizen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were abducted during the former regime and Mrs. Kym Ryon Hui who has been appealing for her return to her family and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abduction to justi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2.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provide responses in due time, but no later than the thirty-seven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18:

- 8.1.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raq);
- 8.2.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unisia);
- 8.3.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Uruguay) (Costa Rica) (Switzerland) (Montenegro) (Kazakhstan) (Sierra Leone);
- 8.4.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osta Rica) (Angola) (Sweden) (Germany);
- 8.5. Consider ratifying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ongolia);
- 8.6. Accelerate the process of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go);
- 8.7.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enin);
- 8.8.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order to establish a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Chile);
- 8.9. Speed up ongoing processes leading up to the ratification of the OP-CAT (Ghana);

- 8.10. Consider acceding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unisia);
- 8.11.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Kazakhstan) (Turkey) (Denmark) (Guatemala) (Portugal) (Uruguay);
- 8.12.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go) (Guatemala) (Ghana);
- 8.13.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donesia) (Senegal) (Philippines);
- 8.14. Consider acce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Peru) (Sudan);
- 8.15. Continue studying the issue of the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Belarus);
- 8.16.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menia);
- 8.17. Ratify the Kampala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n the crime of aggression (Liechtenstein);
- 8.18. Sig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Guatemala);
- 8.19. Adopt the reforms and legislative measures indicated to be able to ratify the remaining conventions and protocols (Côte d'Ivoire);
- 8.20. Consider withdrawing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ICCPR (Albania);
- 8.21. Carry out a constructive and a cooperative engagement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persons with psychological disabilities (Islamic Republic of Iran);
- 8.22. Adopt an open, merit based selection process when selecting national

- candidates for UN Treaty Body Elections (United Kingdom);
- 8.23.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conduct visits and investigations to places of detention so as to effectively function as a national torture preventive mechanism and consequently to consider acceding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Republic of Moldova);
- 8.24. Facilitat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parties (Iraq);
- 8.25. Abolish the anti-human rights “National Security Law” and other laws which ar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well as the provocativ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8.26. Approve general legislation to combat discrimination, which expressly covers all spheres of life and prohibit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particular on grounds of rac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onduras);
- 8.27. Adopt without delay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race,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lovenia);
- 8.28. Formu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ose based on race, gender, nationality, etc. (Bangladesh);
- 8.29.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addresses all grounds of discrimination (Spain);
- 8.30. Endeavour to introduce a law, prohibit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nd combat xenophobic discourse and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gypt);
- 8.31. Continue the process necessary for the adoption of the comprehensive

- anti-discrimination law (Georgia);
- 8.32. Adopt complete legislation against discrimination dealing with all parts of life explicitly and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notably based on rac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lbania);
- 8.33. Approve general legislation to combat discrimination, which expressly covers all spheres of life, and defines and prohibit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taking measures against all expressions and manifestations of prejudices such as hate speech, racism and xenophobia (Nicaragua);
- 8.34.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explicitly addresses all spheres of life and prohibit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s (Turkey);
- 8.35. Continue to apply its strategies and plans, work towards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include penalties appropriate for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State of Palestine);
- 8.36. Adopt general legislation to comba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particularly on the grounds of race,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nd strengthen the mechanisms to eliminate xenophobic speech against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Colombia);
- 8.37.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s, especially on the basis of race, gender and HIV/AIDS status (Botswana);
- 8.38.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cluding protection for LGBTI persons (Australia);
- 8.39.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LGBTI individual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Norway);
- 8.40.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religion, belief, and race (Denmark 2);
- 8.41. Enact general laws to combat discrimination, particularly against migrants

- and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Mexico);
- 8.42.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will protect the rights of all migrants (Uganda);
- 8.43. Continue and step up its government's laudable efforts towards implement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in order to fight all kinds of intolerance and inequality, especially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razil);
- 8.44. Adopt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include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LGBTI persons, repeal the provision of the Military Penal Code, which prohibits and punishes same-sex consensual sexual relations in the army,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need to respect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of every individual (France);
- 8.45. Establish a timeline to presen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end restrictions on consensual same sex relations (Ireland);
- 8.46. Continue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fight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Senegal);
- 8.47. Strengthen measures to combat and preven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Rwanda);
- 8.48. Declare racial discrimination as a criminal offense (Namibia);
- 8.49. Continue to strengthen mechanisms to prevent and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xenophobic speech against foreigners,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8.50.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nd counter racist and xenophobic discourse against non-citizens (Kazakhstan);
- 8.51. Strengthen mechanisms for preventing and eliminating xenophobic

- discourse in all spheres of life (Turkey);
- 8.52. Pursue effort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through education and information awareness campaigns in the context of the Law on Foreigners (Libya);
- 8.53. End the practice of publishing in the media and on the Internet materials inciting racial and ethnic intolerance (Russian Federation);
- 8.54. Take additional concrete measures to combat xenophobia,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Kyrgyzstan);
- 8.55. Implement policies and measures which comprehensively address hate speech throug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Sierra Leone);
- 8.56. Amend the relevant laws in order to identify racial discrimination as a criminal offence (Kyrgyzstan);
- 8.57. Follow up on the recommendation made in 2012, strengthening its legislation, investigating and punishing effectively the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expressed through hate speeches and acts of violence (Argentina);
- 8.58. Take further action to end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in all fields, including in the military (United Kingdom);
- 8.59. Step up efforts to e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 identity, including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Israel);
- 8.60. Include a specific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Law (Sweden);
- 8.61. Continue to work to eliminate all forms of stigmatization or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Chile);
- 8.62.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against LGBTI persons, by adopting a comprehensive law and running national awareness campaigns (Italy);

- 8.63. Strengthen legal framework to protect people belonging to the LGBTI community, avoiding practices, known as conversion therapies in state premises (Uruguay);
- 8.64.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provide protections for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LGBTI persons (United States of America);
- 8.65. Protect the rights of LGBTI persons through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abolish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Canada);
- 8.66.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Code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exual relations between people of the same sex in the army (Costa Rica);
- 8.67. Abolish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views consensual same-sex intimacy in the armed forces as a criminal offense, in order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Netherlands);
- 8.68.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rohibiting and punishing consensual sexual activity between people of the same sex in the military (Denmark);
- 8.69. Adopt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ensur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communities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Yemen);
- 8.70. Abolish the death penalty (Honduras);
- 8.71. Move on to de jur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orway);
- 8.72. Consider taking steps with a view to abolishing death penalty (Italy);
- 8.73. Consider the legal abolition of death penalty (Timor-Leste);
- 8.74. Consider possibilities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law

- (Uzbekistan);
- 8.75.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leg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well as to the commutation of all death sentences to terms of imprisonment (Liechtenstein);
- 8.76. Take measures to introduce a formal moratorium on execu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Rwanda);
- 8.77. Fully abolish the death penalty, which has been under a de facto moratorium for 20 years (Canada);
- 8.78.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commute existing death penalties sentences to prison sentences (Colombia);
- 8.79.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commute to prison terms the death sentences already pronounced (Panama);
- 8.80. Commute without delay all death sentences to terms of imprisonment and work towards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lovenia);
- 8.81. Commute all death sentences and take concrete measur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Switzerland);
- 8.82. Make progress i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rough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cognizing the existing moratorium (Mexico);
- 8.83. Fully abolish death penalty in the law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ortugal);
- 8.84.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ustralia);
- 8.85.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aise awareness on the fact that the death penalty is not a useful instrument to fight crime (France);

- 8.86. Approve a legislative initiative that proscribes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pain);
- 8.87. Commute all remaining death sentences into life imprisonment and consider ratifying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Montenegro);
- 8.88. Legally abolish the death sentence and ratify the relevant protocol (Namibia);
- 8.89. Issue an Executive Order to make the moratorium on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official, and that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e ratified as early as possible (Ireland);
- 8.90.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and pro-reunification figures who have been unjustly detained by arbitrary applic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8.91. Revise the legislation to ensure acts of torture are criminalised and punishable by penalties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crime (Zambia);
- 8.92. Undertake legislative measures to criminalize marital rape (Panama);
- 8.93. Take measures to end the practice of impunity for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by GIs stationed in the countr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8.94. Decriminalize conscientious objectors, introduce a genuinely civili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and release those imprisoned for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Germany);
- 8.95.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Canada);
- 8.96. Introduce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to protect conscientious objectors (United States of America);
- 8.97. Introduce an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genuine civilian character,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military service (Australia);
- 8.98. Provid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in the public interest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Croatia);
- 8.99. Adopt legislation to ensure that alternative services offered to conscientious objectors are of a civilian nature, placed under civilian authorities' control, and devoid of any punitive dimension; examine the situation of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imprisoned for refusing to submit to compulsory military training, with a view to offering them a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France);
- 8.100. Set up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exico);
- 8.101.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under civilian control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Switzerland);
- 8.102. Make further progress in changing the regime which criminalize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relation to obligatory military service (Argentina);
- 8.103. Introduce alternatives to th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bolish prison sentences and release all persons who have been

- incarcerated for having refused the military service in the absence of a civilian alternative (Panama);
- 8.104. Ensure the leg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Portugal);
- 8.105. Release individuals imprisoned or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o consider expunging the corresponding charges from their criminal records (Croatia);
- 8.106. Consider releasing those people imprisoned or detained because of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consider removing the corresponding charges from their criminal record (Costa Rica);
- 8.107. Guarantee that defamation is punishable only through civil law and that the compensation awarded is proportionate to the damage caused (Guatemala);
- 8.108. Replace criminal defamation and libel laws with civil ones, and reform national security laws to provide greater protections for free expression (United States of America);
- 8.109.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its Article 7, to ensure that it is not used arbitrarily or to harass and restri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pinion and association, and release all individuals unjustly charged and sentenced to prison terms solely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Germany);
- 8.110. Review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Iraq);
- 8.111. Review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ensure that it fully respects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freedom of speech, association and peaceful manifestation (Portugal);
- 8.112. Develop a national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mechanism for the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 trafficking and to ensure their rights are protected (Belarus);
- 8.113. Establish a gender quota system to increase women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Costa Rica);
- 8.114. Respect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hich includ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s (India);
- 8.115. Remove all penalties for women who seek abortion, and for doctor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involved in providing these services (Netherlands);
- 8.116. Investigate into cases of forced sterilis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Russian Federation);
- 8.117. Urgently eliminate the practice of forced sterilis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Albania);
- 8.118. Establish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at includes children of the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slamic Republic of Iran);
- 8.119. Establish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immediately after birth,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ir parents (Kyrgyzstan);
- 8.120. Adopt a universal system for birth registration, which includes children of refugees, asylum-seekers and stateless persons (Peru);
- 8.121. Further improve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as to ensur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to all children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parents (Turkey);
- 8.122. Consider establishing a system which guarantees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 parents' nationality and status,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Kazakhstan);
- 8.123. Establish a comprehensive national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nationals to ensure the births of their children are registered (Sierra Leone);

- 8.124. Establish a nation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register all births in Korea irrespective of the nationality of parents (Botswana);
 - 8.125. Ratify ICRMW to guarantee their protection agains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Egypt);
 - 8.126. Ensure that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in particular children have access to sufficient means of subsistence, to housing, to healthcare and to education (Congo);
 - 8.127. Adopt further measures to promote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workers, especially women migrant workers and to improve their integration in the Korean society (Viet Nam);
 - 8.128. Amend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Act to ensure that an application for a visa extension or a renewal is not restricted or refused to migrant workers who have changed jobs (Bangladesh);
 - 8.129. Mak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their children, enjoy an adequate livelihood, housing, health care and education (Islamic Republic of Iran);
 - 8.130. Completely stop 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enrolled in schools and their detention after deportation orders (Bangladesh).
- 133. All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submitting State(s) and/or the State under review.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endorsed by the Working Group as a whole.**

Annex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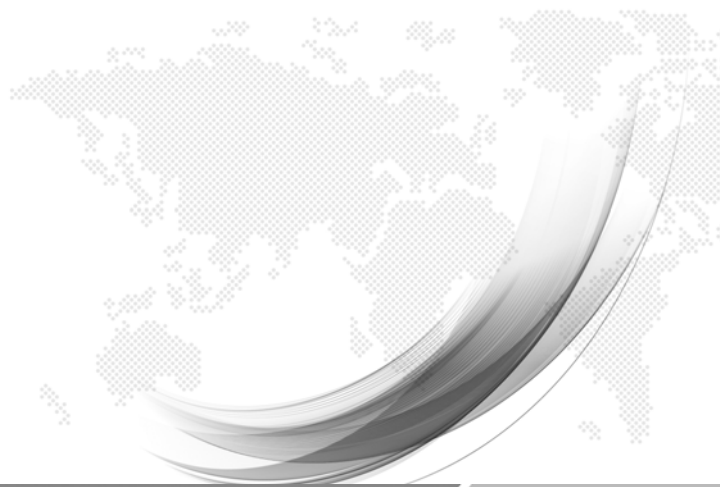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r. Sangki Park and composed of the following members:

- Alternate Head of Delegation, Ambassador Kyong-lim Choi,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Ambassador In-chul Kim,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Heeseok Whang, Director General, Human Rights Bureau, Ministry of Justice;
- Mr. Heejun An, Director, Human Rights Support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yooyoung Song, Planning and Coordination Prosecutor, Ministry of Justice;
- Ms. Yoojin Oh,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Yuwan Kim, Public Service Advocate,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Hye Jung Lee, Researche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Ah young Kim, Second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r. Hoyoul Choi, Deputy Director, Regulatory Reform and Leg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 Ms. Kiyeon Park,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 Mr. Jae Ha Lee, Army Lieutenant Colonel(Judge advocate), Legal Affair Management Bureau,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 Ms. Jungwon Lee,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de

Divis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s. Jinok Kim, Deputy Director, Divis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s. Eunyoung Kim, Deputy Director, Divis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s. Eun Jeung,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s. Ji Eun Kim,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 Mr. Haewoong Lee,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r. Dae Hyeong Lee, Director and Senior Superintendent,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Mr. Seong Beom Wi, Inspector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Ms. Jihye Han, Deputy Director Internet Ethics Divi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Mr. Sanghyun Kim, Public Prosecutor, Ministry of Justice;
- Mr. Sanguk Yoon, Counse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 Mr. Chang on Lee, Counse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 Ms. Wunjeung Chang,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 Mr. Sungiun Oh,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 Ms. Joo Hyun Woo, Interpreter;
- Ms. Won Hee Kim, Interpreter.

9. 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한글)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검토 실무그룹
제28차 회기
제네바, 2017년 11월 6-17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

대한민국

서론

1.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그룹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제28차 회기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 11월 9일 제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2017년 11월 14일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17년 2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몽골, 헝가리, 콩고민주공화국을 간사국(Troika)으로 선정하였다.
3.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른 부속서 15번째 문단 및 결의 16/21에 따른 부속서 5번째 문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문서들이 발부되었다.
 - (a) 15번째 단락 (a)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 (A/HRC/WG.6/28/KOR/1);
 - (b) 15번째 단락 (b)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유엔 권고사항 요약보고 (A/HRC/WG.6/28/KOR/2);
 - (c) 15번째 단락 (c)항에 따라 준비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 (A/HRC/WG.6/28/KOR/3).
4. 브라질,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 간사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제출한 사전 질의서는 UPR 엑스트라넷(extranet)에 게재되어 있다.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A. 수검국 발표

5.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UPR이 국제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했다고 진술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새 정부는 인권 보호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시민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인권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6. 대표단은 국가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 및 조율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또한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공청

회를 개최하였다.

7. 대표단은 제2차 UPR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받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차 UPR에서 받은 권고사항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권고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8. 대표단은 UPR 심의를 비롯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받은 권고의 국내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 즉 국가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NMRF)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협의를 통해 수립 중에 있다. 정부는 NAP 수립 절차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9.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10. 정부는 2008년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들에 대한 상시초청을 허용하였고, 이후 거의 매년 특별보고관의 국가방문을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정례회기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다.
11.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아동 입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정부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2.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역내 안보상황 및 병역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3. 집회의 자유에 관해 정부는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장했다. 2017년 경찰 업무에 있어 인권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차 및 차벽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단은 조사 후 책임자 4명을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14. 대표단은 정부가 재정부족 및 기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빈곤을 퇴치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당 또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이 같은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 하청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16.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확대, 재택근무 환경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주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17. 대표단은 현재 초·중학교까지 적용되는 무상 의무교육을 2022년까지 고등학교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등록금 인상을 상한제, 국가장학금 확대,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다.
18.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하였다.
19. 정부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첫 내각 여성장관 비율 30% 목표를 달성하였다.
20. 2015년 정부는 아동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사건 및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사법절차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 및 구금에 대한 대안절차를 확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과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21. 정부는 외국인의 차별 없는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노인을 위한 국가 주도적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점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관련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

다.

22. 대표단은 정부가 국제개발원조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B. 상호 대화 및 수검국 답변

23. 총 95개 대표단이 상호 대화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호 대화에서 나온 권고사항은 이 보고서의 섹션2에 수록되어 있다.
24. 독일은 대한민국이 인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몇몇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독일은 사형제 완전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가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칭찬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환영하였다.
26. 그리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차별 금지, 직업을 가질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27. 과테말라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에 감사를 표했고 이에 대하여 권고했다.
28. 온두라스는 이번 UPR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온두라스는 고용 부문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였다.
29. 인도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환영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30. 인도네시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칭찬하였고, 「형법」 개정안의 인신매매죄 신설 조항에 주목하였다.
31. 이란은 아동권 보호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 감독 업무를 맡은 아동청소년인권팀 설립에 주목하였다.
32. 이라크는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를 금지하는 법의 채택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33. 아일랜드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 차별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답보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4. 아르헨티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 것에 주목하였다.
35. 이탈리아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사회 참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 성과에 주목하였다.

36. 일본은 정부 활동을 비판하는 사람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점에 우려하였고, 정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을 칭찬하였다.
37. 카자흐스탄은 성평등 및 장애인 권리 증진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노력에 주목하였다.
38. 키르기즈스탄은 제2차 UPR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이룬 성과에 주목하였다.
39. 라오스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건강권과 교육권,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40. 리비아는 제2차 UPR 권고 이행성과를 환영하였다.
41. 리히텐슈타인은 대한민국이 1997년 이후 사형제에 대해 실질적 모라토리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42. 말레이시아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교육, 여성의 권리, 아동, 소수자 권리 보호 부문의 성과를 환영하였고, 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칭찬하였다.
43. 몰디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 증진·보호 노력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노인 보호 대책에 의하여 고무되었다.
44. 멕시코는 기초연금제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방안 도입, 성평등을 위한 법 개정, 공공부문에서의 성 주류화 정책 등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45. 몽골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및 이주민의 권리 보호, 성평등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46. 몬테네그로는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체벌을 금지할 것을 장려했다.
47. 미얀마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고, 사형제 폐지에 있어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8. 나미비아는 이전 UPR 권고에 대한 이행조치와 자발적인 중간보고서 제출을 칭찬하였다.
49. 네팔은 대한민국 정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도입과,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공식적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려할 것을 장려했다.
50. 네덜란드는 집회의 자유 보장 및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조치를 환영하였으며,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51. 에콰도르는 개발 정책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한 것에 주목하였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52.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것에 주목하였으나, 한 부모 가정의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는 점에 우려하였다.
53. 파나마는 보편적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고, 빈곤 감소와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54. 페루는 차별 및 가정폭력 금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해 이전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55. 필리핀은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설립과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장려했다.
56. 포르투갈은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57. 카타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주목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공을 칭찬하였다.
58. 몰도바공화국은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주목하였다.
59. 러시아는 법무부에 국적과 난민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였으나, 대중매체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점에 우려하였다.
60. 르완다는 대한민국에게 「양성평등기본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했다.
61.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 것을 칭찬하였다.
62. 세네갈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을 축하하였다.
63. 세르비아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했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64. 시에라리온은 사회통합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발언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장려했다.

65. 싱가포르의 성평등 달성 및 노인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66. 슬로베니아는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장려하였다.
67. 스페인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정부의 차별 금지 노력을 환영하였다.
68. 스리랑카는 다양한 정책에 인권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69. 팔레스타인은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에 노력에 주목하면서, 특히 고용 부문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70. 수단은 대한민국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4개 인권협약에 근거한 개인진정 절차의 수용, 특별절차 상시초청 허용 등에 주목하였다.
71. 스웨덴은 인권의무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72. 스위스는 제2차 UPR 이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73. 태국은 노인 보호 개선과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증진에 관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칭찬하였고, 인신매매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환영하였다.
74. 동티모르는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주목하였다.
75. 토고는 대한민국이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으며,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하여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였다.
76. 튀니지는 이전 UPR 권고의 이행 및 인권의 종합적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칭찬하였다.
77. 터키는 대한민국이 인권 증진에 관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것을 칭찬하였다.
78. 우간다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79. 영국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진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법제가 평화적

집회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하였다.

80.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과,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과, 보호의 범위를 성소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81. 우루과이는 공공부문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성평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할 것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장려하였다.
82. 우즈베키스탄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들과의 협력, ILO 협약 비준 노력에 주목하였다.
83. 베네수엘라는 빈곤 퇴치, 사회안전망 및 장애인 연금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84. 베트남은 이주노동자 및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성과에 주목하였다.
85. 예멘은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주목하였다.
86. 잠비아는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칭찬했다.
87. 아프가니스탄은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협력하고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을 칭찬했으며,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88. 알바니아는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기틀을 공고히 한 것을 칭찬하였고,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장려하였다.
89. 알제리는 차별 철폐, 성평등 원칙의 정책적 반영,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확대를 촉구하였다.
90. 앙골라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완전한 이행을 칭찬하였고 향후 수립되는 제3차 NAP를 환영하였다.
91. 이스라엘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정부가 이룬 성과와, 경찰 업무에서의 인권 주류화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92. 아르메니아는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 근절, 필수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제공, 교육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다.

93. 호주는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고, 불평등 감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장려했다. 호주는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94. 아제르바이젠은 제3차 NAP의 수립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했으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95. 방글라데시는 여성, 아동, 소수민의 권리 보장에 있어 정부가 이론 진전에 감사를 표하였으나, 취약한 환경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96. 벨라루스는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과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환영하였다.
97. 베냉은 정부가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들에 대하여 협력한 것에 주목하였고, 제3차 NAP에 대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98. 부탄은 여성의 개발에서 성평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 주류화 정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칭찬하였으며, 5개 특별절차 보고관의 국가 방문을 환영하였다.
99. 보츠와나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여부 감독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으며,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선 조치를 환영하였다.
100. 브라질은 빈곤 종식, 장애연금제도 도입, 공공주택 확충,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칭찬하였다.
101. 브루나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빈곤 종식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에 주목하였다.
102. 불가리아는 성 주류화 정책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칭찬하였다. 장애아동의 70퍼센트가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03. 캐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으나,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104. 칠레는 UPR 권고를 제3차 NAP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및 혐오 발언에 대한 보고에 우려하였다.
105. 중국은 사회통합 증진, 취약계층 지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성과를 칭찬하였으나, 성차별, 이주노동자 착취,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및 혐오 발언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106. 콜롬비아는 「난민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 아동청소년인권팀 설립을 환영하였다.
107. 콩고는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하였다.
108. 코스타리카는 인권위의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주목하였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설치한 것에 주목하였다.
109. 코트디부아르는 두 차례에 걸친 UPR의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이행한 조치들을 칭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10. 크로아티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긍정적 성과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는 점에 우려하였다.
1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당에 대한 억압, 자의적 구금, 군대 내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사찰 등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였다.
112. 덴마크는 성소수자,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관해 정부가 취한 긍정적 조치들에 주목하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113. 니카라과는 UPR 권고를 NAP에 반영한 것과, 평등 보장, 인종차별 철폐, 자살률 감소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114. 이집트는 인권 영역에서의 긍정적 성과에 주목하였고,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부의 역량에 확신을 표명하였다.
115. 에티오피아는 공적개발원조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고, 203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중을 0.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에 주목하였다.
116. 프랑스는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117. 그루지야는 UPR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의 제출에 주목하였으며, 정부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 가정폭력 예방 정책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다.
118. 아이티는 2013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선 노력을 환영하였다.
119.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상호 대화를 위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해 준 8개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고 그에 답변하였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 메커니

증을 통해 도출된 권고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였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NAP의 이행여부의 감독을 맡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UPR 심의결과와 국내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인 국가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NMRF)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하여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는 NAP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후속조치와, 이 과정에 수반되는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위한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20.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사형 폐지는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의 세부사항을 포함해 많은 요소들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사형제 폐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21.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법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들이 도입된 바 있다.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추진 중인 「집회시위법」 개정안에는 집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22. 정부 대표단은 고용에서의 성평등 보장과 성희롱 처벌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조치를 설명하였다. 정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강제입원 절차 및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도입하였다.
123. 정부 대표단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조치들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 및 난민 인정 절차에 관한 결점을 보완하였다. 「난민법」을 통해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노동시장 접근, 주거 및 의료 지원, 교육이 보장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이행하였다. 2017년 정부는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HIV/AIDS 검사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였다.
124. 정부 대표단은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화 하는 규정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증진하는 조치에 관해 설명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이주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도입한 조치에 관해 설

명하였다.

125.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관련 조항 등의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자 처벌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126. 정부 대표단은 탈북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약 3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해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27.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내 관련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ILO 핵심협약 등의 비준에 앞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128.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인권증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성취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많은 개혁과 도전을 겪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이런 많은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새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세웠고, 국제인권의무 준수를 위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UPR 권고사항을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129. 마지막으로, 정부 대표단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보편적 인권은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시민사회와의 효과적 소통 및 교류를 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권침해의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 부문의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내외에서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II. 결론 및 권고

130.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혔다.

6.1.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우즈베키스탄);

6.2.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 (스페인);

6.3.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ILO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스웨덴);

6.4.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ILO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니카라과);

6.5.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과 행정절차의 검토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 (우간다);

6.6. 다른 주요 지역인권규범 및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법 개정을 고려할 것 (필리핀);

6.7. OHCHR 서울 사무소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 (일본);

6.8. 인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메커니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 (미얀마);

6.9. 유엔 및 인권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를 계속하여 만들어갈 것 (부탄);

6.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권위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과테말라);

- 6.11. 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인권위원장의 선출에 있어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몰도바공화국);
- 6.12.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추진을 가속화할 것 (인도네시아);
- 6.13.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제3차 NAP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것 (에티오피아);
- 6.14.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3차 NAP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할 것 (그루지야);
- 6.15. 인권 증진·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 (사우디 아라비아);
- 6.16. 정치적, 사법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 체계를 개혁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미얀마);
- 6.17. 성 주류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할 것 (인도);
- 6.18.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나미비아);
- 6.19. 여성차별 금지 보장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라오스);
- 6.20.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 (세르비아);
- 6.21.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체제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지속할 것 (싱가포르);
- 6.22.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HIV/AIDS 검사 의무화

조항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 (인도);

6.23. 여성, 아동, 소외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네팔);

6.24. 여성 및 기타 소외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잠비아);

6.25.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화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에티오피아);

6.26.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이집트);

6.27. 관련 협약기구들이 지적한 바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을 증대할 것 (일본);

6.28. 가정폭력 예방, 수사, 처벌을 위한 조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여 이행할 것 (몰디브);

6.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튀니지);

6.30. 젠더기반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도입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에라리온);

6.31.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보장하는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잠비아);

6.32. 국민 인식제고 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스리랑카);

6.33. 젠더기반 폭력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터키);

6.34. 「양성평등기본법」의 이행을 통하여 가정폭력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35. 젠더 폭력, 특히 가정폭력과 부부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도입을 고려할 것 (칠레);

6.36.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할 것 (온두라스);

6.37.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모범 사례 및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공유할 것 (스리랑카);

6.38.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배가할 것 (그리스);

6.39.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 (브라질);

6.40.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인권옹호자의 이니셔티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국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호할 것 (이탈리아);

6.41. 평화적 시위에 관한 이전 UPR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6.42.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사회활동가, 인권대표자, 노동조합 대표들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베네수엘라);

6.43.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협박, 괴롭힘,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발 및 진정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 (에콰도르);

- 6.44. 인신매매 근절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영국);
- 6.45.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형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확대할 것 (태국);
- 6.46.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콜롬비아);
- 6.47.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러시아);
- 6.48. 권고 124.28, 124.29, 124.36, 124.47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부모 가구 지원법을 개정 및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여성, 특히 미혼모들이 고용, 임금, 혼인 등에서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아이티);
- 6.4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행을 강화할 것 (노르웨이);
- 6.50. 청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노력을 제고할 것 (카타르);
- 6.51.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페루);
- 6.52.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스라엘);
- 6.5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 6.54.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노력을 지속할 것 (세르비아);
- 6.55.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늙을 수 있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 정책, 사업을 검토 및 개선할 것 (싱가포르);

6.56. 노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6.57. 노인 빈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알제리);

6.58. 노인들의 증가하는 필요에 대응하여,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것 (이스라엘);

6.59. 사회보장체계와 노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 (중국);

6.60.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해주는 훌륭한 노력을 지속할 것 (브루나이);

6.6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금 제도와 같은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부탄);

6.62.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를 책정할 때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아이티);

6.63.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 (앙골라);

6.64.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브루나이);

6.65.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제고를 추진할 것 (아르메니아);

6.66.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 (팔레스타인);

6.67.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 (불가리아);

- 6.68.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 (콜롬비아);
- 6.69.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수단);
- 6.70. 의사결정직에서 성비균형을 이루도록 장려하고, 노동시장 및 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통해 평등을 보장하는 등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니카라과);
- 6.71.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중국);
- 6.72.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외국인 여성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러시아);
- 6.73. 아동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정에 아동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 (카타르);
- 6.74. 아동,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이 제공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동티모르);
- 6.75.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체벌을 법적, 실질적으로 금지할 것 (에콰도르);
- 6.76. 특히 성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제도적, 법적 체계를 강화할 것 (알제리);
- 6.77.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리비아);
- 6.78.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불가리아);

6.79.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된 장애인들을 폭력, 학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것 (에콰도르);

6.80. 강제치료를 금지하고, 폭력, 학대, 부당한 처우로부터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보호할 것 (동티모르);

6.81.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금지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과 규정을 강화할 것 (인도네시아);

6.82. 이주노동자를 위한 효과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처할 것 (중국);

6.83.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6.84.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며, 노동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처벌할 것 (태국);

6.85. 대한민국 국민과 이주민 사이에 문화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라오스);

131.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의사를 밝혔다.

7.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시에라 리온, 과테말라, 온두라스, 키르기즈스탄);

7.2.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할 것 (콩고);

7.3. 전 정권 당시 납치된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복송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김련희를 즉각 석방하고, 납치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2.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 기술되어 있는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2018년 3월

인권이사회 37회 총회 전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 8.1.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할 것 (이라크);
- 8.2.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튀니지);
- 8.3.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할 것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스위스, 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시에라리온);
- 8.4.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코스타리카, 앙골라, 스웨덴, 독일);
- 8.5.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 (몽골);
- 8.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가속화할 것 (토고);
- 8.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베냉);
- 8.8. 국가 차원의 고문 방지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칠레);
- 8.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 (가나);
- 8.10.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 (튀니지);
- 8.1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카자흐스탄, 터키, 덴마크, 과테말라, 포르투갈, 우루과이);
- 8.1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토고, 과테말라, 가나);
- 8.1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인도네시아, 세네갈, 필리핀);

- 8.14.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페루, 수단);
- 8.15.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벨라루스);
- 8.16.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아르메니아);
- 8.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할 것 (리히텐슈타인);
- 8.18.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 (과테말라);
- 8.19.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 및 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개혁 및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코트디부아르);
- 8.20.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 (알바니아);
- 8.21. 특히 정신장애인에 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이란);
- 8.22. 유엔 협약기구 선거를 위한 국가 후보자 인선 절차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할 것 (영국);
- 8.23.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고문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 (몰도바);
- 8.24. 새로운 정당의 창당절차를 간소화할 것 (이라크);
- 8.25.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반인권적인 법과 문제적인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8.26.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

성 등 모든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온두라스);

8.27. 인종,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체 없이 도입할 것 (슬로베니아);

8.28. 인종, 성, 국적 등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립할 것 (방글라데시);

8.29. 모든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스페인);

8.30.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혐오를 근절하며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이집트);

8.3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 (그루지야);

8.32.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완전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알바니아);

8.33.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승인하고,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며, 혐오발언,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등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과 의사표명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니카라과);

8.34.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터키);

8.3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법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 (팔레스타인);

8.36.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

반적인 법을 도입하고,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콜롬비아);

8.37. 인종, 성, HIV/AIDS 감염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보츠와나);

8.38.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호주);

8.39.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8.40. 성적지향, 성, 종교, 신념,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덴마크);

8.41. 이주민, 소수인종 및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멕시코);

8.42.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우간다);

8.43. 차별금지법의 이행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칭찬할 만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유에 근거한 불관용과 불평등을 근절할 것 (브라질);

8.44. 성정체성·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하며, 개인의 성정체성과 지향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할 것 (프랑스);

8.45.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제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아일랜드);

- 8.4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세네갈);
- 8.4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그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 (르완다);
- 8.48.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선언할 것 (나미비아);
- 8.49.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지속할 것 (베네수엘라);
- 8.50. 비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외국인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카자흐스탄);
- 8.5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터키);
- 8.52. 외국인 관련 법제의 맥락 속에서 교육 및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인종차별, 외국인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 (리비아);
- 8.53. 언론 및 인터넷에서 인종 및 종족에 대한 불관용을 선동하고 이를 출판, 게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러시아);
- 8.54.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혐오발언 및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 (키르기즈스탄);
- 8.55. 법적, 제도적 체계를 통해 혐오발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할 것 (시에라리온);
- 8.56.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 (키르기즈스탄);
- 8.57. 2012년 UPR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혐오발언 및 폭력행위로 나타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법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르헨티나);

- 8.58. 군대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성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영국);
- 8.59. 입법 등의 조치를 통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 8.60.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할 것 (스웨덴);
- 8.61.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모든 형태의 낙인찍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칠레);
- 8.6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국가 차원의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탈리아);
- 8.63.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전환 치료로 알려져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우루과이);
- 8.64.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미국);
- 8.65.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캐나다);
- 8.66. 군대 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 8.67.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대 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네덜란드);

- 8.68.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덴마크);
- 8.69. 개발 정책 및 사업에 있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 (예멘);
- 8.70. 사형제를 폐지할 것 (온두라스);
- 8.71.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추진할 것 (노르웨이);
- 8.72. 사형제 폐지 추진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 8.73.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고려할 것 (동티모르);
- 8.74. 사형제의 법적 폐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 8.75. 사형제의 법적 폐지와,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 (리히텐슈타인);
- 8.76. 사형제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 (르완다);
- 8.77. 20년 동안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상태였던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 (캐나다);
- 8.78. 사형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형은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콜롬비아);
- 8.79.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미 선고된 사형은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파나마);
- 8.80.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 (슬로베니아);
- 8.81.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감형조치하고, 사형제를 폐지할 것 (스위스);

- 8.82. 기존의 모라토리엄 상태를 인정하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사형제 폐지로 나아갈 것 (멕시코);
- 8.83. 사형제를 법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포르투갈);
- 8.84.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 8.85.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제고 노력을 펼칠 것 (프랑스);
- 8.86. 사형제를 금지하는 법적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 8.87. 모든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 (몬테네그로);
- 8.88. 사형제를 법으로 폐지하고, 관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 8.89. 사형 적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 명령을 발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아일랜드);
- 8.90.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과 친통일적 인사들을 석방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8.91.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 (잠비아);
- 8.92.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것 (파나마);
- 8.93. 미군이 저지른 인권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9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범죄화하고, 완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 (독일);

8.9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현역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완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할 것 (캐나다);

8.9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미국);

8.97. 현역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이행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8.9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과 충돌하지 않으며, 비전투적이거나 또는 민간적 성격을 띠고, 공익에 부합하며, 비처벌적인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것 (크로아티아);

8.9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민간 성격을 띠며 민간 통제를 받는 비처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제공을 위하여 의무적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개인들의 상황을 조사할 것 (프랑스);

8.100.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 (멕시코);

8.101.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의무에 부합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스위스);

8.102. 의무복무제도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아르헨티나);

8.10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하며,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 (파나마);

8.104.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으로 인정할 것 (포르투갈);

8.105.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 또는 구금된 개인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것 (크로아티아);

8.106. 수감 또는 구금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할 것 (코스타리카);

8.107.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민사적 제재만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보상액은 발생한 피해에 비례하도록 할 것 (과테말라);

8.108.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국가보안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확장할 것 (미국);

8.109. 「국가보안법」, 특히 그 제7조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이 법이 표현, 의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개인들을 석방할 것 (독일);

8.11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검토할 것 (이라크);

8.111. 「국가보안법」을 검토하여 언론, 결사, 평화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할 것 (포르투갈);

8.11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 (벨라루스);

8.113.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 할당제를 수립할 것 (코스타리카);

- 8.114. 임신중절수술을 비범죄화하는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존중할 것 (인도);
- 8.115. 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 시술한 의사 및 의료진을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네덜란드);
- 8.116.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불임수술 사례에 대하여 조사할 것 (러시아);
- 8.117.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불임수술 관행을 조속히 철폐할 것 (알바니아);
- 8.118.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제도를 수립할 것 (이란);
- 8.119.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출생신고제도를 수립할 것 (키르기즈스탄);
- 8.120. 난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할 것 (페루);
- 8.121.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할 것 (터키);
- 8.122. 부모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 (카자흐스탄);
- 8.123.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 국가출생신고제도를 구축하여 이들의 자녀들의 출생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에라리온);
- 8.124.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국가출생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보츠나와);

8.125.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이집트);

8.12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생활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갖도록 보장할 것 (콩고);

8.127.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도울 것 (베트남);

8.128. 「고용허가제법」을 개정하여 사업장 변경 기록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이 제한을 받거나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 (방글라데시);

8.12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에게 적절한 생계수단, 주거, 의료, 교육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란);

8.130. 학교에 등록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출국 및 강제출국 명령 이후 구금을 전면 중단할 것 (방글라데시);

133.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 권고사항은 제안국 또는 수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무그룹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부록

정부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최경림
-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김인철
-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안희준
- 법무부 기획검사 송규영
-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오유진
- 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관 김유완
- 법무부 인권정책과 전문위원 이혜정
- 외교부 인권사회과 사무관 김아영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최호열
-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주무관 박기연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담당 중령 이재하
- 국토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사무관 이정원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김진옥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김은영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정은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김지은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이해웅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총경 이대형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위 위성범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사무관 한지혜
-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 주 제네바대표부 변호사 윤상국
- 주 제네바대표부 변호사 이창온
- 주 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장운정
- 주 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오성준
- 통역 우주현
- 통역 김원희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 인 쇄 | 2018년 12월

| 발 행 | 2018년 12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86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74-6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Tel. (02)2125-9886 Fax. (02)2125-0918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74-6 93360